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22. 4.

머 리 말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용어 및 세금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자세하게 수록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세청 직원분들의 신고상담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차 례

제1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제1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11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15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8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71
1. 장부의 비치·기장	71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71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72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74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74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82

제3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7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87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88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90
4. 소득세의 납세지	90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92
6. 가산세	100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08
1. 납세의무자	108

2. 비과세	108
3. 과세표준과 세율	110
4. 납세지	110
5. 신고와 납부 · 환급	110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12
1. 납세의무자	112
2. 납세지	112
3. 과세표준과 세율	112
4. 가산세	113
5.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 · 납부방법	115

제4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19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119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20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122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1호-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123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125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125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27
1. 이자소득명세서	127
2. 배당소득명세서	128
3. 사업소득명세서	132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178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95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195
2. 이월결손금명세서	198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206
1. 각 항목 기재요령	207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209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18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225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226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226
2. 준비금명세서	244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247
1. 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247
2.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248
제2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62
1. 전자신고 가능서류	262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263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264
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264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264
제4장 ARS 신고방식	270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273
1. 스마트폰 전자신고 로그인 방법	273
2. 전자신고 시 공통 유의사항	275
3. 전자신고 시 유형별 유의사항	276
제6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278
1. 오류검증 추가 사례	278
2. 세무대리인 기타 당부사항	279

제6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83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283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83
3. 성실신고확인자	283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283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283
6.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85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86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287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291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297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317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331
- 약국사업자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348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362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375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388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403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416
- 학원강사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424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432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12.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443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단순경비율)	
13. 근로자가 20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462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473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485
- 종교인소득자(단일소득)	

부 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493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 494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양식 / 495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521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52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541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588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589	
2. 주요 질문 및 답변 / 590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599
1. 상가임대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600	
2. 주요 질문 및 답변 / 601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603
6.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618

제 1 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제1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21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올해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 연장일까지 신고

- ▶ 2021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직전연도(2020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유통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업 종 별	장부신고자		추계신고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3.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확인대상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다.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20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표 참고)

*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4배(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장부를 기록할 경우 혜택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5년간 세금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록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2020년 수입금액(결정·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기장의무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적용

※ 외부조정대상자

업 종 별	외부조정대상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3.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세액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직권연장하였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환급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6월 내에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납세자의 신고안내문을 전산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개별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 ▶ 신고안내문에는 개인 과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소득세법 관련

<일반>

-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경우 위탁자 과세)
- 기부금 단체의 명칭 통일(법정·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주택분양권 4억 이하 → 5억 이하)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5억 초과: 42% → 5억 초과~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 → 10년)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손금산입방식 삭제) 및 연구개발비의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특례 보완

<금융소득 분야>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25% → 14%)

<사업소득 분야>

-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명확화(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근로소득 분야>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종업원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 중 70만원 이하)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인하
(지급금액×0.5% → 지급금액×0.25%)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근로소득)

<기타소득 분야>

-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없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비과세 기타소득)
-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받는 부상,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구분 명확화(비과세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요건 정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50% → 7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8년 → 10년)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소형주택 임대기간 특례규정 정비(리모델링 사업기간을 임대기간 계산특례에 추가)
-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10%)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2022.12.31.까지)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분리과세(9%, 2억한도, 2022.12.31.까지)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배당소득 분리과세, 2022.12.31.까지)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년간 50%, 2021.12.31.까지)
 -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2022.12.31까지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
- ▶ 복식부기 신고자(자기조정, 외부조정), 조정계산서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 ▶ 간편장부 신고자
 - 제40호 서식(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제40호 서식(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 ▶ 단순경비율 신고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복수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는 제40호 서식(4)
- ▶ 단일소득 종교인소득자
 -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 종사자는 제40호 서식(5)
 - * 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 ▶ 비사업자(금융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및 가상자산 양도·대여 제외), 연금소득자)
 - 제40호 서식(1)
- ▶ 단일소득-분리과세 소득자{(주택임대,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및 가상자산 양도·대여))
 - 분리과세를 선택한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40호 서식(6)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100,101,102)

-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화면중앙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화면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제 출 대 상 서 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제40호]
2.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단순경비율·근로·연금·기타소득 대상자용 [소득세법 제40호(4)]
3.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소득세법 제40호(5)]
4.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분리과세소득자용 [소득세법 제40호(6)]
5. 성실신고확인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6.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제82호]
7.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제82호 부표]
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소득세법 제20호(5)]
9. 영수증수취명세서 [소득세법 제40호(5)]
10.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 제45호]
1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 제41호]
12.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국세징수법 제1호]
13.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국제조세조정법 제51호]
1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국제조세조정법 제50호]
15. 손실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법 제49호]
16.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제조세조정법 제48호]
17.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국제조세조정법 제47호]
18.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제56호]
19. 접대비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제55호]
20.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제40호(9)]
21.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제40호(8)]
22.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제40호(7)]
23. 표준재무상태표 [소득세법 제40호(6)]
24.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제38호]
25. 공익단체 추천서 [소득세법 제33호(4)]
26.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제29호(15)]

2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제29호(14)]
28. 국외투자지구 신고서, 실질거주자 명세 [소득세법 제29호(13)]
29.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제29호(2)]
30.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세법 제26호(2)]
31.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외 [소득세법 제11호]
32.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제19호]
33.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일반병원·한의원 공통) [소득세법 제19호(2)]
34.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3)]
35. 자동차학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4)]
36.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5)]
37. 연예인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6)]
38.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7)]
39. 일인별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8)]
4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세법 제16호]
41.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세법 제7호(2)]
42.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37호의 3]
4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소득세법 제63호]
44.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기타 40호]
45.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기타 40호(2)]
46.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기타 40호(3)]
47.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자용
[기타 40호(4)]
48.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기타 40호(5)]
49.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기타 40호(7)]
50.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기타 39호(5)]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2. 3. 18.>

(35쪽 중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성 방법

1. 제3쪽 ①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 ③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⑬대리구분은 ①-④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 ⑤ ~ ⑧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⑩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⑬ 세액공제명세서, ⑭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와 ⑯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④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접 수 자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감면신청서 ()		접수일(인)
3. 합계잔액시산표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4. 조정계산서 () 9. 그 밖의 첨부서류 ()		
5. 소득공제신고서 ()		

210mm×297mm(백상지 80g/㎡)

① ~ ④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 ⑫, ⑪, ⑩, ③, ②, ④, ⑤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③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①기장 ②조정 ③신고 ④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⑬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⑥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⑫ 소득공제란: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⑫ 소득공제합계에서 ⑬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⑫ 세율란·⑬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⑭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⑮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⑯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⑭ 세액감면란·⑮ 세액공제란: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⑬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⑮·⑯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⑮ 가산세는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의 ⑬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⑮·⑯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⑮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⑯란에 적습니다.
12. ⑮·⑯ 기납부세액란: 제21쪽 ⑮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⑯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⑮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⑮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⑮ 합계 금액에서 ⑮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⑮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⑮·⑯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 하려는 경우 ⑮년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⑯년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 ⑮ 분납할세액란: ⑮ 납부할 총세액에서 ⑮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년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⑮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⑬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⑮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⑮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⑮+⑯(⑮)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table border="1"> <tr> <td>거주구분</td><td>거주자1 / 비거주자2</td></tr> <tr> <td>내·외국인</td><td>내국인1 / 외국인9</td></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td>여 1 / 부 2</td></tr> <tr> <td>분리과세</td><td>여 1 / 부 2</td></tr> <tr> <td>거주지역</td><td>거주지코드</td></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역	거주지코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역	거주지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⑨ 1복식부기의무자							⑩ 2간편장부대상자							⑪ 3비사업자																																									
⑫ 신 고 유 형							⑬ 11자기조정							⑭ 12외부조정							⑮ 14성실신고확인							⑯ 20간편장부							⑰ 31추계-기준을							⑱ 32추계-단순을							⑲ 35분리과세							⑳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⑪ 10정기신고							⑫ 20수정신고							⑬ 30경정청구							⑭ 40기한후신고							⑮ 50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현금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③ 세무 ⑬

③ 세무 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지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① 가장	② 조정	③ 신고	④ 성실확인	⑦ 관리번호	-	⑧ 조정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소득공제	⑯			
과세표준(⑮-⑯)	⑰		④①	
세율	⑳		④②	
산출세액	㉑		④③	
세액감면	㉒			
세액공제	㉓			
결정세액	종합과세(㉑-㉒-㉓)	㉔	④④	
	분리과세	㉕	④⑤	
	합계(㉔+㉕)	㉖	④⑥	
가산세	㉗		④⑦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④⑧	
합계(㉖+㉗+㉘)	㉙		④⑨	
기납부세액	㉚		⑤①	
납부(환급)할 총세액(㉙-㉚)	㉛		⑤①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⑤②	
	가산	㉝		
분납할세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⑤③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의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징수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하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점수(영수)일
세무서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⑤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⑤ 이자소득명세서

[illegible]

25

⑥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원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원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5쪽 중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7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 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제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④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⑦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 라. 성실신고확인: 14
 -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⑧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⑨ 총수입금액란 및 ⑪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 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⑪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⑩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⑪ 소득금액란: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⑫ 과세기간개시일란·⑬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 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⑭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⑮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⑯ ~ ⑲):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및 ⑲ 소득금액은 ⑥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⑳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㉑ 상호(성명)란·㉒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㉓ 소득세란·㉔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업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⑪ 소 득 금 액(⑨-⑩)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⑩주택수(개)	⑪수입금액	⑫필요경비	⑬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⑯ 상호(성명)	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 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7)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5쪽 중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아래 1) 또는 2) 금액을 적습니다.
 - 1)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2)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2호의3서식)의 ⑪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의 및 채무면제액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년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⑩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⑪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다. ㉬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⑳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15쪽)

㉑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 본 인			⑨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추 가 공 제	④ 경 로 우 대 재(명)	특 별 공 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 애 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 녀 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 부 모 가 족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㉒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
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mm×297mm(백상지 80g/㎡)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330만원) 중 작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230만원)] * 괄호의 금액은 2020년 과세연도에 적용 ※ 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mm×297mm(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⑧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①~⑦)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세액감면명세서 및 ㉒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㉑ 배당세액공제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㉑ 배당세액공제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자녀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 2) 출산·임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임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이하 또는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추가 공제

라. 특별세액공제

-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납입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한도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㉒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㉓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5.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6.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㉓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 세액공제 (㉑×㉒)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 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12% (15%)		
		퇴 직 연 금				
		연 금 저 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 입 액				
특별세 액공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 호에 따른 기부금		15% 또는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 호에 따른 기부금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기 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⑮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 ① 무신고가산세 · 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⑪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 ·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 ·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⑤ 증빙불비가산세 ·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⑮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용합니다.
-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 ⑮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명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국제기초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용합니다.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결산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의 ⑭ 추가납부세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용합니다.
- ④ · ⑪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 ⑦ · ⑭ 사업소득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⑭란의 합계액과 ⑭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⑧ · ⑮ 근로소득란: 제11쪽 ⑧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⑨ 연금소득란 · 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⑨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21쪽)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14/10,000	
③ 납 부 지연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10/100	
④ 보고불성실	미 납 부 (환)	세 액	()	22/100,000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근로소득간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연제출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5/1,000)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 계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취 금 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기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 가 행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성 등 금 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 당 가 능 유보 소득 금 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합 계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증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㉖	

210mm×297mm(백상지 80g/㎡)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 ③, 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⑮·⑯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⑲·⑳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㉑, ㉒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㉒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⑰·⑱·㉓ 소득공제란: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㉔ 소득공제합계에서 ㉕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㉖·㉗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㉘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㉙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㉚ 배당세액공제: ㉛란은 ㉜와 (㉝-㉞)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23쪽)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32 $[(②+⑦) \times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33 $[③ \times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34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당가산액		35 소득공제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36 과세표준(34-35)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37 기본세율	
⑯ 소득공제		38 산출세액	
⑰ 과세표준(⑮-⑯)		39 종합소득산출세액(32+33+38)	
⑱ 기본세율			
⑲ 산출세액			
20 $[⑪ \times (14/100)]$			
21 비교산출세액계(⑲+20)			
22 비영업대금이익 $[(①+③) \times 25/100]$			
23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⑩-(①+③)]$			
24 $[23 \times (14/100)]$			
25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26 소득공제			
27 과세표준(25-26)			
28 기본세율			
29 산출세액			
30 비교산출세액 계(22+24+29)			
31 종합소득산출세액(21)와 30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40 $[⑬와(31-30)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㉒란부터 ㉓란까지 및 ㉔란부터 ㉕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㉒~㉕)과 임차료(㉖~㉙)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㉓·㉔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㉕·㉖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㉗·㉘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㉙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㉚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㉛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1/2).
9. ⑰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⑱ 금액란: 1에서 ⑰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㉑ 비교소득금액란: ⑱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㉒ 소득금액란: ㉑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㉑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㉒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25쪽)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계()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④ 과세기간			. . .부터 . . .까지	
⑤ 상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업태/종목	/	/	/	
⑧ 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34)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 + ⑪ - 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 ⑭)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⑰ 기준소득금액 (⑨ - ⑯)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⑲ 금액[⑨ × (1 - ⑱)]		
	⑳ 비교소득금액 (⑲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㉑ 소득금액 (⑰ 또는 ㉒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차료	㉖		㉗	㉘	㉙
인건비	㉚		㉛	㉜	㉝
계(34=11)	㉜		㉝	㉞	㉟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㉑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 · 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㉒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㉓ 필요경비란: ㉑총수입금액에서 ㉒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㉔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㉒소득공제합계에서 ㉓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마. ㉕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㉔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바. ㉖ 산출세액란: ㉕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㉑~㉒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나. ㉒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㉕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㉔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㉖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㉑~㉒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㉒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다. ㉕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㉔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㉖ 산출세액란: ㉕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⑤~⑫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가. ㉑~㉒란: 매매가액(㉑)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 경비(㉒)를 빼서 소득금액(㉒)을 계산합니다.
 - 나. ㉒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 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 ㉕ 과세표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㉔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㉖ 산출세액란: ㉕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㉗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㉖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㉖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27쪽)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㉓ 필 요 경 비				
㉔ 장기보유특별공제				
㉕ 소 득 금 액				
㉖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㉗ 과 세 표 준				
㉘ 세 율				
㉙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적용자산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㉓ 필 요 경 비								
㉔ 장기보유특별공제								
㉕ 소 득 금 액								
㉖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㉗ 과 세 표 준								
㉘ 세 율								
㉙ 산 출 세 액								

210mm×297mm(백상지 80g/㎡)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 ③, 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② 또는 ③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③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 '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⑮·⑯·⑰·⑱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㉔·㉕·㉖·㉗·㉘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㉙, ㉚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㉙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㉚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⑰·⑱·㉚ 소득공제란: 제15쪽 ㉛ 소득공제명세서의 ㉜ 소득공제합계에서 ㉝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㉞·㉟·㊱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㊲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㊳·㊴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㊵ 배당세액공제: ㊶란은 ㊳와 [(㊴)-(㊳와 ㊵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㊷·㊸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㊹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자용)의 ㊺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㊻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㊹·㊺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㊹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자용)의 ㊺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㊻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29쪽)

20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④② [(②+⑦)×(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④③ [③×(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④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 당 가 산 액		④⑤ 종합소득금액(④④)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④⑥ 소 득 공 제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④⑦ 과 세 표 준(④⑤-④⑥)	
⑯ 소 득 공 제		④⑧ 기 본 세 율	
⑰ 과 세 표 준(⑮-⑯)		④⑨ 산 출 세 액	
⑱ 기 본 세 율		⑤①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⑲ 산 출 세 액		⑤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④⑦-⑤①)	
⑳ [①×(14/100)]		⑤③ 기 본 세 율	
㉑ 비교산출세액 계(⑲+⑳)		⑤④ 산 출 세 액	
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⑤⑤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⑲-㉒)		⑤⑥ 비교산출세액(④②+④③+⑤④+⑤⑤)	
㉔ 기 본 세 율		⑤⑦ 종합소득산출세액(⑤⑥)와 ⑤⑧ 중 큰 금액)	
㉕ 산 출 세 액			
㉖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㉗ 비교산출세액(㉕+㉖+㉖)			
㉘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㉙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③)]			
㉚ [㉙×(14/100)]			
㉛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㉜ 소 득 공 제			
㉝ 과 세 표 준(㉛-㉜)			
㉞ 기 본 세 율			
㉟ 산 출 세 액			
㊱ 비교산출세액 계(㉞+㉟+㉟)			
㊲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㉝-㉞)			
㊳ 기 본 세 율			
㊴ 산 출 세 액			
㊵ 비교산출세액 계(㉞+㉞+㉟+㉟)			
㊶ 종합소득산출세액 (㉚·㉙·㉞·㊵ 중 큰 금액)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4 배당세액공제액

⑤⑧ ⑬와 [(④①-(③⑥)와 ④④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4.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12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13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15 1차년도 및 16 2차년도 17 3차년도 18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19 잔액은 14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15 1차년도 16 2차년도 17 3차년도 18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5쪽 중 제31쪽)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 × 4/5
㉑ 근로(기타)소득금액			
㉒ 종합소득금액			
㉓ 소득공제			
㉔ 과세표준			
㉕ 세율			
㉖ 산출세액			
㉗ 세액감면			
㉘ 세액공제			
㉙ 결정세액			

3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⑮ 잔 액 (⑭-⑮-⑮-⑮-⑮)
		⑮ 1차년도	⑮ 2차년도	⑮ 3차년도	⑮ 4차년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㉑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㉒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⑨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㉓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35쪽 중 제33쪽)

②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illegible]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mm×297mm(백상지 80g/m²)

㉓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㉓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㉓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3. ③ 공제금액란

-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4. ⑦ 세액감면란

-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㉓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㉑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 으로 대체되는 경우)	㉒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 금액			2,500,000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20%	20%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 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6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45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46~54)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46 무 신고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무 신고 납부세액		20/100						
	47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8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금) 세 액										
	49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5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 등록 · 허위 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 익 분 배 비 율 허 위 신 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51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52 신용 카드거부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53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금 액			20/100 (10/100)							
54 주택임대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기간	수 입 금 액		2/1,000							
55 총결정세액: 44+45											
56 기납부 세 액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6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74 합계와 7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83 합계를 적습니다.										
5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55-56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58 과세표준: 10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59 세율						20%					
60 산출세액: 58 × 59											
61 가산세액											
62 합계: 60+61											
63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84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64 납부(환급)할 세액: 62-63											
㉡ 사업소득명세						㉢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65 일련 번호	사업장		68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69 업종 코드	70 총수입 금액	71 단순경비율(%)		72 필요경비 (=70×71)	73 소득 금액 (=70-72)	74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75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66 상 호 (성명)	67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일반율	자가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㉞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㉞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㉞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㉞총수입금액 (총 급여액·총연금액)	㉞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㉞소득금액 (㉞-㉞)	원천징수세액	
		㉞상호 (성명)	㉞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㉞소득세	㉞농어촌 특별세

㉞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공제	㉞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㉞주택자금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㉞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㉞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㉞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㉞신용카드등 사용액	
	㉞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㉞합 계:	㉞+㉞+㉞+㉞+㉞+㉞	

㉞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㉞「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㉞「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㉞「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㉞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㉞합 계:	㉞+㉞+㉞+㉞

㉞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㉞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㉞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㉞ 외국납부세액공제				
㉞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합 계 : ㉞~㉞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
 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6쪽 중 제4쪽)

작성 방법

-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⑧, ⑪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 '㉠' 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 '㉠' · '㉡' 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⑪ 금융기관명/채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⑪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 · 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 · 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⑬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⑭ 장애인 200만원
⑮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⑯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⑮과 중복인 경우 ⑯을 적용)
 - ⑳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출자 ·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를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㉒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9. ㉔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10. ㉕ 세율라 및 ㉖ 산출세액: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㉔)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㉔)×세율(㉕)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2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1. ㉗ 사업소득자 중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료자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근로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2. ㉘ 무신고가산세·㉙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3. ㉚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14. ㉛ 보고불성실가산세: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㉜ 무기장가산세: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16. ㉝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8. ㉞ 원천징수 및 납세조항 징수세액: ㉞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항 징수세액(㉞)과 ㉟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9. ㊱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0. ㊲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7)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21. ㉞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2. ㉞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23. ㉞~㉞ 그 밖의 소득공제란

구 분	공제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대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330만원) 중 작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230만원)] * 괄호의 금액은 2020년 과세기간에 적용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신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전통신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이하 각 항목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24. ㉞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근로소득자가 아래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9조),
-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제29의6)
-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의3)

25. ㉞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26. ㉞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12%를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1. 3. 16.>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⑭ 기한 후 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총수입금액: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⑫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⑬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⑭ 종합소득금액: ⑪ - ⑬							
⑮ 소득공제: ⑮~⑳의 공제 금액 합계에서 ㉑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 원	금 액
					기본 공제	㉒ 본 인	
						㉓ 배 우 자	
						㉔ 부 양 가 족	
						㉕ 경 로 우 대 자	
					추가 공제	㉖ 장 애 인	
						㉗ 부 녀 자	
						㉘ 한 부 모 가 족	
	㉙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㉚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㉛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㉝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㉞ 과세표준: ㉛ - ㉝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㉟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㊱ 산출세액: ㉞ × ㉟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㊲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㊳~㊽)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 액 공 제 명 세	㊳ 자녀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㊴ 세액 공제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㊵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 액 공 제 명 세	㉔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시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㉕ 표준세액공제: 7만원				
	㉖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㉗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㉘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㉙ 결정세액: ㉔-㉗("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㉚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㉞~㉟)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㉞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4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20/100
	㉟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
㉟ 납부지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㉟ 납부 (환 급) 세 액					
㉛ 총결정세액: ㉙+㉚					
기납부 세 액	㉜ 원천징수세액: ㉑ 종교인소득 명세의 ㉗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㉝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㉛-㉜					

④ 종교인소득 명세

㉞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㉟ 총수입금액	㉗ 원천징수세액
	㉟ 종교단체명	㉟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 표시 합니다.
4.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동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③1 총수입금액란: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③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③2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③)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가. 배우자(③):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나. 부양가족(③):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③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③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④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④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④과 중복인 경우 ④을 적용)
10. ④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④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④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한도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벤처 등	5천만원 초과분	3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3. 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㉕ 세율란 및 ㉖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㉔)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㉔)×세율(㉕)－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2017년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귀속년도		202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만원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하	42%	3,540만원	5억원초과 10억원하	42%	3,540만원
						10억원초과	45%	6,540만원	10억원초과	45%	6,540만원

15. ㉗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이하 또는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추가 공제

16. ㉘ 기부금세액공제 및 ㉙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㉚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㉛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㉚의 기부금 공제액) × 30%
- 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㉚·㉛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㉚·㉛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㉚·㉛의 기부금 공제액) ×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㉘): "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㉙):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㉚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합니다.
18. ㉜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㉞ 무신고가산세 및 ㉟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㉟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월 ○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22. ㉞ 원천징수세액란: ㉞종교인소득 명세의 ㉞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3. ㉞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㉞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㉞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개정 2022. 3. 18.>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③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②0 수정신고, ④0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⑩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⑪ 성명	⑫ 사업등록번호		
	⑬ 관리번호	-	⑭ 전화번호	

❶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합계	③3 주택임대 사업소득	⑥9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 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⑧3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 ·대여)
⑮ 총수입금액				
⑯ 필요경비				
⑰ 공제금액				2,500,000
⑱ 소득금액(과세표준): ⑮-⑯-⑰				
⑲ 세율		14%	20%	20%
⑳ 산출세액: ⑱×⑲				
㉑ 세액감면				
㉒ 결정세액: ㉑-㉑				
㉓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㉓~㉑)의 합계금액				
㉔ 추가납부세액: ㉒+㉑				
㉕ 합계: ㉒+㉓+㉔				
㉖ 기납부세액				
㉗ 납부(환급)할 세액: ㉕-㉖				

❷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㉘ 과세표준: ㉑ 세액감면란의 금액				
㉙ 세율		20%		
㉚ 산출세액(결정세액): ㉘×㉙				
㉛ 가산세액				
㉜ 추가환급세액				
㉝ 합계: ㉚+㉛-㉜				
㉞ 기납부세액				
㉟ 납부(환급)할 세액: ㉝-㉞				

❸ 가산세액 명세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㉞ 무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고 납 부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㉟ 과소신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0/100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장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쪽 중 제2쪽)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㉔	납부지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㉔	지 급 명 세 서	지 연 제 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 금액			1/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액			0.5/100	
	근 로 소 득 간 이 지 급 명 세 서	지 연 제 출	미제출(불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액			0.12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 전 년 도 수입금액이 기 준 금 액 이상으로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 당 하 는 경 우 작 성)	계 산 서 합 계 표	미발급(위장가급)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외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미제출(불명) 공 급(불명) 가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불명) 가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㉕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 등 록 · 허 위 등 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㉖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⑦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㉔ 구분	㉕ 공제받은 과세기간	㉖ 추가납부 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㉗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㉘ 추가납부액 (㉔+㉕)
			㉙ 계	㉚ 필요 경비 차액	㉛ 공제 받은 금액 차액		㉜ 이자율 [()/10,000]	㉝ 기 간	㉞ 금 액 (㉜×㉝×㉞)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㉙ 구분	㉚ 공제받은 과세기간	㉛ 추가납부 사유	㉜ 감면세액	가 산 액			㉝ 추가납부액 (㉙+㉚)
				㉞ 이자율 [()/10,000]	㉞ 기 간	㉞ 금 액 (㉜×㉞×㉞)	

⑧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㉞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⑩ 필요경비란

- ③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⑥⑨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⑧③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2. ⑪ 공제금액란

- ③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3. ⑫ 세액감면란

- ③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③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⑫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1. 장부의 비치·기록 (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영 제208조 ⑤)



가.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 1)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육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7.21)

① 일자	② 계정 과목	③ 거래 내용	④ 거래처	⑤수입 (매출)		⑥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 §70④, 영 §131의2)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1)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기준수입금액에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 §147의2 부령 §109②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제2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024.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2.8배 또는 3.4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함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21. 7.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9월 14일 까지로 한다.

부칙(2021. 9.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해당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업 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2021년 귀속분 신고		
	2020년 수입금액	2021년 수입금액	2021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text{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times (\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 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 ~ 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

(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 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됨
 -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21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20년 귀속) 수입금액(결정·경정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됨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가. 단순경비율 개요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60일 또는 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79페이지> 표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143③)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일자리안정자금}) \times (1 - \text{단순경비율})$$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지원금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업 종	구 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5.0 %	65.0 %

$$45,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5.0\% + (45,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65.0\% \}$$

$$= 11,750\text{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 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업(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 활동(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text{단순경비율} + (100\% - \text{단순경비율}) \times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times 20\% = 92.2\%$]

제3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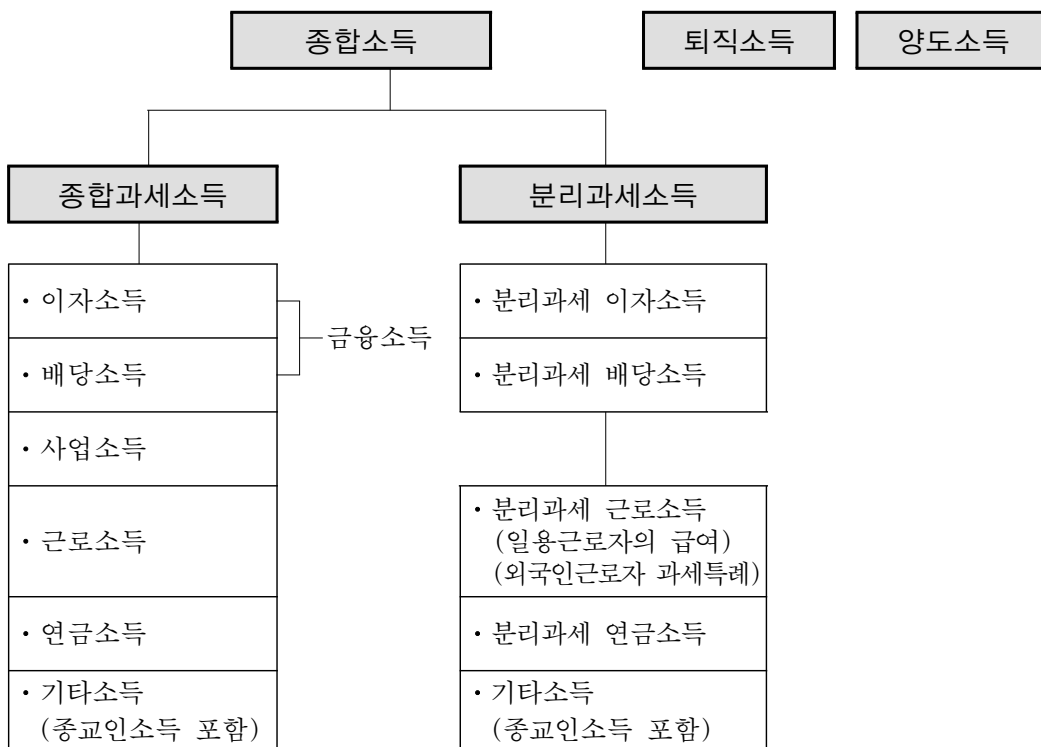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 5)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6)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7)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 8)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 9)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 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10)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11) 위 1) 부터 9)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 ·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12)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13)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 1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 15)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4.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원칙(소득세법 제6조)

-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소득세법 제8조)

-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소득세법 제9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 중간예납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 전자신고 방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유형 선택 - 개인탭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I-PIN으로 회원가입」을 클릭
 - 회원유형 선택 - 사업자·세무대리인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유형 선택 - 사업자·세무대리인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
 - 본인인증수단 선택(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소득유형(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22.5.3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 등)」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2) 서면신고(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제4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였습니다.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2022.5.31.)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 ① 천재·지변
-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기관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⑩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라. 종합소득세 분납(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3)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4) 분납세액 계산사례

- ①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 ②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마.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1) 전자납부 종류

- 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모바일 홈택스 앱 포함)
- ②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 ③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 ④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 ⑤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 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2)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 ① 전자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납부]의 [국세납부]에서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하여 타인계좌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서면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의 「자진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③ 고지된 국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 정보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4)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은행의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뱅킹, 공과금납부(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절차(공동·금융인증서 등) → 잔고 등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5)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 처음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본인이 통장, 인장, 신분증 지참)
- 거래은행의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국세 납부」를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국세납부」 또는 「세금/공과금」 등을 선택하고 본인확인절차(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거쳐 「국세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 카드로텍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는 납부세액의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납부는 0.5%)이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 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 납부절차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 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 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205	1	10		종로세무서	101	011976	
성명 (상호)	최공평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80203-*****		회계연도	2022	
주소 (사업장)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세목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일
종합소득세						1	1	0	8	2 0 0
농어촌특별세										
계					₩	1	1	0	8	2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22년 5월 31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수납인

- 납부번호 : 분류번호 “0126→국세,국세청”, 납부연월 “[사례 2021.08 →2108]”,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2022년 8월 납부) ☐ 예시임
-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 코드 참조),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회계연도는 “2022”입니다.
-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1,108,203원 → 1,108,200원 (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 ㉔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2.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2022. 6.30.)까지입니다. 단,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31.까지입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동 작	108	000181	양 산	624	026194
강 동	212	180629	동 청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강 릉	226	150154	동 화 성	151	027684	여 수	417	920313
강 서	109	012027	마 산	608	140672	역 삼	220	181822
거 창	611	950419	마 포	105	011840	연 수	150	027300
경기광주	233	023744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경 산	515	042330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경 주	505	170176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계 양	154	027708	부산강서	625	027709	영 월	225	150183
고 양	128	012014	부 산 진	605	030520	영 주	512	910378
공 주	307	080460	부 천	130	110246	예 산	311	930167
관 악	145	024675	북 광 주	409	060671	용 산	106	011947
광 명	235	025195	북 대 구	504	040772	용 인	142	002846
광 산	419	027313	북 대 전	318	023773	울 산	610	160021
광 주	408	060639	북 부 산	606	030533	원 주	224	100269
구 로	113	011756	북 인 천	122	110233	은 평	147	026165
구 리	149	027290	북 전 주	418	002862	의 정 부	127	900142
구 미	513	905244	분 당	144	018364	이 천	126	130378
군 산	401	070399	삼 성	120	181149	익 산	403	070425
금 정	621	031794	삼 척	222	150167	인 천	121	110259
금 천	119	014371	상 주	511	905260	잠 실	230	019868
기 흥	236	026178	서 광 주	410	060655	전 주	402	070438
김 천	510	905257	서 대 구	503	040798	정 읍	404	070441
김 포	234	023760	서 대 문	110	011879	제 주	616	120171
김 해	615	000178	서 대 전	314	081197	제 천	304	090324
나 주	412	060642	서 부 산	603	030546	중 로	101	011976
남 대 구	514	040730	서 산	316	000602	중 랑	146	025454
남 대 문	104	011785	서 인 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부 천	152	027685	서 초	214	180658	중 부 산	602	030562
남 양 주	132	012302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남 원	407	07041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남 인 천	131	110424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노 원	217	001562	세 중	320	025467	청 주	301	090337
논 산	308	080473	속 초	227	150170	춘 천	221	100272
대 전	305	080486	송 과	215	180661	충 주	303	090340
도 봉	210	011811	수 성	516	026181	통 영	612	140708
동 고 양	232	023757	수 영	617	030478	과 주	141	001575
동 대 구	502	040769	수 원	124	130352	평 택	125	130381
동 대 문	204	011824	순 천	416	920300	포 천	231	019871
동 래	607	030481	시 흥	140	001588	포 향	506	170192
동 수 원	135	131157	아 산	319	024688	해 남	415	050157
동 안 산	153	027707	안 동	508	910365	해 운 대	623	025470
동 안 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홍 성	310	930170
동 울 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천	223	100285
화 성	143	018351						

6.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4호)

가. 가산세의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

-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국기법 제6조 제1항, p.94 ‘다. 납부기한연장’ 참조)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9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7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10%

-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 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2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통지를 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②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제6항, 동법 제47조의3 제6항, 동법 제47조의4 제4항, 제5항)

- ①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 ②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③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④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다음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작성불성실가산세(소법 §81)
- ②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3)
- ③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6)
- ④ 기부금영수증발급·작성·보관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7)
- ⑤ 계산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10)
- ⑥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11)
- ⑦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조의13)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마. 가산세 요약(소법 집행기준 81-0-1)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국기법 §47의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 무 자	일반무신고	Max(①,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7/10,000
			부당무신고	Max(①,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40%(60%) ② 부당무신고수입금액×14/10,000
		그 외의 자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40%(60%)
국기법 §47의3	과소신고 가산세	복식부기 의 무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Max(①,②) 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60%) ② 부당과소수입금액×14/10,000
		그 외의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60%)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10%
		부당초과환급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40%(60%)
국기법 §47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미납(미달)세액×경과일수 ^{주1)} ×22/100,000 주1)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고지일)까지 기간
		환급받아야 할 세액 초과하여 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주1)} ×경과일수 ^{주2)} × 22/100,000 주1)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주2)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가산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부분은 확정 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2010.1.1 이후 매매하는 분부터
국기법 §47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을 포함한다)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3%) +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25/100,000) * 무납부 미달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함
소법 §81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영수증수취명세서 :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정증빙 아닌 영수증 수취분을 기재하는 서식
소법 §81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소법 §81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수입금액 무신고·미달신고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만 적용)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의4	공 동 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 하는 경우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 등의 신고 또는 변동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 * 2007.1.1. 이후 신고 또는 변동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소법 §81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소규모사업자제외)가 장부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경우	산출 세액 × $\left[\frac{\text{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right] \times 20\%$ * 무기장비율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함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소법 §81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 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명 서류 수취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금액의 2%(단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 대상금액과 필요경비불산입 대상 접대비 금액 제외)
소법 §81의7	기부금 영수증발급· 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5%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미작성·보관금액의 0.2%
소법 §81의8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사용 시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주1)} × 0.2% 주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분 부터 적용	Max(①, ②) ① 미신고기간수입금액 × 0.2% ②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 × 0.2%
소법 §81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발급거부 불성실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Max(①, ②) ① 건별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② 5천원(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달시) *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 금 영수증 미가입 불성실 미발급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현금영 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미발급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2009.1.1.~2010.12.31.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 2008.12.31. 이전 : 미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①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 상기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달시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소법 §81의10	계산서등 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제출기한 1개월이내 제출시 0.3%)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한 경우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가공수수한 경우	미발급·허위발급·가공수수 공급가액의 2%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소법 §81의11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지연제출금액의 0.25% (3개월 이내 지연제출한 경우 0.125%) * 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50%
소법 §81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법 §81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금액의 0.5%

주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이자배당·기타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주2) 중복적용 배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3) 위의 소득세법상 가산세 중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불성실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비과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예 시〉

조문번호	내 용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조문번호	내 용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제86조의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11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8①③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번호	내 용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 과세표준과 세율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4.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5. 신고와 납부·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0.6%~4.5%를 적용합니다.

4. 가산세



가. 가산세 요약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지방세 기본법 §53	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2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지방세 기본법 §54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세액 × 40%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 × 10%
		부정초과환급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 × 40%
지방세 기본법 §55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	Min(①, ②) ① 미납(과소)세액×경과일수* × 2.5/10,000 ② 미납(과소)세액 × 75%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고지일)까지 기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MIN(①, ②) ① 초과환급분세액*×경과일수** × 2.5/10,000 ② 초과환급분세액* × 75% *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지방세법 §99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 × 10%

나.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례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9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7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10%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10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2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통지를 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
 -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다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ㄱ), ㄴ)에 해당하는 경우

- ㄱ)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 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5.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20.1.1.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과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제 4 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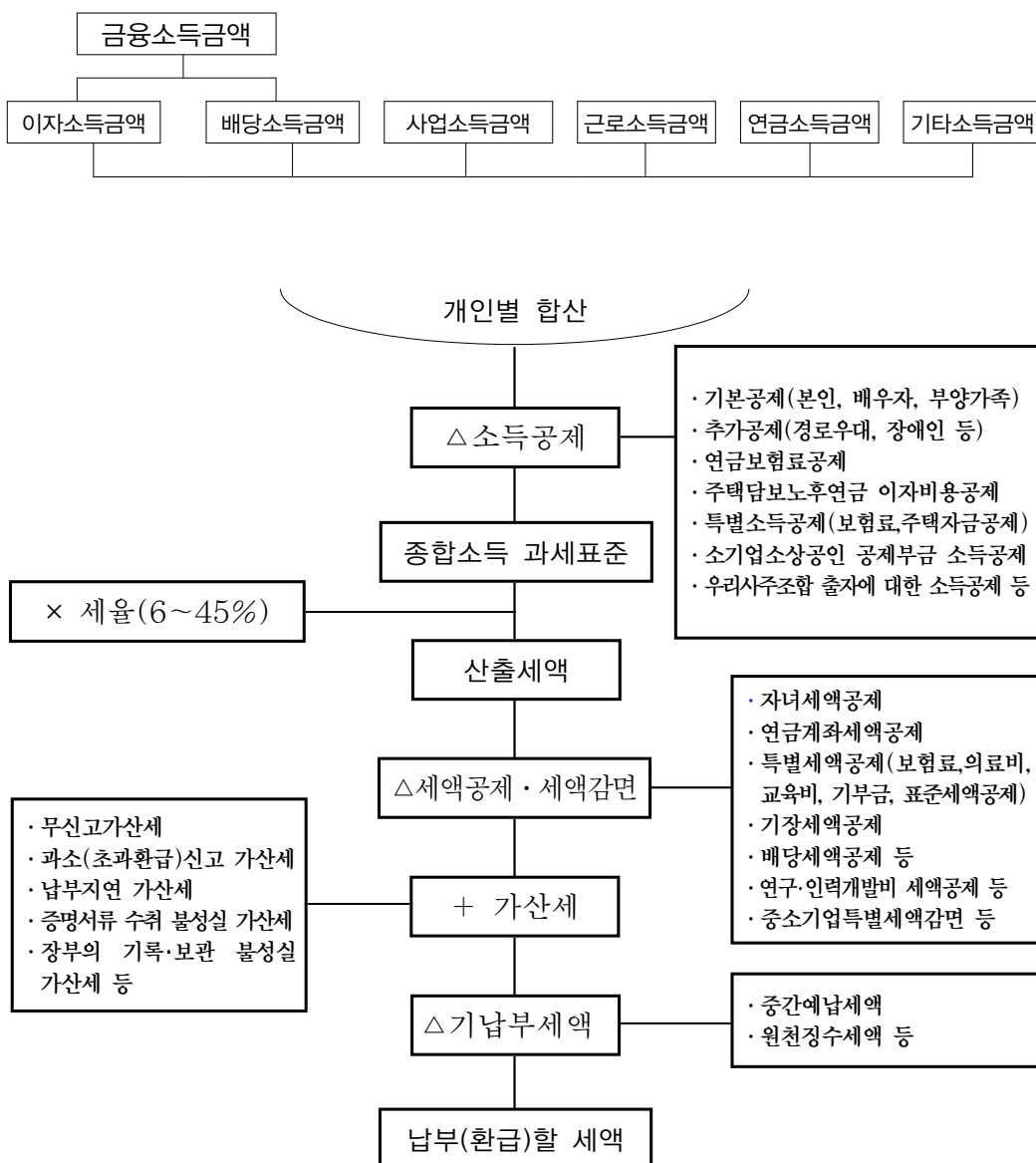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1) 신고서 제3쪽의 ❶~❸ 기본사항 등을 적습니다.
 - ❶ 기본사항란은 누구나 다 적습니다.
 -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 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그 다음 앞 쪽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따라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❺ 이자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❻ 배당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❼ 사업소득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3) 그 다음으로는 소득별 명세서를 기초로 신고서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4) 신고서 제17쪽의 ㉑-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를 작성한 후 신고서 제15쪽의 ㉑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5)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㉒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㉓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㉔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 (6) 신고서 제19쪽의 ㉒세액감면명세서, ㉓세액공제명세서, ㉔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7) 신고서 제21쪽의 ㉕가산세명세서, ㉖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8) 위 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제3쪽의 ㉑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
- (9) 신고서 제3쪽 하단에 신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10)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납부서에 같이 기재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신고서 제3쪽의 ❶ 기본사항, ❷ 환급금 계좌신고, ❸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견 본 >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9
			외국인토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❶복식부기의무자 ❷간편장부대상자 ❸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❶자기조정 ❷외부조정 ❸성실신고확인 ❹간편장부 ❺추계 - 기준을 ❻추계 - 단순을 ❻분리과세 ❽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❶정기신고 ❷수정신고 ❸경정청구 ❹기한후신고 ❺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❶기장 ❷조정 ❸신고 ❹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1호 -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지(주소지)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①성명 및 ②주민등록번호는 피상속인의 것을 적고, ③주소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서 3쪽의 신고인 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인 란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는 ①복식부기의무자 또는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법§70④, 법§70조의2, 영 §131§ 132).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20, 31, 32, 35, 40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⑩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내 용
10 정기신고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 2021년 귀속분에 대해 2022년 5월에 하는 신고가 여기에 해당함
20수정신고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 되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 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 하여 하는 신고(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일정비율(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을 경감(국세기본법§48)
30경정청구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국세기본법§45의2)

신고구분	내 용
40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 기한 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 (국세기본법 §45의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 1개월 이내 : 50% 감면, 3개월 이내 : 30% 감면, 6개월 이내 : 20% 감면(국세기본법 §48)
50추가신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받게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 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134)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⑪ 금융회사/채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적고,
- ⑫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HSBC 등 일부 외국계은행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금융회사 계좌를 적습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 ③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⑬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대리구분	내 용
①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②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③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④ 성실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와 기장·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 ⑬ 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⑰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신고서 제5쪽의 ⑤이자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⑤ 이자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 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1	(주) 한국	101-**-*****	5,000,000	1,250,000
11	2	김○○	231212-1*****	3,000,000	750,000
합계				8,000,000	2,000,000
13	1	○○은행 ××지점	102-**-*****	1,000,000	140,000
15	1	(주) ××	(홍콩법인)	2,000,000	
			이자소득 계	11,000,000	2,140,000

① 소득구분 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원천징수 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1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구분코드 15)이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5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6
-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7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 ·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⑥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⑥ 배당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가산율)		
21	1	(주)한국 101-**-*****	20,000,000	20,000,000	2,200,000	22,200,000	2,800,000
22	1	(주)○○ 111-**-*****	20,000,000			20,000,000	2,800,000
26	1	(주)×× (일본 법인)	9,000,000			9,000,000	
28	1	△△광고 212-**-*****	4,000,000			4,000,000	1,000,000
		배당소득 계	53,000,000	20,000,000	2,200,000	55,200,000	6,600,000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 소득 구분 코드 21

-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6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8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9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법인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배당액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습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1)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⑨ 소득세 :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의2)
 - ▶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2·121의4)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8·121의9)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소득공제·비과세를 적용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 §51조의2)
 -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6)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31)

3.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㉗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 견 본 >

㉗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30		30		40	
② 일련번호		1		2		계			
③사업장	소재지		경기 고양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충장로 **		삼일대로 **		삼일대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1				1
④ 상 호		덕양빌딩		낙원빌딩				낙원약국	
⑤ 사업자등록번호		128**-*****		101**-*****				101**-*****	
⑥ 기 장 의 무		(예)복식부기		(예)복식부기				(예)복식부기	
⑦ 신고유형코드		12		12				12	
⑧ 주 업 종 코 드		701201		701201				523111	
⑨ 총 수 입 금 액		36,000,000		120,500,300		156,500,300		285,456,000	
⑩ 필 요 경 비		13,150,000		55,069,100		68,219,100		311,652,000	
⑪ 소 득 금 액 (⑨-⑩)		22,850,000		65,431,200		88,281,200		△26,196,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21. 1. 1		21. 1. 1				21. 1. 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21. 12. 31		21. 12. 31				21. 12. 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⑮ 특수관계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1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 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US

⑥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성실신고확인) : 14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주업종 코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 코드를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 및 ⑪ 소득금액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⑪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⑱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⑱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총수입금액에서 ⑪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⑨총수입금액에서 ⑩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⑱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21.1.1.로 적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1.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인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년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인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건 본 >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㉑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⑯~⑲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및 ㉑소득금액은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 견 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㉔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1	국원건강보협공단	105-**-*****	1,234,560	

㉔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㉑ 상호(성명) · ㉒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㉓ 소득세 · ㉔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8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 및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음식점 · 숙박업소,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맞사지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적는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31조 부터 §37)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 및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③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④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⑥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⑦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⑧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⑨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⑩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⑪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⑫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설정·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⑮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는 제외
-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 ⑱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 단,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을 포함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⑲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⑳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2018.1.1.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구 분		수 입 시 기
상품·제품·기타 생산품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제외	일반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상품 등의 장기할부 조건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계약기간 1년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을 기준 *계약기간 1년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을 적용 가능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구 분		수 입 시 기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자 산 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날로 한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포함		대금 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전세금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 \text{전세금} \times \frac{\text{당해연도 임대월수}}{\text{계약기간의 월수}}$$

-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등”이라 하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text{간주임대료} = (\text{해당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text{억원}^{\text{주1}}) \times \text{적수} \times 60/100 \times 1/365 (\text{윤년의 경우 } 366)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text{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과 할인료 및 배당금}$$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text{간주임대료} = (\text{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text{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times 1/365 (\text{윤년의 경우 } 366)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text{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과 할인료 및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text{간주임대료}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text{억원}^{\text{주1}}) \times \text{적수} \times 60/100 \times 1/365 (\text{윤년의 경우 } 366)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text{간주임대료} = \text{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times 1/365 (\text{윤년의 경우 } 366)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일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

2021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유의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 ▶ 2018년 과세기간부터 : 1.8%
- ▶ 2019년 과세기간부터 : 2.1%
- ▶ 2020년 과세기간부터 : 1.8%
- ▶ 2021년 과세기간부터 : 1.2%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전년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 국세, 지방세의 국세환급금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임업의 경비(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 양잠업의 경비(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가축 및 가금비(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
- 사업자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자와 조특법 제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와 조특법 제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2019. 2. 12. 전에 면제받은 것에 한해 적용되고, 법령개정에 의해 현재는 삭제됨)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 2. 12. 이후 적용됨)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 5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2015년 지출분부터 적용)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나)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결산조정)

(1)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 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설정률

* 설정률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 대손실적률=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각호의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집행기준 29-57-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 ② 퇴직급여 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 퇴직급여 추계액 :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확정 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자 제외)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

(2)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제71조)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감가상각의 요소

(가) 취득가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① 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③ 기타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이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였을 경우 시가초과액을 제외하며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나)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다)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2) 감가상각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가)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신고구분	유형자산		무형자산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기타유형자산			
신 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폐기물매립시설은 2015.2.3.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자 산 별	상 각 방 법
개 발 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 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3)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기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또는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매립한 양 ÷ 매립예정량

(4)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가)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나)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전기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70)은 차기이월됩니다.

(5)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나)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6) 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가) 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나) 소액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다)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및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라)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이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도 해당 사업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34⑥)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 = \text{기준소득금액}^{\text{주1}} - \text{이월결손금}$$

※ 주1 : 기준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법정·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전)

(나) 기부금의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말레이시아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등)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가) 100% 공제 기부금

-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 76)

*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① 필요경비 산입한도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 = (\text{기준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 \text{정치자금기부금}) \times 30\%$$

② 기부금의 내용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 §34③, 영 §80①)

(가) 필요경비 산입한도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 ②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 Min(㉠, ㉡)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 종교단체 외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나) 기부금의 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39①)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 이하 “공익법인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39①)

- 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2014.1.1.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익법인신탁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공익법인 기부신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의 가액(소득세법 영 §81③)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가) 법정기부금 : 10년(2011.12.31 이전 기부 분은 1년,
2012.1.1.부터 2013.12.31. 이전 기부 분은 3년)

(나) 지정기부금 : 10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기타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소득세법 §35, 영 §83~§85)

(가)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액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19.1.1부터 중소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지속적용)되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함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20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0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점대비환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점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 ×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19.1.1부터 중소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지속적용)되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함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적용률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36③, 영§130)

(가) 개요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추가 손비인정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20%

(다) 문화접대비의 내용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 소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사)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⑦ 유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유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⑧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 ⑩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⑫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⑭ 선급비용

- ⑮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필요경비에 산입)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33의2,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처분 손실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업무용승용차의 개인적 사용과 고가차량을 이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해당 규정을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1) 업무용승용차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소득세법 §33의2)

② 제외되는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 2제9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통계법 § 22)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다.

-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 ②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득세법시행령 §78의3②)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① 가입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사업자(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②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③ 전용특약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 등

④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자동차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관련자만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 50%, (가입기간) 100%

• 업무사용비율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1) 필요경비 인정요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 78조의3⑥, [국세청고시 제2019-17호, 제2조]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부」

2) 필요경비 인정액

- 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용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보유 또는 임차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1,500\text{만원} \times \frac{\text{보유·임차월수}}{12}$

*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500\text{만원} \times \frac{\text{과세기간의 월수}}{12}$

*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업무용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3) 업무용 사용거리(소득세법 시행규칙 §42)

- ①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4) 서류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P.169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1) 감가상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제64조 제1항 제2호(감가상각방법)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

- ① 리스차량은 리스로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로(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합니다.
- ②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보유 또는 임차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800만원 $\times$ $\frac{\text{보유·임차월수}}{12}$

*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times$ $\frac{\text{과세기간의 월수}}{12}$

- 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②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폐업에 따른 처분손실 등 처리방법(소득세법 시행규칙 § 42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처분손실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④ 차종	⑤ 취득일 (입차기간)	⑥ 전기이월액	⑦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⑧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⑨ 필요경비 추인 (산입)액	⑩ 차기이월액(③-④)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④ 양도가액	⑤ 세무상 장부가액			⑥ 처분손실 (④-⑤<0)	⑦ 당기필요경비 산입액 (⑤ ≤ 800만원)	⑧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⑤-⑦)
		⑨ 취득가액	⑩ 감가상각비 누계액	⑪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⑩)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⑤ 차종	⑥ 처분일	⑦ 전기이월액	⑧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⑦)	⑨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⑩ 차기이월액 (⑦+⑨-⑧)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필지(80g/㎡)]

1. 업무용 사용비용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시

- 가. 복식부기의무(㉑)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 나. 차량번호란(㉒)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다. 차종란(㉓)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라. 임차여부(㉔)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라스)를 적습니다.
- 마. 출주행거리란(㉕)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바. 업무용사용거리란(㉖)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리처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관속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수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 사. 업무용사용비용율란(㉗)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할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다) 이하일 경우 100분의 100
 -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㉘)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㉙)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업무사용금액(㉚)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용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나. 업무외사용금액(㉛)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㉜)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할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시

- 가. 전기이월액(㉝) : 전기에 발생한 전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㉞) : ㉜의 금액과 ㉝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㉟)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㊱)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 나. 처분손실(㊲)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㊳) : ㉟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㊴) : ㉟의 금액이 ㊲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서

- 가. 전기이월액(㊵) : 전기에 발생한 전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필요경비산입액(㊶) : 전기이월액(㊴)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종질지 80g/㎡)

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제2편 제2장 참조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⑨란, ②②~③⑦란, ⑩~②①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 코드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30”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으로 적습니다.
2. ②일련번호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②②~②⑤)과 임차료(②⑥~②⑨)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②③·②⑦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②④·②⑧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②⑤·②⑨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③①~③③)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③①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은 ③③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과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은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란은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③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⑱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9. ⑲란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란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복식부기의무자 : 3.4, 간편장부대상자 :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㉑란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㉑란의 비교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제2편(기장의무와 경비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소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⑮란은 ⑨수입금액에 ⑭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소령 §143 ④)

<사 계>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3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경기 고양 충장로 **	
④ 과 세 기 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⑤ 상 호						덕양빌딩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0-01-*****	
⑦ 업 태 / 종 목				/	/	부 동산/임대	
⑧ 업 종 코 드						701201	
⑨ 총 수 입 금 액						36,000,000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주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0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③④)			4,294,000	
			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4,294,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17.6%
				⑮ 금액(⑨×⑭)			6,336,000
		⑯ 필요경비 계 (⑬+⑮)					10,630,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25,370,000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41.5%	
			⑲ 금액 {⑨×(1-⑱)}			21,060,000	
	⑳ 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71,604,000	
㉑ 소득금액 (⑰ 또는 ㉒ 중 적은금액)						25,37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4,294,000	㉓	4,000,000	㉔		㉕	294,000
임차료	㉖		㉗		㉘		㉙	
인건비	㉚		㉛		㉜		㉝	
계(㉔=㉒)	㉞	4,294,000	㉟	4,000,000	㊱		㊲	294,000

※ 첨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5)]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 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3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업자(법인을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 항공기의 항행용역,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8.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택시운송용역 제외)
 -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사.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아.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13.6.2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자	상 호 덕양빈딩	사업자등록번호 128-01-*****
	성 명 천 공 평	주민등록번호 480203-*****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신고서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 견 본 >

⑧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ㄹ주식회사 108-**-*****	10,000,000	6,500,000	3,500,000	39,600	
60	1	ㄷ주식회사 1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2	ㄱ주식회사 2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3	ㄴ주식회사 203-**-*****	10,000,000		10,000,000	2,000,000	
합계			30,000,000	16,000,000	14,000,000	2,8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가능.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

○ 연금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6

○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 61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 67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 또는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⑥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연 2,000만원 한도)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연 900만원 한도)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금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⑦ 소득금액 = ⑤ 총수입금액 - ⑥ 필요경비

⑧ 소득세 · ⑨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만,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 · 등록 ·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3)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법인세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다.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가) 연금소득 과세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 ① 공적연금(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 후 다음해 1월분 지급시 연말정산)
 - ②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지급금액에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소득세법 제129조)

나 이 (연금수령일 현재)	세 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60%)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합산 선택 가능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 : 2002.1.1. 이후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지자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
 -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 사적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보험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

다) 비과세 연금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에서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라)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text{연금소득금액} = \text{총연금액}^* - \text{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

가)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이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①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text{과세기준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text{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text{과세기준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기여금 납입월수}}$$

○ 사적연금

① 내용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납입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기타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text{(11-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계좌평가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수령으로 봄

* 2013.3.1.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제 6년차임 (2013.3.1.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연차는 제 1년차임)

* 의료물적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와 무관하게 연금수령으로 봄

③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 연금외수령하면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④ 연금외수령 판정방법

- 원칙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봄
- 연금수령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 : i ~ i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금수령으로 본다.
 - i)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ii)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iii) 과세기간개시일 또는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 의료목적,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례 적용하지 않음)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금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과세대상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무조건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Min (㉠, ㉡)
 ㉠ 이연퇴직소득
 ㉡ (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 12,000,000

나)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900만원을 한도로 함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총연금액이 4,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이 적용됨

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⑤)

- ①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②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 연금 수령한 날
-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3) 기타사항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적연금소득합계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액 590만원 = 연금소득금액 610만원

○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다음의 금액임

- 공적연금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⑮총연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5)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⑮총연금액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을 뜻함

- 사적연금 :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 종합과세 지급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6)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4)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2019.3.20 개정)

관리번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금지급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⑯ 종합소득 과세표준(⑰-⑳)			
⑰ 연금소득공제												㉑ 산출세액			
												세액 감면		㉒ 「소득세법」 ㉓ 「조세특례제한법」 ㉔ 감면세액 계	
⑰ 연금소득금액(⑮-⑰)												㉕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생·입양자 (명)			
종합 소득 공제	기본 공제	㉖ 본인				㉗ 표준세액공제				㉘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					
	추가 공제	㉙ 배우자				㉚ 표준세액공제				㉛ 외국납부					
		㉚ 부양가족(명)				㉜ 외국납부				㉝ 세액공제 계					
		㉛ 경로우대(명)													
		㉜ 장애인(명)													
	공제	㉝ 부녀자													
㉞ 한부모															
㉞ 소득공제 계															
세 액 명 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㉟ 결정세액														
	㊱ 기납부세액														
	㊲ 차감징수세액														
㊳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용합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㉞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4편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2020.3.13 개정)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여 []부
의료비연금계좌	[]여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계 좌 명 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2013.3.1. 전[] 이후[]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소 득 명 세	⑯ 귀속연월		⑰ 퇴직분																																																																																	
	인 출 분	연금 수령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⑱ 부득이한 사유																																																																															
					⑳ 연금 외 수령 사유																																																																															
			㉑ 연금외수령																																																																																	
	㉒ 일반연금				[]사망 []해외이주 []요양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㉓ 의료비인출																																																																																				
㉔ 부득이한 사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구분</th> <th colspan="2">지급액</th> <th colspan="2">세액</th> </tr> <tr> <th>소득</th> <th>원천</th> <th>세율</th> <th colspan="2"></th> <th colspan="2"></th> </tr> <tr> <td>㉕ 과세제외금액</td> <td></td> <td></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4">연금소득</td> <td rowspan="2">㉖ 이연퇴직소득</td> <td>세액이연분</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전환분</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3">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td> <td></td> <td>3%</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4%</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5%</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2">퇴직소득</td> <td rowspan="2">㉘ 이연퇴직소득</td> <td>세액이연분</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전환분</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td> <td>㉙ 퇴직분</td> <td></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r> <td>기타소득</td> <td>㉚ 연금외수령</td> <td>15%</td> <td colspan="2"></td> <td colspan="2"></td> </tr> </table>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납 부 명 세	구분		지급액		소 득 세																																																																															
	㉛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㉞ 퇴직	㉟ 세액이연 퇴직소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라.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 ④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 ⑥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⑦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¹⁾,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²⁾,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1)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
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포함
 - 2)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에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
- ⑧ 물품(유가증권을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를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⑪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⑫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⑭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⑮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⑯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⑱ 사례금
- ⑲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⑳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⑯, ⑰, ⑱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㉑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㉒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하여 연금의 수령한 소득
 - ㉓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㉔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㉕ 뇌물
 - ㉖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㉗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㉘ 다음의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며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춘 경우 및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수 입 시 기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대금청산일, 자산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 중 연금외 수령 소득	연금외 수령한 날
위 이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text{기타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나)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②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

(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 '18.3.31 이전은 80%, '18.4.1~'18.12.31은 70%

-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고 받는 일정규모(연 500만원)이하의 물품·장소 대여에 대한 대가 및 금품
 - ③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 ⑤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 대가
- (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90%,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받은 금액에서 1억원 초과분은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바) 종교인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 중 아래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다만, (다)~(바)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사)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5) 기타소득 과세방법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 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배당금품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나)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가), 나),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 합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 합산이 불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됨
- 원천징수세율: 20%(2018.1.1. 이후 해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 일시금, 연금외 수령소득 : 15%)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견 본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②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③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자 소 득 금 액	11,000,000				11,000,000
배 당 소 득 금 액	51,400,000				51,4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000,000				4,000,000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88,281,200	26,196,000	9,000,000		53,085,200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26,196,000				0
근 로 소 득 금 액	3,500,000				3,500,000
연 금 소 득 금 액					
기 타 소 득 금 액	14,000,000				14,000,000
합 계 (종합 소득 금액)	145,985,200	26,196,000	9,000,000		136,985,2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신고서 제5쪽부터 제11쪽까지 ⑤~⑧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⑤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⑥배당소득 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⑦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 ⑧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②)에 적습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③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5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규정과 일치 시킴(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 후 15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5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① - ② - ③ - ④)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이 음수(-)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0”으로 적으며,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5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되며,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 부터 15년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⑩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 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2012	10,000,000	7,000,000	3,000,000			0
	2013	6,000,000		6,000,000			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 · ② 발생금액

직전 1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그밖의 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5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 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

2)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 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 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 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 다만,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 금액 포함)을 계산할 때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①근로소득금액, ②연금소득금액, ③기타 소득금액, ④이자소득금액, ⑤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함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 ⑩ 소급공제를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⑪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과
- ⑫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⑪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text{⑬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각 사업장별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⑫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text{⑮종합소득결정세액} \times \frac{\text{각 사업장별 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⑬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⑬소급공제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left(\frac{\text{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text{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 \frac{\text{소급공제 받을 결손금}}{\text{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right) \times \text{직전 과세기간 세율} \times \left[\frac{\text{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text{사업장별 결손금}}{\text{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right]$$
- ⑭ 환급대상세액은 ⑪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⑬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⑫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⑮ 기환급세액은 조특법 제8의4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1. 3. 1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소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⑨ 사업장별 결손금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 산출세액			
	⑮ 종합소득 결정세액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⑭ × (⑪ ÷ ⑫)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⑮ × (⑪ ÷ ⑫)			
환급세액 계산	⑱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⑬ - ⑩ 합계) × 직전 과세기간 세율 × [(⑪ - ⑩) ÷ ⑫]			
	⑲ 소급공제 가능액: ⑱ - ⑮			
	⑳ 소급공제 한도액: ⑰			
	㉑ 환급대상세액: MIN[⑲, ㉑]			
	㉒ 기환급세액			
	㉓ 환급신청세액: ㉑ - ㉒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㉔ 금융기관/채신 판서명			㉕ 계좌번호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 ①-(②×③)
 -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 ②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 ③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 신청기한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제4편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⑩ 사업장별 결손금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⑫ 직전전 과세기간 ⑬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⑮ 종합소득금액			
	⑯ 종합소득 과세표준			
	⑰ 종합소득 산출세액			
	⑱ 종합소득 결정세액			
	⑲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⑰ × (⑭ ÷ ⑮)			
	⑳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⑱ × (⑭ ÷ ⑮)			
환급세액 계산	㉑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⑰-⑱)합계 × 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 [(⑭-⑮) ÷ (⑮-⑱)]			
	㉒ 소급공제 가능액: ㉑			
	㉓ 소급공제 한도액: ㉒			
	㉔ 환급신청세액: MIN[㉒, ㉓]			
직전 과세기간	㉕ 사업장별 소득금액			
	㉖ 종합소득금액			
	㉗ 종합소득 과세표준			
	㉘ 종합소득 산출세액			
	㉙ 종합소득 결정세액			
	㉚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㉘ × (㉕ ÷ ㉖)			
	㉛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㉙ × (㉕ ÷ ㉖)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뒤쪽)

환급세액 계산	㉓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㉓-㉑합계) × 직전 과세기간 세율 × [(㉓-㉑) ÷ (㉓-㉑)]			
	㉔ 소급공제 가능액: ㉓-㉑			
	㉕ 소급공제 한도액: ㉑			
	㉖ 환급신청세액: MIN[㉔, ㉕]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㉗ 금융기관/채신관서명	㉘ 계좌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세무대리인

(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㉑ 사업장별 결손금: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을 적습니다.
2. ㉒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㉓ 사업장별 소득금액, ㉔ 종합소득금액, ㉕ 종합소득 과세표준, ㉖ 종합소득 산출세액, ㉗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㉘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right)$$

5. ㉙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times \left(\frac{\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right)$$

6. ㉚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left(\frac{\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 \text{소급공제 받을 결손금}}{\text{과세표준}} \right) \times \frac{\text{직전전과세기간 세율}}{\text{과세}} \times \left[\frac{\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text{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text{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text{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right]$$

7. ㉛ 환급신청세액: ㉑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㉚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㉙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⑪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 건 본 〉

(35쪽 중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 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 국 민 연 금		2,040,000
		② 배 우 자		1,500,000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3 명)		4,500,000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추 가 공 제	④ 경 로 우 대 자 (1 명)		1,000,000		특 별 공 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 녀 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 부 모 가 족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8,500,000		특 별 공 제 합 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⑮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 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0	최공평	1	680202-1*****	4	최성공	1	031105-4*****
1	김성실	1	470306-2*****				-
3	김행복	1	720405-2*****				-
4	최길동	1	010211-3*****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각 항목 기재요령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별지 제37호 서식]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분)에는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① 기본공제(①~③)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나이 요건 등 충족 시)

② 추가공제(④~⑦)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를 공제합니다.
- ⑩ 국민연금 이외에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⑪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4.1.1~18.12.31의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2주택 이상 보유시 적용제한)

-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⑰~⑳)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⑱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⑳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공제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1.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만 20세 이하)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20세 이하)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 공제 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단,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함): 50만원

라)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위 다)의 공제와 라)의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라)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나.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4)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라.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공 제 한 도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①+② ≤ 300만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제87조 제2항)	(② :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①+②+③ ≤ 300·500·1,500·1,800만원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일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을 충족하는 외국인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연간 1.2% (2021.3.16.이후)¹⁾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2021.3.16.이후 : 1.2%

2020.3.13.부터 2021.3.15.까지 : 1.8%

2019.3.20.부터 2020.3.12.까지 : 2.1%

2018.3.21.부터 2019.3.19.까지 : 1.8%

2017.3.10.부터 2018.3.20.까지 : 1.6%

2016.3.16.부터 2017.3.9.까지 : 1.8%

2015.3.13.부터 2016.3.15.까지 : 2.9%

2014.3.14.부터 2015.3.12.까지 : 3.4%(주택임차자금 차입일 기준)

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12.31.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 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4.1.1~18.12.31의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①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다만, 2000.11.1.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라)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마) 위 (가)의 ① 및 ②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 또는 신규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가)의 ①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13. 12. 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14. 1. 1~'18. 12. 31 차입분은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제한도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 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종합한도금액(연 300만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임

-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 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임
- * 2012.1.1.~2014.12.31. 차입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차입금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임

(4)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4.1.1~'18.12.31.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3천만원 한도)

-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④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①~③ 투자대상 소득공제액 = 출자·투자액 × 10%
- ④~⑥ 투자대상 소득공제액 = 3천만원 이하 :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70%
5천만원 초과 : 3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수익증권을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단, 19.1.1. 이후 가입한 자는 위의 공제금액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3) 제출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공제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40%·대중교통이용분의 40%[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30%를 추가]·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5% 초과증가분에 대한 10%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액 = ㄱ)기본공제액 + ㄴ)추가공제액

ㄱ) 기본공제액 = MIN(①+②+③+④+⑤-⑥+⑦, ⑧한도)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18.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⑤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
교통 이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 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 등
사용분을 합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한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한 금액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⑦ 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times$ 100분의 10

⑧ 한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Rightarrow$ $\text{MIN}(\text{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times 2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Rightarrow$ 연간 25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Rightarrow$ 연간 200만원

ㄴ) 추가공제액* = $\text{MIN}(\text{㉗}, \text{㉘})$

㉗ 기본공제의 한도초과금액 $\Rightarrow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 \text{⑤} - \text{⑥} + \text{⑦}) - \text{⑧}$

㉘ 전통신장분(① $\times$ 40%, 연간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분(② $\times$ 40%, 연간 100만원 한도]

+ 2021년 초과 사용분(⑦, 연간 100만원 한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③ $\times$ 30%, 연간 100만원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액 계산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고 전통신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초과사용분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⑧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
- ⑨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 ⑩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⑪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
-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9.2.12 이후 지출분부터)

4)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사용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첨부
-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5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70%·10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의 ⑫세액감면명세서 및 ⑬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단 세액공제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인 경우에는 ⑬세액공제명세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 · 세액공제의 한도(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여러 가지 공제 ·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 후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특별상각 ·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정) 등이 있습니다.

다.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1)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이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1/100

▶ **한도액** : 산출세액 - 분리과세 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1)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

$$\text{공제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text{공제율}(20\%)$$

(3) 공제한도 : 100만원

(4)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명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1)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 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 납부세액)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의제외국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합니다.

(3)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 · 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1)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합니다.

(2) 세액공제 금액

-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	×	재해상실 비율 $\left(\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가액}} \right)$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left[\text{사업소득산출세액} - (\text{배당세액공제} + \text{기장세액공제} + \text{외국납부세액공제액}) \right] \times \left[\frac{\text{재해상실비율} \left(\frac{\text{소득별상실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가액}} \right)}{\text{비율}} \right]$$

$$\text{※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소득별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3) 공제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4) 공제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으므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와 130만원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text{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71만5천원 + 130만원초과분 × 30%
-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7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②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사)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 \text{③}] \times 12\%$ 또는 15% ¹⁾

① $\text{Min}(\text{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text{2)})} + \text{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

③ $\text{Min}(\text{ISA만기전환금액} \times 10\%, 300\text{만원}^{\text{3)})}$

(2) 연금계좌세액 공제 한도(조특법 제86조의4)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 3)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아) 특별세액공제

(1) 공제대상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가)의 성실사업자 및 (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및 교육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나)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 공제대상 특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 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 제 대 상	공 제 금 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가)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세액공제액 = (① + ②) × 15% + ③ × 20%

구 분	내 용
① Min(㉠,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②·③의 의료비는 제외함) - 총급여액 ¹⁾ × 3%	
㉡ 연 700만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²⁾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③ 난임시술비 ³⁾	

1)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①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① 및 ②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나)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지출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용(19.2.12 이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가 지출하는 것으로 200만원 한도)

(5)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가)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

-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 · 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 · 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및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포함),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포함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제9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교육과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 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 국외교육기관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라)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합니다.

(마) 참고사항

-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제4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다)의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 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기부금 한도액

구 분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2항1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기부금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② ①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10% ②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20%와 종교단체기부금 외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30%

* 기준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기부금)필요경비 산입액-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61조제2항 단서*).

* 이 규정은 2019.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이전 이월세액공제기간은 5년), 2013. 1. 1.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2018.12.31. 소득세법 16104호 개정)

(7)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③ 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사업자
-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⑥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 ⑦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b)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c)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해당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다)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종 류	대 상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 공제 (조특법 제88조의4)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1천만원초과분 35%)
월세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또는 12%*) (월세액 한도 750만원)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 104의8)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 20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한도 120만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3)	의료비 · 교육비세액공제	지출액 × 15% (난임시술비 20%)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4천5백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 10%(12%)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⑭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견 본 >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제목(조문)을 적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③ 연도 · ④ 금액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⑤ 당기환입액 · ⑥ 환입액누계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 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적습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 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 5 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제2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제4장 ARS 신고방식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제6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1. 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가. 전자신고 이용기간

- 홈택스(PC) 및 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는 5.1.~5.30.에는 매일 06:00부터 익일 01:00까지 가능하며, 신고마감일인 5.31.은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는 재로그인하여 수정 및 재제출 가능 (마지막 제출한 전자신고만 유효)
-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 * 매일 07:00~23:3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나. 전자신고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임)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스마트폰에 의한 신고서 작성
 -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손택스)을 내려 받아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변환방식(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임)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 단,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다.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전자신고 제외서식인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서식에 첨부하여 6월 10일(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월 10일)까지 제출가능 단,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기한연장 불가)

2.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가. 회원가입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로그인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는 세금신고 납부 증명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등 **국세관련 업무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처음 방문하는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하여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비회원]로그인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 종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를 포함한 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원유형 선택

개인 사업자·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주민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주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시 개인에 대한 업무처리와 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회원으로 로그인 후 예약회원 상단에 있는 [사업장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 사업자로 전환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 (사업자별증/전자세금증)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인증 방법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I-PIN

-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핀(I-PIN) 아이디가 없을 경우 아래의 I-PIN 발급기관에서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 I-PIN 발급 바로가기**
- 개인사업자의 주대표자는 I-PIN으로 회원가입 시 개인에 대한 업무처리와 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 개인 또는 사업자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PIN으로 회원가입

가입절차

1. 회원유형선택
2. 본인인증
3. 이용약관 동의
4. 회원정보등록
가입완료



STEP.1 회원유형선택

☞ STEP.2 본인인증

회원유형	본인인증수단
개인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
	공공 I-PIN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본인명의 신용카드번호
법인·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보안카드

☞ STEP.3 아이디 선택 (기존 아이디 보유자)

기존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EITC 가입자는 기존아이디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아이디로 통합아이디를 생성합니다.

* 통합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 숫자, _(특수문자) 조합 6~20자
대소문자 구분함 (예) abcd_1234(O),
ABCD_1234(O)
아이디입력 후 **중복확인** 을 클릭

☞ STEP.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 STEP.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신규가입자는 회원정보등록)

- * 사용자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 숫자, _(특수문자)} 조합 6~20자
대소문자 구분함 (예) abcd_1234(O), ABCD_1234(O)
아이디입력 후 **중복확인** 을 반드시 클릭
- * 비밀번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하여 조합된 9~15자
- * 휴대전화번호 : 전자고지안내, 우편물발송알림 신청 시 활용되므로 변경
되면 **My홈택스** >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
- *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하게 활용되므로 변경 시 회원정보 수정
- * 상담 ARS 비밀번호 :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상담 시
개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상담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

3. 홈택스 로그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화면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납세자가 로그인 방식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증방식별 탭으로 구성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로그인

① 공동·금융인증서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PC용 보안 프로그램 **작업**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서 로그인 안내

②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PC용 보안 프로그램 [적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페스, KB모바일, 삼성페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 등 이용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간편인증 로그인 안내

③ 아이디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PC용 보안 프로그램 [적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홈택스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 저장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 아이디는 영문, 숫자포함 6~20자리까지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포함 9~15자 이내로 입력 가능합니다.

④ 생체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PC용 보안 프로그램 [적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모바일 홈택스[스마트스]에
얼굴 또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얼굴인증은 아이폰에서만 이용 가능)


생체(얼굴·지문)인증

[생체\(얼굴·지문\)인증 로그인 안내](#)

⑤ 비회원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① 로그인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받으세요. [로그인 안내](#) PC용 보안 프로그램 [적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아래의 네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공동·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신용카드
●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종합소득세, 영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
영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영도세·증여세), 사업장연환신고서 등

• 홈택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제(외)조(인)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접속

① 홈택스 로그인



② 공동인증서 버튼 선택



③ 하드디스크/이동식 선택



④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 금융인증서 접속

① 홈택스 로그인

② 공동인증서 버튼 선택

③ 금융인증서 선택

④ 납세자 정보 입력

⑤ SMS 문자수신, 확인코드 답장

⑥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사설인증서 간편서명 접속

① (PC) 홈택스 로그인

② (PC) 간편서명 버튼 선택

③ (PC) 사설인증서 선택, 납세자정보 입력

④ (휴대전화) 사설인증서 로그인

⑤ (휴대전화) 사설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⑥ (PC) 인증완료 버튼 선택

□ 로그인 관련 오류 등 조치사항

1) 금융·공동인증서

1 인증서 이용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결방법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로그인 하는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
-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를 이용하려면 [비회원 로그인]하여 간단히 업무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민원증명 발급, 종소세·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 일부서비스만 이용가능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

2 금융인증서 선택이 안되는 경우

- IE(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인증서 선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인증서 선택창은 나오는데 로딩현상으로 로그인 불가한 경우

- 홈택스 화면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MAGIC-PKI)'를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시 인증서 암호가 맞지 않은 경우

- 인증서 암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경우 발생, 인증서 암호는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5 공동인증서 로그인 암호 입력 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메시지 나타나는 경우

- 홈택스 화면 하단 '공지사항 > 207번'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6 인증서 로그인시 "include 'veraport20.js'" 오류 메시지 나타남

-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는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에서 '임시파일, 열려본 메시지 목록, 쿠키, 저장된 암호 및 웹 양식정보 삭제 영역'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 쿠키를 삭제하기 바랍니다.
- 또한,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 홈택스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7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은행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 금융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8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록방법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려면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
- 다만, 비회원 로그인 인증서 등록 없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 >](#)

9 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

-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구 공인인증기관)의 안전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저장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세히보기 >](#)

● 금융인증서를 이용한 홈택스 로그인 방법



- 1 로그인 화면: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탭 선택
- 2 공동-금융인증서 탭: 공동-금융인증서 버튼 선택
- 3 금융인증서 인증: 인증서 선택창(좌측 상단)에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한 후 지문, PIN번호 등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확인
- 4 로그인 완료: 홈택스 로그인 완료

● 금융인증서 등록 방법



- 1 로그인 화면: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인증서등록 버튼 선택
- 2 인증서 등록 화면: 주민등록(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 선택
- 3 금융인증서 인증: 인증서 선택창(좌측 상단)에서 '금융인증서'를 선택한 후 지문, PIN번호 등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확인
- 4 등록완료: 금융인증서 등록 완료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1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은

- 홈택스에서는 7종의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모바일, 네이버, 신한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는

- 연말정산간소화 조화국세 증명발급각종 세금신고 등 대부분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 납부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은

- 민간인증서는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등 민간인증서 발급기관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

4 스마트폰으로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 또는 PUSH를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민간인증서 발급기관의 모바일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입니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바랍니다.

5 간편인증으로 사업자 로그인이 안됨

- 간편인증은 개인(비사업자)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경우 개인(비사업자)으로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6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 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간편인증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보기 >](#)

*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간편인증 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로만 로그인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① 간편인증을 이용한 홈택스 로그인 방법



- 1 로그인 화면: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탭 선택
- 2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탭: 간편인증 버튼 선택
- 3 전자서명 인증: 간편인증 창에서 민간인증 사업자를 선택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지문, PIN번호 등으로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4 로그인 완료: 홈택스 로그인 완료

3) 아이디 · 비밀번호

1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 아이디 힌트를 받아 보시거나 본인인증을 통해 전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
- * 전체 아이디 확인을 위해서는 '지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재발급 >](#)
-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개인회원은 본인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
-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나오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에 홈택스를 추가하고
- 또한,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모든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4 홈택스 로그인시 보안경고창이 나오는 경우

- 홈택스 화면 하단 '공지사항 > 196번'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5 홈택스 로그인 선택시 [hosts 파일 위변조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나옴

- 홈택스 화면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에 가서 배라포트 및 매직라인을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
- 대표자의 경우 개인(비사업자)으로 로그인 후 **[사업장선택]**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보안카드' 입력창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끄기'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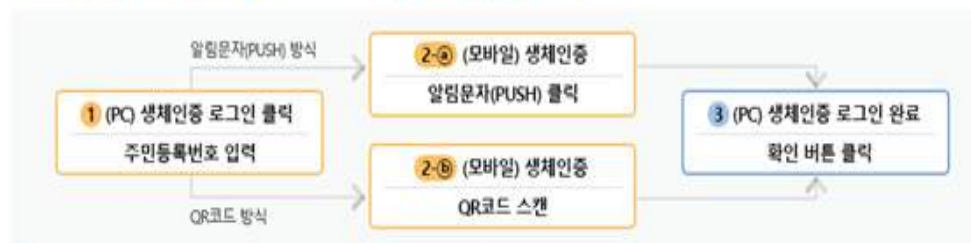
7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전환'이 안되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경우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에 홈택스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 또한,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모든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4) 생체(얼굴·지문) 인증

1 생체(얼굴·지문)인증 로그인 절차

- 손택스 앱에 얼굴 또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얼굴인증은 아이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1 (PC) 로그인 화면에서 「생체(얼굴·지문)인증」 탭 선택 > 「생체(얼굴·지문)인증」 버튼 클릭 > 「생체(얼굴·지문)인증 로그인」 팝업화면이 나타남

2-㉠ 알림문자(PUSH) 방식 (알림(PUSH) 수신 동의한 경우)

- ① (PC) 「생체(얼굴·지문)인증」 팝업 화면의 「알림문자(PUSH) 전송」 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 클릭
- ② (모바일) 손택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알림문자(PUSH)가 수신됨
- ③ (모바일) 수신된 알림문자(PUSH)를 누르면 생체인증 화면으로 자동 이동함
- ④ (모바일) 손택스에서 생체(얼굴·지문) 인식

2-㉡ QR코드 방식 (알림(PUSH) 수신 동의하지 않은 경우)

- ① (PC) 「생체(얼굴·지문)인증 로그인」 팝업화면의 「QR코드 활용」 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 ② (모바일) 손택스 앱을 직접 기동하여 초기화면 상단 QR코드 스캐너() 실행
- ③ (모바일) 「생체(얼굴·지문)인증」 팝업 화면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체인증 화면으로 자동 이동함
- ④ (모바일) 손택스에서 생체(얼굴·지문) 인식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3 (PC) '생체(얼굴·지문)인증 로그인' 팝업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됨

2 지문등록 방법

- ① (모바일) 손택스앱 설치 및 실행 :
 - 안드로이드 사용자 : 원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접속 > 홈택스(또는 손택스) 검색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설치
 - iOS(아이폰) 사용자 : 앱스토어 접속 > 홈택스(또는 손택스) 검색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설치
 - ② (모바일) 지문인증센터 선택 : 손택스앱 홈 화면 > 삼단버튼(≡) > 인증센터 > 지문인증센터
 - ③ (모바일) 지문등록 : 지문인증센터 > 등록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 지문등록
 - ④ (모바일) 지문등록 완료
- * 안전한 지문인증을 위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해 주세요.

3 얼굴등록 방법

- ① (모바일) 손택스앱 설치 및 실행 :
 - iOS(아이폰) 사용자 : 앱스토어 접속 > 홈택스(또는 손택스) 검색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설치
 - ② (모바일) 생체인증(지문·안면)등록 선택 : 손택스앱 홈 화면 > 삼단버튼(≡) > 인증센터 > 생체인증(지문·안면)등록
 - ③ (모바일) 얼굴등록 : 생체인증(지문·안면)등록 > 등록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 얼굴등록
 - ④ (모바일) 얼굴등록 완료
- * 안전한 얼굴인증을 위해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해 주세요.

5) 기타

1 회원가입 후 성명이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

- 성명 변경 전에 발급 받은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는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에 발급 받은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는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재발급 받은 인증서로 로그인 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26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1. 전자신고 가능서류



구분	근거법령	서식번호	서식명
1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3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4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부표)
5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6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근로·연금·기타소득적용대상자용)
7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8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
9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10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 서식	표준재무상태표
11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 서식	표준손익계산서
1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 서식	표준원가명세서
13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 서식	표준합계잔액시산표
14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15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 명세서
16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조정계산서
17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2)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18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20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
21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22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23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 서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24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생체인증(얼굴·지문)으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시 본인이 정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나.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함

다.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등이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전송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

나.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다. 신고서 변환/제출전송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화면에 접근한 후,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전송함
-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오류 발생 시 신고서 재작성, 정상 시 제출

라.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2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1)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1)	
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2)	
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3)	
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	
10	주택보조금지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1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1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4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5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16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69호	
17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19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제출할 서류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20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1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22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6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7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8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9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0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1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외부조정 제출면제
32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외부조정 제출면제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외부조정 제출면제
34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5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6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7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8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0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향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2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변환방식 연장제외
4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4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5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6	소득구분계산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9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0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3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5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3	변환방식 연장제외
5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구)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5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1)	변환방식 연장제외
5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1	국외 출자 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3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4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5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66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20-1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7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9	성실신고확인서	기재부고시 제2012-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 비 고

-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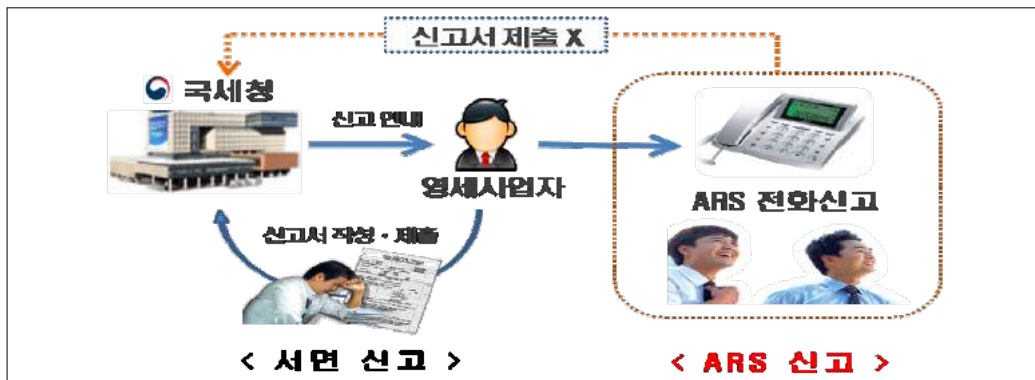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22.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4장 ARS 신고방식

ARS 신고방식

- (신고대상) 모두채움 제공대상자(F·G·Q·R·V) 중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 (신고방법) ☎1544-9944로 전화 → 2번 종합소득세 선택 →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인증 → 주민등록번호 또는 단체번호 뒤7자리 입력 → 세액 확인 → 신고 완료
 - *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서 삭제 및 환급계좌 입력·변경도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번호 문자 발송 또는 음성 안내
 - * ARS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의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됨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 첫페이지 받는사람 주소지 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및 엔티스(CA01)에서도 개별인증번호 조회가능
-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로 세액계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 [방법1] 스마트폰 QR코드 리더기 실행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방법2]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모두채움 신고서 → 로그인
 -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 로그인 →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하기

제4장 ARS 신고방식

- (보이는 ARS)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홈쇼핑, 은행 등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이는 ARS서비스를 제공하여 음성안내로 인한 대기시간 축소



① 서비스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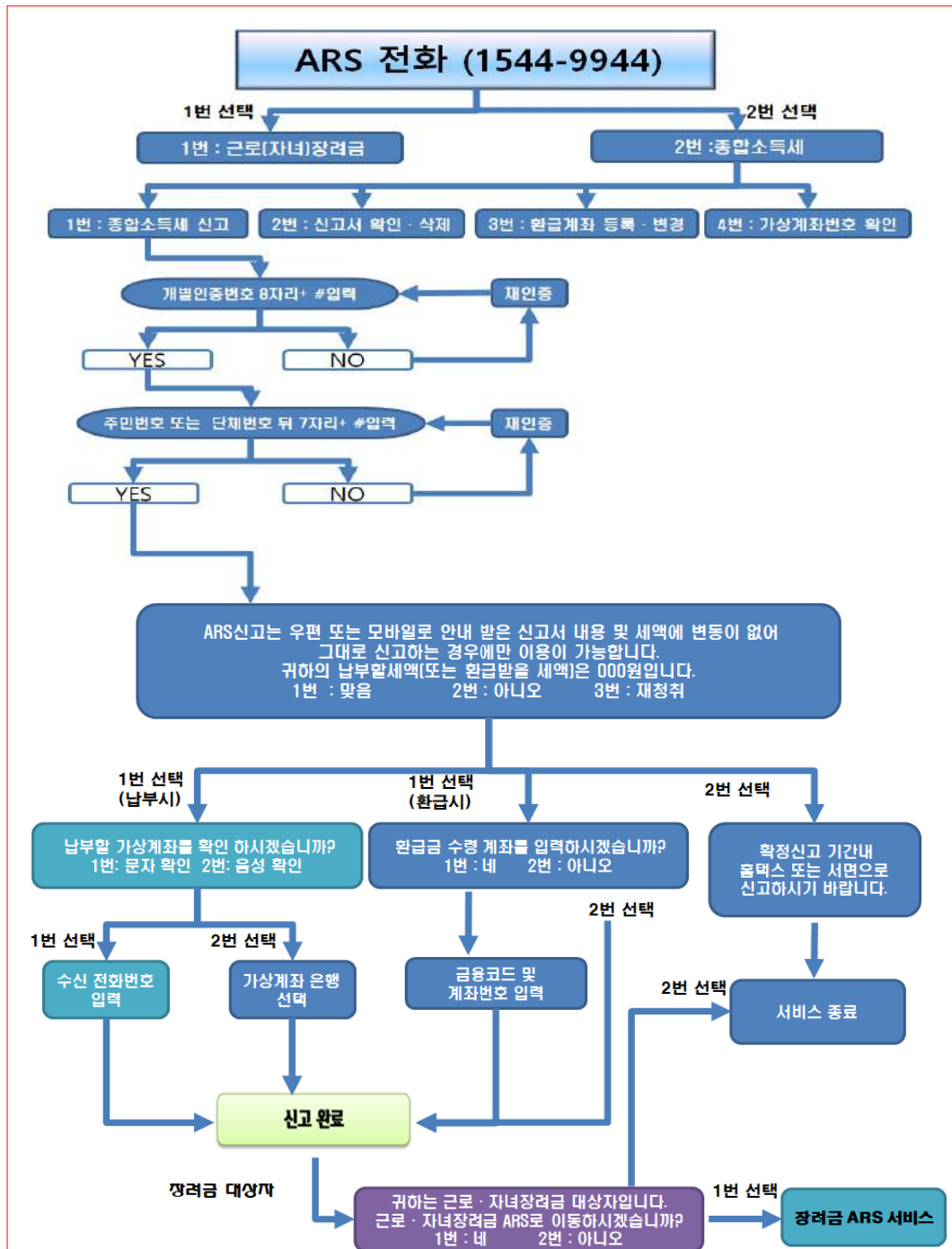


② 보이는 ARS
(터치식 이미지메뉴)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

U+고객센터	하나캐피탈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꿈기다산업센터
GSShop	CJmall	Hmall	더블유쇼핑	Amway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OK저축은행	PRUGIO
아임쇼핑	NH투자증권	홈플러스	제주항공	삼성화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OTO	OTO	OTO
SSG.COM	이마트홈	트레이더스	신세계	기흥증권	AXA	R스마트	한화손해보험	S-C	스마트센터
NS홈쇼핑	롯데홈쇼핑	Popcorn	SMART	우리카드	Sabon	CI	대신증권	대신증권	동부화재
롯데원TV	롯데홈쇼핑	U+TV	mPOP	쇼핑센터	SmartM	티레	홈택스	홈택스	보이는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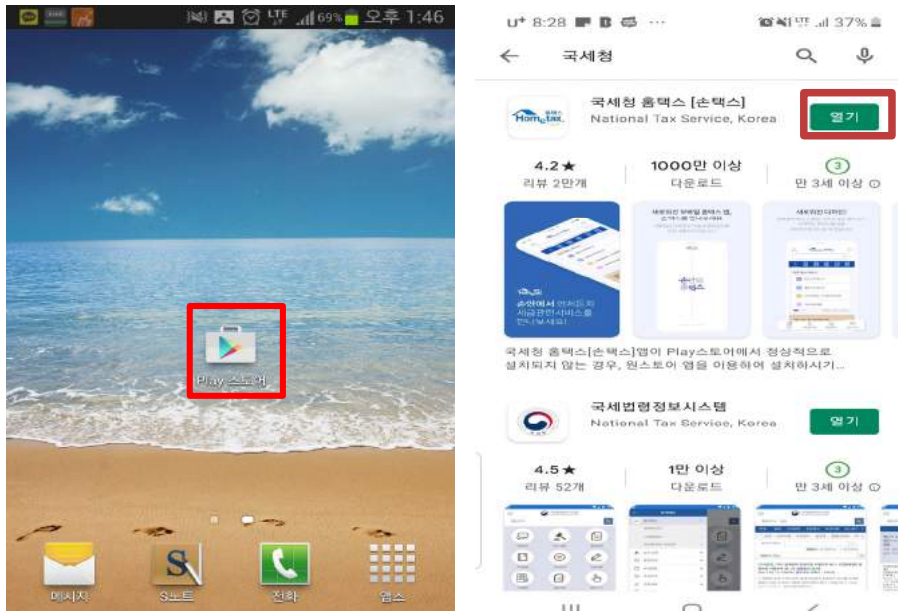
■ ARS 흐름도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1. 스마트폰 전자신고 로그인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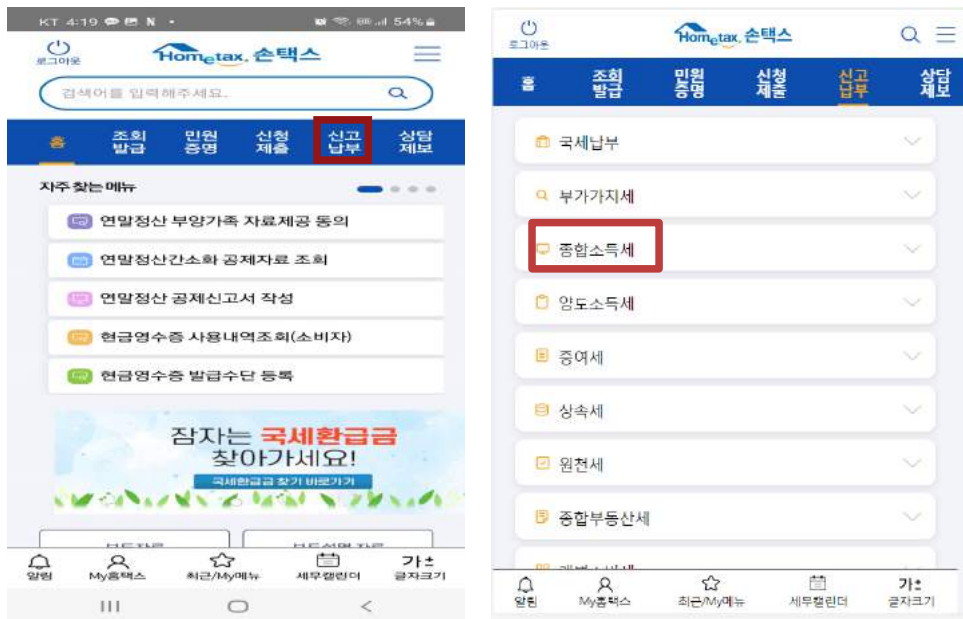


-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합니다.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로그인 방식은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지문인증의 방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 [종합소득세] 아래 항목의 신고 유형에서 본인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전자신고 시 공통 유의사항

-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및 [저장후다음]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만 신고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해당사항 입력 후 마지막 “세액계산” 화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 내용요약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신고 시 유형별 유의사항



〈단순경비율(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정기신고)〉

-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가 없거나, 급여가 변동되어 총수입금액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포함), 기부금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신고서(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모바일로 제공하는 전자신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 금융소득·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이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청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투자자산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등 별지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종교인소득(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소득(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터넷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제6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1. 오류검증 추가 사례



-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선택한 사업자가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
- 세액감면(면제) · 공제를 기입하고 세액감면(면제) · 공제신청서 미제출
- 근로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 공제를 기입
- 사업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현금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공제 적용
- 영수증수취명세서(1)상 ㉓ 송금명세서제출분 금액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상 거래 금액 합계액이 불일치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제출자가 사업소득명세서상 신고유형이 추계-기준율(31번)이 아닌 경우
- 기장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소득명세서상 신고유형이 자기조정 · 외부조정 · 성실 신고확인이 아니거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소득명세서상 신고유형이 간편장부가 아닌 경우
- 세무대리인 신고하면서 신고서 · 표지의 ㉓ 세무대리인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미입력

2. 세무대리인 기타 당부사항



- 신고마감일(5.30~31) 전 조기신고 당부
 - 신고마감일에 신고서 입력·전송 시 시스템 과부하, 제출건수 제한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조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열람 당부
 -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수입동의가 가능하오니 수입납세자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재전송 등 변환파일 대량 전송 일체 금지
 - 신고기간 중 회당 변환제출 가능건수를 10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기 다른 아이디로 작성하여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방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주업종코드의 정확한 입력 요청
 - 건물건설업(451104)을 건물임대업(701201)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증빙서류의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제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한 서류(재무제표 등)를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제출대상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6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나.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 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귀속 까지 100만원, '18년 귀속부터 120만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 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과 세	대 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배 제

6.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21년 귀속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¹⁾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 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소득세과-729, 2019.5.24.)

3. 확인대상 여부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8년 귀속부터)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소득세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7.5억 (2021.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 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제조환산 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도매환산 6억(2억×15/5)]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 부동산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 으로 보아 판단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

2. 서면-2016-소득-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건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18년 귀속부터)

4.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6.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7.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8. 법규소득 2013-214, 2013.07.01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 징세과-1037, 2012.09.27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소득세과-463, 2012.06.0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한도

11. 소득세과-461, 2012.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한도

12. 소득세과-364, 2012.0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3. 소득세과-348, 2012.04.2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35, 2012.04.21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6.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성실신고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 7 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단순경비율)
13. 근무지가 20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성 명 : 최 공 정

자료2 사업소득 내역

- ① 상호 : 세중상사 업종 : 제조업/신발 개업일 : 2011. 5. 1.
2021년 총수입금액 1,500,000,000원, 필요경비 1,400,000,000원
※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 ② 신고유형 : 성실신고확인

자료3 가족사항 등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배	우	인	72. 2. 3	100,000,000원	
		자	73. 4. 5	없 음	
		모	51. 3. 6	"	만 70세
자	녀		00. 2. 7	"	만 21세
		녀	02. 8. 9	"	만 19세

- ① 모 의료비 지출액 : 8,000,000원(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음)
②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 각각 5,000,000원, 6,000,000원

자료4 기타자료

- ① 중간예납 4,000,000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0,000원 납부하였음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 2,000,000원
④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함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⑫ 세액감면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⑭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⑨ 신고유형 : ☒14 성실신고확인에 ☒표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므로 14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신발 제조업 코드인 1920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500,000,000원

⑩ 필요경비 : 1,400,000,000원

⑪ 소득금액 : 100,0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차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⑧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0원을 적습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⑨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000,000원
-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모, 2002년생 자녀 등 4명의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⑲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3,000,000원
- ⑳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3,000,000원
- ㉑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10,000,000원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⑲ 종합소득금액 : 100,000,000원 {13쪽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㉑ 소득공제 : 10,000,000원 (15쪽 ⑪소득공제명세서의 ㉑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㉒ 과세표준 : 90,000,000원 (종합소득금액⑲ - 소득공제㉑)
- ㉓ 세율·㉔ 산출세액 : 35%, 16,600,000원

* 과세표준 90,000,000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0원 = 16,600,000원

⑫ 세액감면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③ 세액감면 : 3,320,000원

* 산출세액(16,600,000원) × $\frac{\text{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100,00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100,000,000\text{원})}$ × 감면율(20%)

* 수도권에서 소기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20%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감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⑬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⑤ 조특법상 세액공제 : 조특법 제126조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200,000원

* 확인비용(2,000,000원) × 공제율(60%) = 1,200,000원 (한도 : 120만원)

○ 의료비세액공제 : 750,000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와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5,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란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8,000,000원 중 사업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8,000,000 - 100,000,000 \times 3\% = 5,000,000$

○ 교육비세액공제 : 1,650,000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이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11,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1,650,000원을 적습니다.

※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750,000+1,650,000=2,400,000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지만 본 사례에서는 편의상 생략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5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① 중간예납세액 : 4,000,000원을 적습니다.
- ⑪ 기납부세액 합계 : 4,000,000원(①~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②④ 세액감면 : 3,320,000원 (⑫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⑤ 세액공제 3,750,000원 (⑬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⑥ (결정세액)종합과세 : 9,530,000원 (②③-②④-②⑤)
- ②⑧ (결정세액)합계 : 9,530,000원 (②⑥+②⑦)
- ③① 합계 : 9,530,000원 (②⑧+②⑨+③①)
- ③② 기납부세액 : 4,000,000원 (⑫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③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 5,530,000원 (③①-③②)
- ③⑦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5,530,000원 (③③-③④+③⑤-③⑥)

〈농어촌특별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현재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⑥①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①⑧란)를 옮겨 적고 20%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⑥③란)을 계산합니다.

- ④① 과세표준: 2,400,000원 (별지 제68호 서식 ①⑧란의 금액)
- ④③ 산출세액: 480,000원 (⑥① × 세율20%)
- ④④ · ④⑥란의 금액: 480,000원
- ④⑨ · ⑤① · ⑤③란의 금액: 480,000원 (④⑥+④⑦-④⑧)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1 성명	최 공 정	2 주민등록번호	7 2 0 2 0 3 - 1 * * * * *
3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4 주소지 전화번호	02-****-****	5 사업장 전화번호	02-****-****
6 휴대전화	010-****-****	7 전자우편주소	
8 기장의무	1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
9 신고유형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을 32 추계-단순을 35 분리과세 40 비사업자		
10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1 금융기관/채신관서명	12 계좌번호
13 성명 홍길동	14 사업자등록번호 2 0 8 - 3 6 - * * * * *
15 대리인	16 대리구분 17 기장 18 조정 19 신고 20 성실확인
17 관리번호	18 조정번호 1 - * * * *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합소득금액	19	100,000,000	
소득공제	20	10,000,000	
과세표준	21 (19-20)	90,000,000	41 2,400,000
세율	22	35%	42 20%
산출세액	23	16,600,000	43 480,000
세액감면	24	3,320,000	
세액공제	25	3,750,000	
종합과세	26 (23-24-25)	9,530,000	44 480,000
결정세액	27		45
분리과세	28	9,530,000	46 480,000
합계	29 (26+27)		47
가산세	30		48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1	9,530,000	49 480,000
합계	32 (28+29+30)	4,000,000	50
기납부세액	33	5,530,000	51 480,000
납부(환급)할 총세액	34		52
납부특례세액	35		
분납할 세액	36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37 (33-34+35-36)	5,530,000	53 480,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신고인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④ 상 호	세종 상사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31-35-*****						
⑥ 기 장 의 무	1						
⑦ 신 고 유 형 코 드	14						
⑧ 주 업 종 코 드	192001						
⑨ 총 수 입 금 액	1,500,000,000						
⑩ 필 요 경 비	1,400,000,000						
⑪ 소 득 금 액(⑨ - ⑩)	100,00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①⑥ 주택수(개)	①⑦ 수입금액	①⑧ 필요경비	①⑨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②①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②①상호(성명)	②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②③소득세	②④농어촌특별세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33쪽 중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소 득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100,000,000				10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00,000,000				100,00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⑪ 소득공제명세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1명)	1,000,000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illegible]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000,000	
⑳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000,000	
㉑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10,000,000	㉒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320,000	131-35-*****
⑤ 세액감면 합계		3,320,000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 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150,000		
		(출산·임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12% (15%)			
		퇴 직 연 금					
		연 금 저 축					
		ISA만기 시 연금 계 좌 납 입 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또는 30%		
		「소득세법」 제34조제3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조특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0,000		1,200,000	131-35-*****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6,000,000		2,400,0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5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목 (조 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			40/100(60/100)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			20/100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			40/100(60/100)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			10/100	10/100	
③ 납부지연	미납부	납부세액		(환)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지연제출		지급(불명)금액			1/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지연발급		공급금액			0.25/100		
		불명		공급금액			0.125/100		
		전자계산서외발급		공급금액			2/100		
		불명		공급금액			1/100		
		전자계산서미전송		공급금액			1/100		
		전자계산서지연전송		공급금액			3/1,000(1/100)		
	계산서표합계	미제출(불명)지연제출		공급(불명)금액			1/1,000(5/1,00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미제출(불명)지연제출		공급(불명)금액			0.5/100		
소계			지연제출금액			0.3/100			
⑤ 증빙불비	미허위	수취금액		미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불	제출명		미제출명			2/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수입금액			1/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사용금액		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성실금액		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실건수		실건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발급수취금액			2/100		
	미가맹	수입금액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불성실	성실금액		성실금액			5/100		
	발급거부·불성실	실건수		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	공급금액		공급금액			20/100(10/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배분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⑮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0.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등록기간수입금액			2/1,000		
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⑱ 합계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4,0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및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합계				⑪	4,000,000	㉖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명	최공정	② 주민등록번호	720203-1*****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	세종상사	④ 사업자등록번호	131-35-*****

(2021)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5	1	0	3	0	6	-	2	*	*	*	*	*	*	○			-	-					1		8,000,000	X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제출자

최공정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성방법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상 호	세종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최 공 정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최 공 정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최자녀	⑩ 신청인과의 관계	자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⑮ 장학금 등 (B)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2021.2.23	대학교		11,000,000			11,000,000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⑰ 구입연월	⑱ 품 목	⑲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신청인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세종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성명 최 공 정	④ 생년월일 710203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전화번호:)	

2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감면율	⑦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충족 감면세액
10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0				
10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10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10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10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20%	16,600,000	3,320,000	
106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107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10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5항	17C				
10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5항	179				
11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11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11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113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1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1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116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8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117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118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119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12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12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12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12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124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125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12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127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4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감면율	⑦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총액 감면세액
⑫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⑬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⑮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⑯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F				
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2항	11H				
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⑳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㉑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 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㉒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㉓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㉔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㉕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㉖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6항	13T				
㉙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㉚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㉛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 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 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 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㉝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㉞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㉟ 기타		164				
㊱ 세액감면 합계		1A4	20%	16,600,000	3,32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4쪽 중 제3쪽)

-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¹⁰⁸~¹⁰⁹, ¹¹⁷, ¹²⁷, ¹³³ ~ ¹⁴⁰에 대해 적용)
 - ¹¹⁰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A방식)
 ¹²⁰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¹⁰⁸~¹⁰⁹, ¹³⁴~¹³⁹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중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⑰ 일반감면한도 (=⑮)
	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⑱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a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100%)
	⑰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a, b]) a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b 투자누계액(⑮ × 20%)		
	⑲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⑯ + ⑰)		㉑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⑰, ⑱])
㉒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⑲ - ⑩) 또는 (㉑ - ⑩)			

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²³ 합계	²⁴ 개월 수	²⁵ 상시근로자 수 (= ²³ ÷ ²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²⁶
직전 과세연도															²⁷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²⁸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²⁶ - ²⁷)		²⁹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²⁸)									
1억원		500만원													

⑥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³⁰ 합계	³¹ 개월 수	³² 상시근로자 수 (= ³⁰ ÷ ³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³³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³² 상시근로자 수		³³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³²)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신청인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총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⑪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6.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8.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9.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세종상사	사업자등록번호 131-35-*****
	성 명	최공정	생년월일 710203
	업 종	제조업 신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신청 내용	과세기간	2021년 2021년	1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2,000,000
공제세액 계산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1,200,000
		③ 공제한도액		1,200,000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1,200,000

2. 당기 공제세액(=④):

1,200,000 원

(단위: 원)

과세기간	공제 대상세액										⑰ 결손 등 사유로 미공제액	⑱ 공제 세액 (⑰-⑱)	⑲ 소멸	이월액 (⑱-⑲-⑲)
	⑤ 당기분 (=④)	이월분					⑳ 계 (⑤+⑥+⑦+⑧ +⑨+⑩+⑪+⑫ +⑬+⑭+⑮)							
		⑥1차연도	⑦2차연도	⑧3차연도	⑨4차연도	⑩5차연도								
		⑪6차연도	⑫7차연도	⑬8차연도	⑭9차연도	⑮10차연도								
2021	1,200,000									1,200,000	1,200,000			
합 계	1,200,000									1,200,000	1,2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신청인

최공정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이 서식은 거주자별로 작성합니다.
- "① 성실신고확인비용"란은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실제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적습니다.
- "③ 공제한도액" 란은 다음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120만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 : 150만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①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세종상사 131-35-*****	③성명	최 공 정

1. 소득공제 (단위: 원)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소득공제금액)	비 고
④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⑪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⑩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 표준+소득공제 금액) × 세율 - 산출세액
⑤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2. 세액감면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⑦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⑫세액감면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감면세액
⑧			
⑨			
⑩			

3. 세액공제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⑪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2,400,000원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⑬세액공제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감면세액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공제·감면세액(⑦~⑰) 합계		2,400,000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
성 명 : 김 한 국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 (1)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 ① 업종 : 부동산임대업
 - ② 2021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2020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 ③ 신고유형 : 추계신고
- (2)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한국식당
- ① 업종 : 음식점업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50%)
 - ② 2021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0원
2020년도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 ③ 신고유형 : 복식기장 (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7. 2. 4		
배	우	자	69. 3. 5	없 음	
장		모	52. 5.10	"	만69세
자	녀	(1)	01. 7.20	"	만20세
자	녀	(2)	02. 9. 8	"	만19세

자료4 기타

- ①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720,000원을 납부하였음
- ②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⑫ 세액감면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⑪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별	복식 부기	간편 장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 만원이상	1억5천 만원미만	3천6백 만원이상	3천6백 만원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 만원이상	7천5백 만원미만	2천4백 만원이상	2천4백 만원미만

* 다만,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김한국의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대상업입니다.

* 단순경비율 코드 : 32

※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⑧ 주업종 코드 : 점포(자기땅) 임대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⑩ 필요경비 : 8,300,000원

* 부동산 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20,000,000 × 단순경비율 41.5% = 8,300,000

- ⑪ 소득금액 : 11,7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 ⑭ 대표공동사업자 · ⑮ 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의 9난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식당”, “123-45-*****”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조정에 해당합니다.
 - *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코드 : 11
 - ※ 사업소득을 비차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⑧ 주업종 코드 : 기타음식점업 552101
 -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지분 50%)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⑩ 필요경비 : 20,000,000원 (지분 50%)
- ⑪ 소득금액 : 10,000,000원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⑭ 대표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이므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자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11,70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21,7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4,500,000원(3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720,000(연간 납입금액)

⑫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장모,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⑫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⑯) : 8,220,000원

⑫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500,000원(①~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⑮ 종합소득금액 : 21,700,000원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㉔ 소득공제 : 8,220,000원 (㉑ 소득공제명세서의 ㉔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㉕ 과세표준 : 13,480,000원 (㉑ 종합소득금액 - ㉔소득공제)

㉖ 세율 · ㉗ 산출세액 : 15%, 942,000원

* 과세표준 13,480,000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942,000원

㉑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86,820원 (100만원 한도)

* 산출세액(942,000원) × $\frac{\text{기장된 종합소득금액}(10,00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21,700,000\text{원})}$ × 공제율(20%)

* 음식점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 기장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명이므로 세액공제 금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등 일정한 자는 별도)는 표준세액 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45-*****)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456,82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㉒ 가산세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부동산임대업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456,820원

* ㉕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㉕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종합과세 : 485,180원 (㉓-㉔-㉕)

㉘ (결정세액)종합과세 : 485,180원 (㉖+㉗)

㉙ 합계 : 485,180원 (㉘+㉙+㉚)

㉛ 기납부세액 : 500,000원

* ㉛ 기납부세액명세서(신고서 제21쪽)의 ㉛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 : △14,820원 (㉙-㉛)

* 기납부세액(㉛)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㉙)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㉜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4,820원 (㉜-㉞+㉟-㊱)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 한국			② 주민등록번호	6 7 0 2 0 4 - 1 * * * * *				
③ 주소	서울 종로구 퇴계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지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자기조정 ⑫외부조정 ⑬성실신고확인 ⑭간편장부 ⑮추계-기준을 ⑯추계-단순을 ⑰분리과세 ⑱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⑩영기신고 ⑪수정신고 ⑫경청청구 ⑬기한후신고 ⑭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123-45-67800		
3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⑰ 가장 ⑱ 조정 ⑲ 신고	⑳ 관변번호	-	-	-	㉑ 조정번호	-
		㉒ 대리구분	㉓ 성실확인	㉔ 관변번호	-	-	-	㉕ 조정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 합 소 득 금 액				⑲	21,700,000				
소 득 공 제				⑳	8,220,000				
과 세 표 준 (⑲-⑳)				㉑	13,480,000			㉒	
세 율				㉓	15%			㉔	
산 출 세 액				㉕	942,000			㉖	
세 액 감 면				㉗				㉘	
세 액 공 제				㉙	456,820			㉚	
결정세액				㉛	485,180			㉜	
합 계 (㉛+㉜+㉝)				㉞	485,180			㉟	
가 산 세				㊱				㊲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㊳				㊴	
합 계 (㉞+㊳+㊴)				㊵	485,180			㊶	
기 납 부 세 액				㊷	500,000			㊸	
납 부 (환급) 할 총 세 액 (㊵-㊷)				㊹	-14,820			㊺	
납 부 특 례 세 액				㊻				㊼	
분 납 할 세 액				㊽				㊾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㊹-㊻+㊽-㊾)				㊿	-14,820			㊿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 한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5쪽 중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40				
② 일련번호			1		1				
③ 사업장	소재지		중구 퇴계로 **		중구 퇴계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1				
④ 상 호			부동산 임대		한국식당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		123-45-*****				
⑥ 기 장 의 무			2		2				
⑦ 신 고 유 형 코 드			32		11				
⑧ 주 업 종 코 드			701201		552101				
⑨ 총 수 입 금 액			20,000,000		30,000,000				
⑩ 필 요 경 비			8,300,000		20,000,000				
⑪ 소 득 금 액 (⑨ - ⑩)			11,700,000		10,00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12.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김한국				
	주민등록번호				670204-1*****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 주택수(개)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⑲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20,000,000	8,300,000	11,700,000
주택임대소득				
합 계		20,000,000	8,300,000	11,700,000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11,700,000				11,700,000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10,000,000				1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21,700,000				21,70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5쪽 중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72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3명)	4,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⑫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한국	1	6 7 0 2 0 4 - 1 * * * * *	2	여장모	1	5 2 0 5 1 0 - 2 * * * * *
3	최서울	1	6 9 0 3 0 5 - 2 * * * * *				-
4	김중부	1	0 1 0 7 2 0 - 1 * * * * *				-
4	김충무	1	0 2 0 9 0 8 - 3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8,22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86,820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 녀 세 액 공 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 입 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교 육 비		(20%)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456,82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20/100	
		일 반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7/10,000	
③ 납 부 지연		미 납 부 (환 급)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	40/100(60/100)	
		미 납 부 (환 급)	수 입 금 액		14/10,000	
④ 보고불성실	계 산 서	지 급 명세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근로소득이 지급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명세서	미 제 출 (불 명)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연발급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불명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3/1,000(1/100)	
		합 계	공 급 (불 명) 가 액		1/1,000(5/1,000)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수증수취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기장		미 개 설·미 신고	산 출 세 액		20/100	
		미 사 용	수 입 금 액 등		0.2/100	
⑩ 사업용계좌		미 개 설·미 신고	미 사 용 금 액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금 액		20/100(10/10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산 출 세 액		5/100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합 계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500,000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500,000		㉖

210mm×297mm(백상지 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 동 사업장	① 상 호	한국식당		②사업자등록번호		1	2	3	-	4	5	-	*	*	*	*	*	
	③ 소재지	서울 중구 퇴계로 **				④개업일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 명	김한국		⑥주민등록번호		6	7	0	2	0	4	-	1	*	*	*	*	*
	⑦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 **				⑧전화번호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 조합원 등		여1 / 부2		⑪주업종 코 드		552101								
⑫ 신고유형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성실신고확인(14),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과세기간		21년1월 1일부터 21년12월31일까지								
총수입금액				⑯필요경비		40,000,000		⑰소득금액 (⑮ - ⑯)		20,000,000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70,000,000		60,000,000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⑳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⑳ 소득세 ㉕ 농어촌 특별세									
㉑성 명	㉒주민등록번호		㉓ 수입금액		㉔ 소득 금액	㉕ 가산세												
합 계			100%	60,000,000	20,000,000													
김한국	670204-1*****		50%	30,000,000	10,000,000													
정우정	671010-1*****		50%	30,000,000	10,000,000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자료1 김성실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현황

- ① (주)ABC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15,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3,750,000원
- ② (주)A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은행예금 이자소득 : 1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1,400,000원
-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 20,000,000원
- ④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20,000,000원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21. 3. 21.
 - 원천징수세액 : 배당소득 2,800,000원

자료2 약국 사업소득 현황

- 2021년 수입금액 80,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0원
- 2021년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사용금액 10,000,000원
- 2020년 수입금액 70,000,000원
-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3. 4. 1		
배 우	자	55. 3. 4	없음	
자	녀	00. 3. 1	"	만21세

자료4 기 타

- 중간예납 : 2,4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은행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작성 ⇒ ⑤ 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 ⑥ 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⑦ 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⑪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⑬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⑮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 약국 사업자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⑪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 ※ 사업소득을 비차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⑤ 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11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12
그 밖의 이자소득 : 1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 ⑤ 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11코드), 10,000,000원 (13코드), 20,000,000원 (15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3,750,000원(11코드), 1,4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⑥ 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21, 22, 23, 26, 28, 29)으로 적습니다.

* 금융소득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 21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 배당소득 : 22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 2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29

-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배당액 : 20,000,000원

*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 ⑥ 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 20,000,000원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 포함)과 합산하여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이자소득(4,5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000만원 전액이 배당가산 대상금액임

- ⑦ 배당가산액 : 2,200,000원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20,000,000원 × 가산율(11%) = 2,200,000원

- ⑧ 배당소득금액 : 22,200,000원

* ⑤ 배당액 20,000,000원 + ⑦ 배당가산액 2,200,000원 = 22,200,000원

-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 2,800,000원을 적습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 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중부약국”을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206-**-*****”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⑧ 주입중 코드 : 의약품 소매업 코드인 52311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90,000,000원

○ 소득세과-338, 2012.04.12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⑩ 필요경비 : 40,000,000원

⑪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 · ⑮ 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⑤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4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란에, ⑥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22,2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란에, ⑦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⑪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2000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인적공제 계(①~⑦) : 3,000,000원

②②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②⑧ 소득공제 합계(⑧~⑪+⑮+②①) : 3,000,000원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신고서 제23쪽)

〈1 금융소득명세〉

① 비영업대금이익 : 15,000,000원

*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20,000,000원

*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15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0원(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 10,000,000원

*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13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 합계 : 45,000,000원(①+②+③+④)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 20,000,000원

*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⑦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0원(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 26코드의 ⑥배당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 0원(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⑨ 배당소득 합계 : 20,000,000원(⑥+⑦+⑧)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⑩ 금융소득금액 : 65,000,000원(⑤+⑨)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 20,000,000원

⑫ 기준초과금액 : 45,000,000원(⑩-⑪)

⑬ 배당가산액 : 2,200,000원

*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⑦배당가산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⑮ 종합소득금액 : 97,200,000원(⑫+⑬+⑭)

⑯ 소득공제 : 3,000,000원

*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⑫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⑰ 과세표준 : 94,200,000원(⑮-⑯)

⑱ 기본세율 · ⑲ 산출세액 : 35%, 18,070,000원

⑳ $[(⑪) \times (14/100)]$: 2,800,000원

* ⑪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 징수세율 14/100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

㉑ 비교산출세액 계 : 20,870,000원(⑲+㉐)

㉒ 비영업대금이익(①+③) $\times 25/100$: 3,750,000원

㉓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50,000,000원(⑩-(①+③))

㉔ $[(㉓) \times (14/100)]$: 7,000,000원

* ㉐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 ㉒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㉖ 소득공제 : 3,000,000원

* ㉒ 소득공제명세서의 ㉓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㉓ 과세표준 : 47,000,000원 (㉑-㉒)

㉔ 기본세율㉕산출세액 : 24%, 6,060,000원

* ㉕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㉑ 배당소득 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㉖과 ㉗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㉖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㉗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㉘ 비교산출세액 계 : 16,810,000원 (㉑+㉒+㉕)

㉙ 종합소득산출세액 : 20,870,000원 (㉑와 ㉘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㉚ ㉑와 (㉙-㉚) 중 적은 금액] : 2,200,000원

13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2,200,000원

*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40란에 산출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등 일정한 자는 별도)는 표준세액 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2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2,400,000원

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5,150,000원

* 5 이자소득명세서 6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⑥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2,800,000원

* 6 배당소득명세서 9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10,350,000원 (①~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17,200,000원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3,000,000원

*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②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14,20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35%, 20,870,000원

* ⑪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③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㉔ 세액공제 : 2,270,000원

* ⑬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종합과세 : 18,600,000원 (㉒-㉔-㉔)

㉘ (결정세액)종합과세 : 18,600,000원 (㉖+㉖)

㉙ 합계 : 18,600,000원 (㉘+㉘+㉘)

㉚ 기납부세액 : 10,350,000원

* ⑬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8,250,000원 (㉙-㉚)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성실 ② 주민등록번호 5 3 0 4 0 1 - 1 * * * * *

③ 주소 인천 남동구 인화로 **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⑥ 휴대전화 ⑧ 직장주소 ⑨ 직장주소

⑩ 신고유형 ⑪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을 32 추계-단순을 35 분리과세 40 비사업자

⑪ 신고구분 ⑫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⑬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⑭ 계좌번호

3 세무대리인 ⑮ 성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 ⑰ 전화번호

⑱ 대리구분 ⑲ 1기장 2조정 3신고 ⑳ 관리번호 - ㉑ 조정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합소득금액 ⑲	117,200,000	
소득공제 ⑳	3,000,000	
과세표준(⑲-⑳) ㉑	114,200,000	㉒
세율 ㉓	35%	㉔
산출세액 ㉕	20,870,000	㉖
세액감면 ㉗		
세액공제 ㉘	2,270,000	
종합과세(㉕-㉘) ㉙	18,600,000	㉚
결정세액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㉛		㉜
합계(㉙+㉛) ㉝	18,600,000	㉞
가산세 ㉟		㊱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㊲		㊳
합계(㉝+㊲) ㊴	18,600,000	㊵
기납부세액 ㊶	10,350,000	㊷
납부(환급)할 총세액(㊴-㊶) ㊸	8,250,000	㊹
납부특례세액 차감 ㊺		㊻
가산 ㊼		㊽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㊾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㊸-㊾) ㊿	8,250,000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성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35쪽 중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 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1	(주)ABC	216-81-*****	15,000,000	3,750,000
13	1	(주)AA은행	201-81-*****	10,000,000	1,400,000
15	1	CC.ltd	-	20,000,000	-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지급법인	⑤ 배 당 액	배 당가산액 (gross-up)		⑧ 배 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BB 206-81-*****	20,000,000	20,000,000	2,200,000	22,200,000	2,800,000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남동구 인하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				
④상호			중부약국							
⑤사업자등록번호			206-**-*****							
⑥기장유무			1							
⑦신고유형코드			11							
⑧주업종코드			523111							
⑨총수입금액			90,000,000							
⑩필요경비			40,000,000							
⑪소득금액(⑨-⑩)			50,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35쪽 중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45,000,000				45,000,000
배당소득금액	22,200,000				22,2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 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50,000,000				5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17,200,000				117,20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3,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16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실	1	5	3	0	4	0	1	-	1	*	*	*	*	*	*									
3	이행복	1	5	5	0	3	0	4	-	2	*	*	*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3,000,000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2,200,000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산·입양 명)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 입 액					
	보 험 료			12%		
	보 장 성			15%		
특별세액 공 제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 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2,27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14/10,0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20/100	
	일 반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7/10,000	
③ 납 부 지연	미 납 부 (환 급)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④ 보고불성실	계 산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22/100,0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1/100	
		근로소득과세명세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제출(위장가공)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연발급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불명	공 급 가 액		2/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 급 가 액		1/100	
		합 계	지 연 전 송 금 액		3/1,000(1/100)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1/1,000(5/1,000)	
⑥ 영수증수취불명세서미제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0.5/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3/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⑨ 무기장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미 개 설·미 신고	산 출 세 액			20/100	
	미 사 용	수 입 금 액 등			0.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미 사 용 금 액			0.2/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100	
	위 장 가 공	성 실 건 수			5,000원	
	미 가 맹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 급 거 부·불 성 실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100	
	위 장 가 공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불성실기재금액		20/100(10/10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미 작 성 등	미 작 성 등 금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0.2/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⑱ 합 계						
① 산 출 세 액					5/100	
②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③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2,400,000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5,150,000			㉒	
	배 당 소 득	⑥	2,800,000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10,350,000			㉖	

210mm×297mm(백상지 80g/㎡)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35쪽 중 제23쪽)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2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2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10,000,000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20,000,000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45,000,000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65,000,000	⑳ $[(②+⑦) \times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㉑ $[③ \times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45,000,000	㉒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당가산액	2,200,000	㉓ 소득공제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	㉔ 과세표준(㉓-㉒)	
⑮ 종합소득금액(⑫+⑬+⑭)	97,200,000	㉕ 기본세율	
⑯ 소득공제	3,000,000	㉖ 산출세액	
⑰ 과세표준(⑮-⑯)	94,200,000	㉗ 종합소득산출세액(㉔+㉕+㉖)	
⑱ 기본세율	35%		
㉒ 산출세액	18,070,000		
㉓ $[⑰ \times (14/100)]$	2,800,000		
㉔ 비교산출세액계(㉒+㉓)	20,870,000		
㉕ 비영업대금이익 $[(①+③) \times (25/100)]$	3,750,000		
㉖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⑩-(①+③))	50,000,000		
㉗ $[② \times (14/100)]$	7,000,000		
㉘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50,000,000		
㉙ 소득공제	3,000,000		
㉚ 과세표준(㉙-㉘)	47,000,000		
㉛ 기본세율	24%		
㉜ 산출세액	6,060,000		
㉝ 비교산출세액 계(㉔+㉗+㉚)	16,810,000		
㉞ 종합소득산출세액(㉔)와 ㉝ 중 큰 금액	20,870,000		

4 배당세액공제

㉟ $[⑬ \text{와 } (㉞-㉟) \text{ 중 작은 금액}]$	2,200,000		

210mm×297mm(백상지 80g/m²)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자료1 김성공 교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 (1) 지급처 : A+대학교
- (2)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 (3)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 ① 소득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각각 1,500,000원
 - ② 세액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1,000,000원
교육비 6,000,000원 지출
- (4)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 2,925,000원

자료2 사업소득자료 : 연구개발용역 대가

- (1) X법인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 받음. (직전연도 수입금액 : 90,000,000원)
- ① 연구용역대가 100,000,000원, ② 용역제공완료일 2021.11.30
-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함
- ① 필요경비 70,000,000원, ② 소득금액 30,000,000원
- (3)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3,000,000원

자료3 기타소득 자료 : 원고료

- (1) C출판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2021. 10. 1.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음.
- ① 원고료 7,500,000원 ② 법정필요경비(60%) : 4,500,000원
 - ③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 600,000원

자료4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8. 4.26		근로소득
배	우	자	59. 4.16	없 음	
자		녀	93. 8. 9	"	만19세
자		녀	02. 2.17	"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신고서 작성 해설

- 김성공 교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X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 김성공 교수가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금액과 조건부 과세대상(무조건 분리·종합과세 외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과세대상도 종합과세 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건부 과세대상에 대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공 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③ 세무대리인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⑧ 근로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명세서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에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⑨ 신고유형 : ⑫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❷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⑬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⑯대리구분, ⑰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⑯대리구분란에는 ②조정에 ✓표를 합니다.

❸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사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⑦ 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연구 및 개발업 코드인 730000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 70,000,000원

*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⑪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⑨ 총수입금액 - ⑩ 필요경비)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 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⑯ 일련번호 : 1

⑰ 상호(성명) : X법인

⑱ 사업자등록번호 : 209 - 81 - *****

⑲ 소득세 : 3,000,000원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 코드 : 51

② 일련번호 : 1

③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 ⑤ 총수입금액(총급여액 · 총연금액) :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㉑ 총급여)
- ⑥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12,25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㉒ 근로소득공제)
- ⑦ 소득금액 : 37,750,000원(⑤-⑥)
- ⑧ 원천징수소득세 : 2,925,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㉓ 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㉑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㉑ 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㉒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의 ⑦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㉒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㉓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 공제란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㉓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①⑨ 종합소득금액 : 67,750,000원
- ㉑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 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⑩ 소득공제 : 4,500,000원
- ㉒ 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③ ⑪ 과세표준 : 63,250,000원 (①⑨종합소득금액 - ②⑩소득공제)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㉔ 세율 : 24%

㉕ 산출세액 : 9,960,000원 ($63,250,000 \times 24\% - 5,22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㉖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660,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6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 5,549,667원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 9,960,000\text{원}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 } 37,75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 } 67,750,000\text{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text{원} + (4,249,667\text{원} \times 30\%) = 1,989,900\text{원} (\text{공제한도인 } 660,000\text{원을 공제})$$

a) 공제액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text{Max}(\text{①}, \text{②})$ $\text{①} 74\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3,300\text{만원}) \times 8/1,000]$ $\text{②} 66\text{만원}$
7,000만원 초과	$\text{Max}(\text{①}, \text{②})$ $\text{①} 66\text{만원} - [(\text{총급여액} - 7,000\text{만원}) \times 1/2]$ $\text{②} 50\text{만원}$

○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 120,000원

공제대상금액 : 1,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2%를 적용한 금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 교육비 : 900,000원

공제대상 금액 : 6,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900,000원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83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16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⑦ 원천징수세액(사업소득) : 3,000,000원을 적습니다.

⑧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 2,925,000원(8 근로소득명세서의 ⑧ 소득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5,925,000원

4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②5 세액공제 : 1,830,000원

* 16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②6 (결정세액)종합과세 : 8,130,000원 (23-24-25)

②8 (결정세액)합계 : 8,130,000원 (26+27)

③1 합계 : 8,130,000원 (28+29+30)

③2 기납부세액 : 5,925,000원

* 16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3 납부(환급)할 총세액 : 2,205,000원 (31-32)

③7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2,205,000원 (33-34+35-36)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성공	② 주민등록번호	5 8 0 4 2 6 - 1 * * * * *
③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장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 성명	박조정	⑭ 사업자등록번호	1 3 5 - * * - * * * *	⑮ 전화번호	031-****-****
⑯ 대리구분	⑪ 기장 ⑫ 조세 ⑬ 신고 ⑭ 공인	⑰ 관리번호	* - * * * *	⑱ 조정번호	2 - * * *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67,750,000	
소득공제	⑯	4,500,000	
과세표준(⑮-⑯)	⑰	63,250,000	④①
세율	⑱	24%	④②
산출세액	⑲	9,960,0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1,830,000	
종합과세(㉑-㉒-㉓)	㉒	8,130,000	④④
결정세액	㉓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㉔		④⑥
합계(㉒+㉔)	㉕	8,130,000	④⑦
가산세	㉖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㉗		④⑨
합계(㉕+㉗)	㉘	8,130,000	④⑩
기납부세액	㉙	5,925,000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㉘-㉙)	㉚	2,205,000	④⑫
납부특례세액	㉛		④⑬
차감	㉜		④⑭
가산	㉝		④⑮
분납할 세액	㉞		④⑯
2개월내	㉟		④⑰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㉚-㉛-㉜-㉝)	㊱	2,205,000	④⑱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성공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박조정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기장유무	1								
⑦신고유형코드	12								
⑧주업종코드	730000								
⑨총수입금액	100,000,000								
⑩필요경비	70,000,000								
⑪소득금액(⑨-⑩)	30,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⑩주택수(개)	⑪수입금액	⑫필요경비	⑬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⑭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⑮상호(성명)	⑯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⑰소득세	⑱농어촌특별세
1	X법인	209-81-*****	3,000,000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30,000,000				30,000,000
근로소득금액	37,750,000				37,75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67,750,000				67,75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35쪽 중 제15쪽)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1명)	1,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4,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16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공	1	5 8 0 4 2 6 - 1 * * * * *				
3	이성실	1	5 9 0 4 1 6 - 2 * * * * *				-
4	김공정	1	0 2 0 2 1 7 - 2 * * * * *				-
4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4,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660,000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150,000	
		(출 산·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12% (15%)	
		퇴 직 연 금				
		연 금 저 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 입 액				
특별 세액 공제	보 험 료	보 장 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6,000,000	15%	900,000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83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20/1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환) 세 액	()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근로소득과 명세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제출 (불 명)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공 급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합 산 계 서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 불비	미 수 취 허 위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무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 사업 장 등 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고 등	미 개 설·미 신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합 계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3,000,000	㉔	
	근 로 소 득	⑧		2,925,000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5,925,000	㉖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대전 중구 보문로 ××

성 명 : 이 세 중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상 호 : 대전예체능학원

사업장 : 대전 중구 보문로 ××

2021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 35,000,000원

2020년도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신고유형 : 간편장부, 업종코드 : 809003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女		68. 1. 3	25,000,000	사업소득
배 우	자		67. 3. 5	30,000,000	근로소득
자 녀	(1)		02. 9. 1	없 음	만19세
자 녀	(2)		03. 1. 8	"	만18세

※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2명의 부양가족 공제하였음

자료4 기부금 내역

기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종류	기부금액
본 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100,000원
본 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500,000원*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 : 500,000원(2013년 지급분)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간편장부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⑮ 기납부세액
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 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②간편장부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
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⑤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 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경우이므로
20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 코드 : 예체능계열학원 코드인 8090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⑩ 필요경비 : 35,000,000원

⑪ 소득금액 : 25,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 · 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5,000,000원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11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⑥ 부녀자공제 : 5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2,000,000원

⑭ 기부금공제 : 500,000원

* 지정기부금 공제액 : 이월액 500,000원(2013년 지급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25,000,000) $\times \frac{10}{100}$ = 2,500,000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times 100$ 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⑮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5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2,500,000원

13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등 일정한 자는 별도)은 70,0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금액 : 100,000원 세액공제 : 90,909원

$$* \text{공제금액} = \text{정치자금기부금}(100,000\text{원}) \times \frac{100}{110} = 90,909$$

⑥ 세액공제 합계 : 160,909원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⑩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용합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①~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⑱ 종합소득금액 : 25,000,000원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용합니다.}

⑳ 소득공제 : 2,500,000원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㉔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용합니다.)

㉑ 과세표준 : 22,500,000원 (⑱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 : 15%

㉓ 산출세액 : 2,295,000원

$$* \text{과세표준 } 22,500,000\text{원} \times \text{세율 } 15\% - \text{누진공제액 } 1,080,000\text{원} = \text{산출세액 } 2,295,000\text{원}$$

㉕ 세액공제 : 160,909원(⑬ 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용합니다.)

㉖ (결정세액)종합과세 : 2,134,091 (㉓-㉕-㉖)

㉘ (결정세액)합계 : 2,134,091 (㉖+㉗)

㉙ 합계 : 2,134,091원 (㉘+㉙+㉚)

㉛ 기납부세액 : 300,000원 (⑩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용합니다.)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34,091원 (㉙-㉛)

㉝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834,091원 (㉜-㉞+㉟-㊱)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이 세 종	② 주민등록번호	6 8 0 1 0 3 - 2 * * * * *
③ 주소	대전 중구 보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⑪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⑬ 경정청구 ⑭ 기한후신고 ⑮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⑩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⑰ 기장 ⑱ 조정 ⑲ 신고 ⑳ 성실확인	㉑ 관번호	-	㉒ 조정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25,000,000	
소득공제	⑯	2,500,000	
과세표준(⑮-⑯)	⑰	22,500,000	④①
세율	⑱	15%	④②
산출세액	⑲	2,295,0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160,909	
종합과세(㉑-㉒-㉓)	㉔	2,134,091	④④
결정세액	㉕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㉖		④⑥
합계(㉕+㉖)	㉗	2,134,091	④⑦
가산세	㉘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㉙		④⑨
합계(㉗+㉙)	㉚	2,134,091	④⑩
기납부세액	㉛	300,000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㉛-㉜)	㉜	1,834,091	④⑫
납부특례세액	㉝		④⑬
분납할 세액	㉞		④⑭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㉞)	㉟	1,834,091	④⑮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이 세 종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35쪽 중 제9쪽)

7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 상 호		대전학원								
⑤ 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⑥ 기 장 의 무		2								
⑦ 신고유형코드		20								
⑧ 주 업 종 코 드		809003								
⑨ 총 수 입 금 액		60,000,000								
⑩ 필 요 경 비		35,000,000								
⑪ 소 득 금 액 (⑨ - ⑩)		25,00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 주택수(개)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⑲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25,000,000					25,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25,000,000					25,00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35쪽 중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②배 우 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500,000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500,000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2,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500,000

⑫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이세종	1	680103-2*****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2,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 목 (법 조 문)	② 코 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 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 산·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 공 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12% (15%)		
	퇴 직 연 금				
	연 금 저 축				
	ISA만기 시 연금 계좌 납입액				
특별세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0 만 원 이 하	100,000	100/110	90,909	
기 부 금	1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60,909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목 (조 문)	② 코 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35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고	무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② 과소신고	일 반 무 신고	무 신고 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부 정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부 (환 금) 세 액	과 소 신고 납부세액			10/100	
		수입금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합 산 계 서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황 신고		무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 신고 등		미 개 설·미 신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 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미 가 행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부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합 계						

㉑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총 간 에 납 세 액					①	300,000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에 정 신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에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㉑	
					배 당 소 득	⑥		㉒	
					사 업 소 득	⑦		㉓	
					근 로 소 득	⑧		㉔	
					연 금 소 득	⑨		㉕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300,000	㉖		

210mm × 297mm(백상지 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앞 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2021년 귀속)						
①주소지		대전 중구 보문로 ××			②전화번호	
③성명		이 세 종			④생년월일 680103	
사업장	⑤소재지	중구 보문로 ××				
	⑥업종	예체능계열학원				
	⑦주업종코드	809003				
	⑧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⑨과세기간	2021. 1. 1.부터		부터	부터	부터
		2021. 12. 31.까지		까지	까지	까지
⑩소득종류	(30, 40)		(30, 40)	(30, 40)	(30, 40)	
총 수 입 금 액	⑪장부상 수입금액	60,000,000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⑪-⑫+⑬)	60,000,000				
필 요 경 비	⑮장부상 필요경비 (부표 ④의 금액)	35,000,000				
	⑯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⑰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⑱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⑯+⑰)					
⑲차가감 소득금액(⑭-⑱)		25,000,000				
⑳기부금 한도초과액						
㉑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㉒해당연도 소득금액 (⑲+㉑-㉒)		25,000,000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제 출 인 이 세 종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음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앞 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21년 귀속)						
① 주소지 대전 중구 보문로 xx			② 전화번호			
③ 성명 이 세 종			④ 생년월일 680103			
사업장	⑤ 소재지		중구 보문로 xx			
	⑥ 업종		예체능계열학원			
	⑦ 주업종코드		809003			
	⑧ 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⑨ 과세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⑩ 소득종류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출액		60,000,000			
	⑫ 기타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60,000,000			
필요 경비	매출원가	⑭ 기초재고액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⑳)		2,000,000		
		⑯ 기말재고액				
		⑰ 매출원가(⑭+⑮-⑯)		2,000,000		
	제조비용	재료비	⑱ 기초 재고액			
			⑲ 당기 매입액			
			㉑ 기말 재고액			
			㉒ 당기 재료비 (⑱+⑲-㉑)			
		㉓ 노무비				
	㉔ 경비					
	㉕ 당기 제조비용 (㉒+㉓+㉔)					
	일반관리비등	㉖ 급료		20,000,000		
		㉗ 제세공과금		3,000,000		
		㉘ 임차료		10,000,000		
		㉙ 지급이자				
		㉚ 접대비				
		㉛ 기부금				
		㉜ 감가상각비				
		㉝ 차량유지비				
		㉞ 지급수수료				
㉟ 소모품비						
㊱ 복리후생비						
㊲ 운반비						
㊳ 광고선전비						
㊴ 여비교통비						
㊵ 기타						
㊶ 일반관리비등계 (㉖~㊵의 합계)		33,000,000				
㊷ 필요경비 합계(㊰+㊷)		35,000,000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대전 예체능학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이 세 종	④주민등록번호	680103-2*****
	⑤주소	대전 중구 보문로 xx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 xx (전화번호 :)		

② 해당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부처		⑪기부자			기부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⑭기부장려금 신청금액
20	금전						1		100,000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코드		10	20	40	41	42	10,40,41
합계	600,000		100,000		500,000		
본인	600,000		100,000		5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⑬기부금액	⑭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⑮공제대상 금액(⑬-⑭)	해당연도 공제 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 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 금액	이월 금액
20	2020	100,000		100,000		100,000		
41	2013	2,500,000	2,000,000	500,000		500,000	0	0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xx, 성 명 : 김 홍 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 ① 상 호 : 흥덕노래방, 사업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xx
- ② 신규사업자(2021.2.1.개업)로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 ③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924903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3. 1. 3		
배	우	자	81. 3. 5	없 음	
자	녀		12. 9. 1	"	만9세
자	녀		14. 1. 8	"	만7세

자료4 주요경비 내용

- ① 매입비용 : 5,000,000원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② 임차료 : 10,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③ 인건비 : 12,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 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⑫ 세액감면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⑮ 가산세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③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 ④ 과세기간 : 2021.2.1.(개시일)부터 2021.12.31.까지로 적습니다.

- 377

- ③⑩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③①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 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③③란에 적은 후 합계(③①+③③)한 금액을 ③④란에 적습니다.
- ③④ · ③⑤ · ③⑥ · ③⑦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 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흥덕노래방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301-**-*****)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하므로 31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코드 :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상의 ⑨, ⑩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⑫ 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로서 21.2.1. 개업일이므로 2.1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42,280,000원
-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⑪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 1,500,000원
- ② 배우자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6,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⑳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⑰) : 7,200,000원

⑬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000원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등은 별도)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21쪽)

-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120,000원
 - * 지급금액 12,000,000원 × 1% = 120,000원
 -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⑰ 가산세 합계 : 120,000원 (④~⑮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①⑨ 종합소득금액 : 42,280,000원{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⑩ 소득공제 : 7,200,000원(⑩ 소득공제명세서의 ②②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① 과세표준 : 35,080,000원(①⑨ 종합소득금액 - ②⑩ 소득공제)
- ②② 서울·②③ 산출세액 : 15%, 4,182,000원
 * 과세표준 35,080,000원 × 서울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4,182,000원
- ②⑤ 세액공제 : 370,000원 (①③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⑥ (결정세액)종합과세 : 3,812,000원 (②③-②④-②⑤)
- ②⑧ (결정세액)합계 : 3,812,000원 (②⑥+②⑦)
- ②⑨ 가산세 : 120,000원
- ③① 합계 : 3,932,000원 (②⑧+②⑨+③①)
- ③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 3,932,000원 (③①-③②)
- ③⑦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932,000원 (③③-③④+③⑤-③⑥)

6. 추계-기준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민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 홍 덕	② 주민등록번호	7 3 0 1 0 3 - 1 * * * * *
③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⑪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⑬ 경정청구 ⑭ 기한후신고 ⑮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 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① 가장 ② 조정 ③ 신고 ④ 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42,280,000	
소득공제	⑯	7,200,000	
과세표준	⑰(⑮-⑯)	35,080,000	④①
세율	⑱	15%	④②
산출세액	⑲	4,182,0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370,000	
종합과세	㉒(⑲-⑳-㉑)	3,812,000	④④
결정세액	㉓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㉔		④⑥
합계	㉕(㉓+㉔)	3,812,000	④⑦
가산세	㉖	120,000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㉗		④⑨
합계	㉘(㉕+㉖+㉗)	3,932,000	④⑩
기납부세액	㉙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	㉚(㉘-㉙)	3,932,000	④⑫
납부특례세액	㉛		④⑬
차감	㉜		
가산	㉝		④⑭
분납할 세액	㉞(㉚-㉜-㉝)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㉟(㉞+㉜+㉝)	3,932,000	④⑮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 홍 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 업 장	소 재 지		청주 흥덕구 죽천로 xx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흥덕노래방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301-**-*****				
⑥기 장 의 무	2				
⑦신 고 유 형 코 드	31				
⑧주 업 종 코 드	924903				
⑨총 수 입 금 액	80,000,000				
⑩필 요 경 비	37,720,000				
⑪소 득 금 액(⑨-⑩)	42,280,000				
⑫과 세 기 간 개 시 일	2.1				
⑬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6. 추계-기준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35쪽 중 제13쪽)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42,280,000				42,28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42,280,000				42,280,000

1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1,20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6,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⑫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흥덕	1	7	3	0	1	0	3	-	1	*	*	*	*	*	*						-			
3	임현희	1	8	1	0	3	0	5	-	2	*	*	*	*	*	*						-			
4	김성실	1	1	2	0	9	0	1	-	4	*	*	*	*	*	*						-			
4	김공정	1	1	4	0	1	0	8	-	3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7,200,000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 목 (법 조문)	② 코 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 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 금 계 좌 납 입 액					
특별세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목 (조문)	② 코 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고	부 정 무 신고	무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액			14/10,000	
	일 반 무 신고	무 신고 납부세액			20/1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부 (환 급) 세 액	()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2,000,000	1/100	120,0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 제 출 (불 명)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연 급 가 금 액		2/100	
		지연발급	공 연 급 가 금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연 급 가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연 급 가 금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합 계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위 허	미 수 취 위 허 금 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 제 출 불 명	미 제 출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⑨ 무기장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총 수 입 금 액		0.1/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미 개 설·미 신고	산 출 세 액		20/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 사 용	수 입 금 액 등		0.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성 실 건 수		5,000원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 행	수 입 금 액		1/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⑱ 합 계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성 실 건 수		5,000원	
⑲ 기납부세액명세서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⑳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㉑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㉒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㉓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㉔ 합 계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에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수 시 매 매 부	에 정 고 지 세 액	납 부 세 액	①		
		에 정 고 지 세 액	②		
		에 정 고 지 세 액	③		
		에 정 고 지 세 액	④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210mm×297mm(백상지 80g/㎡)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35쪽 중 제25쪽)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4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청주 흥덕구 죽천로 ××
④ 과 세 기 간						2021. 2. 1.부터 2021.12.31.까지
⑤ 상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5,000,000	㉓ 5,000,000	㉔	㉕
임 차 료	㉖ 10,000,000	㉗ 10,000,000	㉘	㉙
인 건 비	㉚ 12,000,000	㉛	㉜	㉝ 12,000,000
계(㉜=㉛)	㉞ 27,000,000	㉟ 15,000,000	㊱	㊲ 12,00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 성 명 : 홍 길 동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 ① 상 호 : 길동식당, 사업장 : 광주 동구 중앙로 ××
- ② 2021. 10. 1. 폐업, 한식점업 수입금액 : 94,100,000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170,000,000원
- ③ 구청으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음
-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900,000원 받음
-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5521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우	인	73. 1. 3	없 음	장애인
배		자	76. 3. 5		
자		녀	04. 9. 1		
자		녀	07. 1. 8		

자료4 주요경비 내용

- ① 매입비용 : 53,960,000원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1,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② 임차료 : 16,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③ 인건비 : 23,000,000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자료5 기타자료

- ① 중간예납 : 300,00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 연간 72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⑦ 사업 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 소득 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⑮ 가산세명세서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③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제25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 ××
- ④ 과세기간 : 2021.1.1.부터 폐업일까지 적습니다.
- ⑤ 상호 : 길동식당
- ⑥ 사업자등록번호 : 408-**-*****

⑦ 업태/종목 : 음식/한식점업

⑧ 업종코드 : 음식/한식점업 코드인 5521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 120,000,000 = 94,100,000 + 25,000,000 + 900,000

※ 영업손실보상금 25,00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9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⑪ · ③④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원

* ②② 매입비용 53,960,000원+②⑥임차료 16,000,000원+③⑩인건비 23,000,000원

⑭ 기준경비율 : 5.05% ($10.1\% \times 1/2$)

※ 2011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⑮ 금액 : 6,0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times 10.1\% \times 1/2 = 6,060,000$ 원

⑯ 필요경비계 : 99,020,000원

⑰ 기준소득금액 : 20,98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필요경비계 99,020,000원

⑱ 단순경비율 : 89.7%

⑲ 금액 : 12,3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times$ 단순경비율 89.7%) = 12,360,000원

⑳ 비교소득금액 : 42,024,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360,000원 $\times$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4배 = 42,024,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4배가 적용됩니다.

㉑ 소득금액 : 20,980,000원

* ⑰과 ㉑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㉒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1,500,000원을 ㉓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㉔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㉕란에 적은 후 이 세 가지를 합계(㉓+㉔+㉕)한 금액 53,960,000원을 ㉒란에 적습니다.

㉖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6,000,000원을 ㉗란에 적은 후 합계(㉗+㉘+㉙)한 금액 16,000,000원을 ㉖란에 적습니다.

㉚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㉛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㉜란에 적은 후 합계(㉛+㉜)한 금액을 ㉚란에 적습니다.

㉝ · ㉞ · ㉟ · ㊱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비용 중 ㉔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의 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상호를 적습니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코드 : 한식점업 코드인 552101 을 적습니다.
-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⑩란의 금액을 ⑨,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10.1)을 적습니다.
-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0,980,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⑪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 1,500,000원
- ② 배우자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 ⑤ 장애인(추가공제) : 2,000,000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8,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720,000원
-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⑳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8,720,000원

⑬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기재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등 일정한 자는 별도)는 표준세액 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①⑨ 종합소득금액 : 20,980,000원(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⑩ 소득공제 : 8,720,000원(⑩소득공제명세서의 ②②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⑪ 과세표준 : 12,260,000원(①⑨ 종합소득금액 - ②⑩ 소득공제)
- ②⑫ 세율·②⑬ 산출세액 : 15%, 759,000원
- * 과세표준 12,260,000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산출세액 759,000원
- ②⑭ 세액공제 : 370,000원 (①⑬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②⑮ (결정세액)종합과세 : 389,000원 (②⑬-②⑭-②⑮)
- ②⑯ (결정세액)합계 : 389,000원 (②⑮+②⑯)

⑮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21쪽)

- ⑤ 증빙불비가산세 : 10,000원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500,000원 $\times$ 2% = 10,000원

※ 직전년도(2020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⑨ 무기장가산세 : 151,800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151,800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1) 무신고가산세 : ㉠와 ㉡ 중 큰 금액인 84,000원

㉠ 수입금액 120,000,000원 $\times$ 0.07% = 84,000원

④ 무신고납부세액 89,000원 $\times$ 20% = 17,800원

*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 :

$$759,000(\text{산출세액}) - 370,000(\text{세액공제}) - 300,000(\text{중간예납}) = 89,000$$

(2) 무기장가산세 : 151,800원

산출세액 $759,000 \times 20\% = 151,800$

⑮ 가산세 합계 : 161,800원 (①~⑮의 합계)

⑮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⑩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 (①~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⑳ (결정세액)합계 : 389,000원

㉑ 가산세 : 161,800원

㉒ 합계 : 550,800원 (㉑+㉒+㉓)

㉓ 기납부세액 : 300,000원(⑮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㉔ 납부(환급)할 총세액 : 250,800원 (㉒-㉓)

㉕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250,800원 (㉒-㉓+㉔-㉕)

7. 추계-기준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홍길동	② 주민등록번호	7 3 0 1 0 3 -1 * * * * *
③ 주소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⑪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⑬ 경정청구 ⑭ 기한후신고 ⑮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⑰ 기장 ⑱ 조정 ⑲ 신고

⑳ 성실확인

㉑ 관번호

㉒ 조정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20,980,000	
소득공제	⑯	8,720,000	
과세표준(⑮-⑯)	⑰	12,260,000	④①
세율	⑱	15%	④②
산출세액	⑲	759,0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370,000	
종합과세(㉑-㉒-㉓)	㉔	389,000	④④
결정세액	㉕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㉖		④⑥
합계(㉕+㉖)	㉗	389,000	④⑦
가산세	㉘	161,800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㉙		④⑨
합계(㉗+㉘+㉙)	㉚	550,800	④⑩
기납부세액	㉛	300,000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㉛-㉜)	㉜	250,800	④⑫
납부특례세액	㉝		④⑬
차감	㉞		④⑭
가산	㉟		④⑮
분납할세액	㊱		④⑯
2개월 내	㊲		④⑰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㉞-㉟)	㊳	250,800	④⑱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하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5쪽 중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업장	소재지	광주 동구 중앙로 xx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 상 호	길동식당			
⑤ 사업자등록번호	408-**-*****			
⑥ 기 장 의 무	1			
⑦ 신고유형코드	31			
⑧ 주 업 종 코 드	552101			
⑨ 총 수 입 금 액	120,000,000			
⑩ 필 요 경 비	99,020,000			
⑪ 소 득 금 액 (⑨-⑩)	20,98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0.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⑩ 주택수(개)	⑪ 수입금액	⑫ 필요경비	⑬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⑯ 상호(성명)	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⑱ 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35쪽 중 제13쪽)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합)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20,980,000				20,98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20,980,000				20,980,000

1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 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72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 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1 명)	2,000,000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8,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홍길동	1	7	3	0	1	0	3	-	1	*	*	*	*	*	*																	
3	김성실	1	7	6	0	3	0	5	-	2	*	*	*	*	*	*																	
4	홍공정	1	0	4	0	9	0	1	-	3	*	*	*	*	*	*																	
4	홍신희	1	0	7	0	1	0	8	-	4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8,720,000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7. 추계-기준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35쪽 중 제19쪽)

㉓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㉔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출 산·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금계좌 납 입 액					
특별세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5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14/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2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7/10,0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환) 세 액	()				40/100(60/100)	
	미 납 (환) 세 액	()				14/1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0/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제출(위장가공)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미발급(위장가공)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2/100	
		불명	공 급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 불비	미 수 취 허 위 수 취	미 수 취 금 액	500,000		2/100	10,0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2/100		
⑦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무 신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1/100		
⑧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무 신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⑨ 무 기 장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총 수 입 금 액			0.1/100		
	등	산 출 세 액	759,000		20/100	151,8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미 개 설 · 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 등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성 실 건 수			5,000원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합 계						161,800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300,000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300,000	㉖		

210mm×297mm(백상지 80g/㎡)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35쪽 중 제25쪽)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계(40)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과세기간				2021. 1. 1.부터 2021.10. 1.까지	
⑤ 상 호				길동식당	
⑥ 사업자등록번호				408-**-*****	
⑦ 업태 / 종 목		/	/	음식/식당	
⑧ 업종코드				552101	
⑨ 총수입금액				120,000,000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③④)			92,960,000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 + ⑪ - ⑫)			92,96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5.05%
			⑮ 금액(⑨ × ⑭)		6,060,000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99,020,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20,980,000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89.7%
		⑲ 금액[⑨ × (1-⑱)]			12,360,000
	⑳ 비교소득금액 (⑲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42,024,000
㉑ 소득금액 (⑰ 또는 ㉒ 중 작은 금액)					20,98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53,960,000	㉓	51,500,000	㉔	500,000	㉕	1,960,000
임 차 료	㉖	16,000,000	㉗	16,000,000	㉘		㉙	
인 건 비	㉚	23,000,000	㉛	23,000,000	㉜		㉝	
계(㉚=㉛)	㉞	92,960,000	㉟	90,500,000	㊱	500,000	㊲	1,96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북구 금호로 **, 성 명 : 김 금 호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 ① 사업장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 ② 착공일 : 2021.5.1, 사업개시일 : 2021.10.1
- ③ 업종 :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 ④ 2021년 분양수입금액 : 800,000,000원, 2020년 수입금액 : 0원
-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451105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3. 1. 3		
배	우	자	76. 3. 5	없 음	
자		녀	10. 9. 1	"	
자		녀	12.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 ① 매입비용 : 550,000,000원
 - 외주가공비(건설비) : 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0원
 - 토지(5년 보유) 취득원가 : 200,000,000원
 - 자재비 : 세금계산서 수취 50,000,000원
- ② 인건비 : 50,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⑮ 가산세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③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⑬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1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소재지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 ④ 과세기간 : 2021.10.1.(개시일)부터 2021.12.31.까지로 적습니다.
- ⑤ 상호 : 영광건설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 ⑥ 사업자등록번호 : 410-**-*****
- ⑦ 업태/종목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 ⑧ 업종코드 : 주거용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0원
- ⑩ · ⑭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600,000,000원
* ⑫ 매입비용 550,000,000원 + ⑬ 인건비 50,000,000원
- ⑭ 기준경비율 : 13.1%
- ⑮ 금액 : 104,8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13.1% = 104,800,000원
- ⑯ 필요경비계 : 704,800,000원
- ⑰ 기준소득금액 : 95,2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필요경비계 704,800,000원
- ⑱ 단순경비율 : 91.6%
- ⑲ 금액 : 67,2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단순경비율91.6%) = 67,200,000원
- ⑳ 비교소득금액 : 188,160,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67,2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8배(간편장부대상자) = 188,160,000원
- ㉑ 소득금액 : 95,200,000원
* ⑰과 ⑳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㉒ 매입비용 계 :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350,000,000원을 ㉓년에 적고, 토지구입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200,000,000원을 ㉕년에 적은 후 합계(㉓+㉔+㉕)한 금액 550,000,000원을 ㉒년에 적습니다.
- ㉓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㉔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50,000,000원을 ㉓년에 적은 후 합계 (㉑+㉓)한 금액을 ㉒년에 적습니다.

③④=③⑤ · ③⑥ · ③⑦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1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 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 ④ 상호 : 영광건설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410-**-*****)를 적습니다.
-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 ⑧ 주업종코드 : 주택건축판매업(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 ⑨ 총수입금액 · ⑩ 필요경비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상의 ⑨, ⑩란의 금액을 ⑨,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10.1)을 적습니다.
-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95,20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 ① 본인 : 1,500,000원
- ② 배우자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6,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 ⑩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⑪ 소득공제 합계 (⑧~⑩+⑬+⑭) : 7,200,000원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지급금액 50,000,000원 × 1% = 50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⑱ 가산세 합계 : 500,000원 (①~⑰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①⑨ 종합소득금액 : 95,200,000원(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②⑩ 소득공제 : 7,200,000원(⑩소득공제명세서의 ②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②⑪ 과세표준 : 88,000,000원 (①⑨종합소득금액 - ②⑩소득공제)

②⑫ 서울·②⑬ 산출세액 : 24%, 15,900,000원

* 과세표준 88,000,000원 × 서울24% - 누진공제액 5,220,000원 = 15,900,000원

②⑭ 세액공제 : 370,000원 (⑬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②⑮ (결정세액)종합과세 : 15,530,000원 (②⑫-②⑭-②⑮)

②⑯ (결정세액)합계 : 15,530,000원 (②⑮+②⑯)

②⑰ 가산세 : 500,000원

②⑱ 합계 : 16,030,000원 (②⑯+②⑰+②⑱)

②⑲ 납부(환급)할 총세액 : 16,030,000원 (②⑱-②⑲)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인 금액

②⑳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5,530,000원

* 가산세는 분납적용 제외합니다.

분납세액 16,030,000 - 500,000 - 10,000,000 = 5,530,000

②㉑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0,500,000원 (②⑲-②㉑+②㉒-②㉓)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건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민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 금 호	② 주민등록번호	7 3 0 1 0 3 - 1 * * * * *
③ 주소	광주 북구 금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유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1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⑰ 관할번호	⑱ 조정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95,200,000	
소득공제	⑯	7,200,000	
과세표준(⑮-⑯)	⑰	88,000,000	④①
세율	⑱	24%	④②
산출세액	⑲	15,900,0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370,000	
종합과세(㉑-㉒-㉓)	㉒	15,530,000	④④
결정세액	㉓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㉔		④⑥
합계(㉒+㉔)	㉕	15,530,000	④⑦
가산세	㉖	500,000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㉗		④⑨
합계(㉕+㉖+㉗)	㉘	16,030,000	④⑩
기납부세액	㉙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㉘-㉙)	㉚	16,030,000	④⑫
납부특례세액	㉛		④⑬
차감	㉜		④⑭
가산	㉝		④⑮
분납할세액	㉞	5,530,000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㉚-㉞)	㉟	10,500,000	④⑯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 금 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 일련번호		1							
③ 사업장	소재지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 상 호		영광 건설							
⑤ 사업자등록번호		410-**-*****							
⑥ 기 장 의 무		2							
⑦ 신고유형코드		31							
⑧ 주 업 종 코 드		451105							
⑨ 총 수 입 금 액		800,000,000							
⑩ 필 요 경 비		704,800,000							
⑪ 소 득 금 액 (⑨ - ⑩)		95,20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0.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⑩ 주택수(개)	⑪ 수입금액	⑫ 필요경비	⑬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⑭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⑮ 상호(성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⑰ 소득세	⑱ 농어촌특별세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35쪽 중 제13쪽)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95,200,000				95,2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종합소득금액)	95,200,000				95,200,000

1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1,20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6,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16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금호	1	7	3	0	1	0	3	-	1	*	*	*
3	최**	1	7	6	0	3	0	5	-	2	*	*	*
4	김**	1	1	0	0	9	0	1	-	4	*	*	*
4	김**	1	1	2	0	1	0	8	-	3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7,2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건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33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 녀 세 액 공 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 산·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 금 계 좌 납 입 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교 육 비		(20%)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기 부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급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6 가산세명세서									
① 무 신고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14/10,000	
②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 소 신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14/10,000	
③ 납 부 지연		미 납 (환) 세 액		()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50,000,000	1/100	500,000	
	근로소득과 명세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제출 (불 명)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미발급(위장가공)		지 연 제 출 금 액			2/100		
		지연발급		지 연 제 출 금 액			1/100		
		불명		지 연 제 출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지 연 제 출 금 액			1/100		
	계 산 서 표	전자계산서 미전송		지 연 제 출 금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제 출 금 액			1/1,000(5/1,000)		
합 계	미제출(불명)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매입차별 산서 합 계 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무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 등록 불성실		과 소 신고 수 입 금 액		0.5/100					
⑨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미등록·허위등록 등 수 입 금 액		0.5/100					
⑩ 무 기 장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수 입 금 액		0.1/100					
⑪ 사 업 용 계 좌 미 신고 등		산 출 세 액		20/100					
⑫ 신 용 카 드 거 부 등		미 개 설 · 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⑬ 기 부 금 영 수 증 불 성 실		미 사 용 금 액		0.2/100					
⑭ 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⑮ 성 실 신 고 확 인 서 미 제 출 가 산 세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⑯ 유 보 소 득 계 산 명 세 서 제 출 불 성 실 가 산 세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⑰ 주 택 임 대 사 업 자 미 등 록 가 산 세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⑱ 합 계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⑲ 기 부 금 영 수 증 불 성 실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⑳ 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㉑ 성 실 신 고 확 인 서 미 제 출 가 산 세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5/100					
㉒ 유 보 소 득 계 산 명 세 서 제 출 불 성 실 가 산 세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0.2/100					
㉓ 주 택 임 대 사 업 자 미 등 록 가 산 세		미 작 성 등 금 액							
㉔ 합 계								500,000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중 간 에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정 고 지 과	세 부 세 액	①						
			②						
			③						
			④	㉑					
			⑤	㉒					
			⑥	㉓					
			⑦	㉔					
			⑧	㉕					
			⑨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㉖						

210mm×297mm(백상지 80g/㎡)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 ① 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 : 성실학원(****-**-*****)
- ② 2021년 수입금액 : 60,000,000원
2020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 ③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82. 1. 3		
배 우 자	81. 3. 5	소득없음	
자 녀	06. 9. 1	소득없음	

자료3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사항 ⇒ ⑤ 소득명세 ⇒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1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⑨ 기장의무, ⑩ 신고구분을 각 란에 적습니다.

⑧ 신고유형 : 「32추계-단순율」입니다.

※ 이 신고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⑨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학원강사로서 2020년(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⑩ 신고구분 : “☐ 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⑤ 소득명세(신고서 제2쪽)

⑥5 일련번호, ⑥6 상호(성명), ⑥7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⑥8 소득구분 코드, ⑥9 업종코드, ⑦0 총수입금액, ⑦1 단순경비율, ⑦2 필요경비, ⑦3 소득금액을 각 해당 란에 적습니다.

⑥5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구분 코드별(⑥8)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⑥6 상호, ⑥7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강사로서 인적용역사업자이므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⑥8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⑥9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⑦0 총수입금액 : 60,000,000

총수입금액은 2021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⑦1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 난에 적습니다.

⑦2 필요경비 : 33,960,000

⑦0 총수입금액에 ⑦1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text{원} \times 61.7\% + 20,000,000\text{원} \times 46.4\% = 33,960,000\text{원}$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⑦3 소득금액 : 26,040,000원

* 소득금액은 ⑦0 총수입금액에서 ⑦2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⑦0 총수입금액60,000,000원 - ⑦2 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신고서 제2쪽)

⑦4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1,800,000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㉔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1쪽~제2쪽)

㉓ 종합소득금액 : 26,040,000원

⑤ 사업소득소득명세(㉓)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㉔)의 소득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 5,600,000원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㉑~㉒의 인적공제, ㉓~㉔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㉑~㉒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㉑ 본인 : 1,500,000원

㉒ 배우자 : 1,500,000원

㉓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㉔~㉕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㉕ 부녀자 : 500,000원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 된다.

㉖ 연금 보험료 공제 :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㉗ 과세표준 : 20,440,000원

㉘ 세율 : 15%

㉙ 산출세액 : 1,986,000원

* $20,440,000원 \times 15\% - 1,080,000원$

㉚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㉛~㉜)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㉛~㉜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㉔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㉕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㉖ 결정세액 : 1,766,000원 (㉒ - ㉓ - ㉔ - ㉕)

㉗ 총결정세액 : 1,766,000원 (㉖ + ㉘)

㉘ 원천징수세액 : 1,800,000원

㉙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㉚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원 (환급, ㉒ - ㉗)

* 원천납부한 세액(㉘)이 총결정세액(㉗)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㉙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2. 3. 18.>

(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역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강 하 늘		② 주민등록번호 820103-2*****		
		③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 비사업자		⑨ 가정의무	☒ 간병장부대상자 ☐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 장·단기 ☐ 수·장·단기 ☐ 기·단·수·장·단기		
2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은행		⑫ 계좌번호	123-456789-**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⑬ 종합소득금액: ⑤ 사업소득명세(73)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82)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26,040,000	
⑭ 소득공제: ⑮~㉔합계-㉔					5,600,000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성 명	내외국인 코 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820103-2*****	기본 공제	15 본 인	1 1,500,000
	3 고하나	1	810305-1*****		16 배우자	1 1,500,000
	4 고두리	1	060901-4*****		17 부양가족	1 1,500,000
				추가 공제	18 경로우대자	
					19 장애인	
					20 부녀자	1 500,000
				21 한부모가족		
	㉒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㉓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600,000	
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㉕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㉖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㉗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8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92)을 적습니다.						
㉙ 소득공제 종합합산도 초과액: 종합합산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㉚ 과세표준: ⑬ - ㉙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0,440,000	
㉛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㉜ 산출세액: ㉚ × ㉛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1,986,000	
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㉞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9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97)을 적습니다.						
㉟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㉞~㉟)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20,000	
세액 공제 명세	㉞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임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1명 명	
	㉟ 연금계좌세액공제: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과학교육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㊱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㊲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70,000			
	㊳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㊴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0/110 15%(3천만원 초과분 25%)		
	㊵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10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105)을 적습니다.					
	㊶ 전자신고세액공제					
	㊷ 결정세액: ㉚ - ㉝ - ㉞ - ㉟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66,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6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④⑤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④⑥~④⑪)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④⑥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무 신고 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④⑦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수 입 금 액								
	④⑧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⑨ 보고 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 금액		1/100					
		근로소득간이 명 세 서	지연제출	지연제출 금액		0.5/100					
			미제출(불명)	지급 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 금액		0.125/100					
	⑤⑩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등	미 등록 · 허위 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⑤⑪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⑤⑫ 신용 카드거부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⑤⑬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금 액		20/100 (10/100)								
⑤⑭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⑤⑮ 총결정세액: ④④+④⑤						1,766,000					
⑤⑯ 기납부 세 액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⑦④ 합계와 ⑦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⑧③ 합계를 적습니다.					1,800,000					
⑤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⑤⑮-⑤⑯						-34,000					
①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⑤⑱ 과세표준: ①⑩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⑤⑲ 세율						20%					
⑥⑰ 산출세액: ⑤⑱ × ⑤⑲											
⑥⑱ 가산세액											
⑥⑲ 합계: ⑥⑰+⑥⑱											
⑥⑳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⑧④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⑥㉑ 납부(환급)할 세액: ⑥⑲-⑥⑳											
⑤ 사업소득명세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⑥⑤ 일련 번호	사업장		⑥⑧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⑥⑨ 업종 코드	⑥⑩ 총수입 금액	⑥⑪ 단순경비율(%)		⑥⑫ 필요경비 (=⑥⑩×⑥⑪)	⑥⑬ 소득 금액 (=⑥⑩-⑥⑫)	⑥⑭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⑥⑮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⑥⑥ 상호 (성명)	⑥⑦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일 반 율	자 가 율				
1	성실학원	820103-2*****	40	940903	60,000,000	61.7		33,960,000	26,040,000	1,8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단일소득 - 단순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6쪽 중 제3쪽)

7.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76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조)	77 입 력 번 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80 총 수 입 금 액 (총 급여액· 총 연금액)	81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82 소득 금 액 (80-81)	원천징수세액	
		78 상 호 (성명)	79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3 소 득 세	84 농·어·축· 특 별 세

8.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공제	85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86 주택자금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87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88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8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90 신용카드등 사용액	
	9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92 합 계:	85+86+87+88+89+90+91	

9.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93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9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9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96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97 합 계:	93+94+95+96

10.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98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99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1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104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5 합 계 : 98~104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 년 5 월 31 일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자료1 의류판매 사업소득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

성명 : 박성실

- ①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 70,000,000원
1기(1.1~6.30) 3천만원, 2기(7.1~12.31) 4천만원
2020년 수입금액 : 58,000,000원
- ② 상호 : 성실의류(123-**-*****),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개업일 : 2011. 5. 1.
-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523231)
- ④ 사업장은 임차하고 종업원은 1명임
- ⑤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자료2 상가임대 사업소득

- ① 2021.1.10.에 과세 사업자등록 (506-90-*****)
- ② 2021년 귀속 수입금액 : 6,000,000원
-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7012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8. 3. 29	없음	
배	우	자	69. 5. 8		
자		녀	06. 11. 10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주업종이 남녀 외의 소매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사항 ⇒ ④ 소득명세 ⇒ ⑤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1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⑨ 기장의무, ⑩ 신고구분을 각란에 적습니다.

- ⑧ 신고유형 : 「32추계-단순율」입니다.

※ 이 신고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⑨ 기장의무 : 2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주업종이 외의 소매업 사업로서 2020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⑩ 신고구분 : “㉞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⑤ 소득명세서(신고서 제2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⑥⑤ 일련번호, ⑥⑥ 상호(성명), ⑥⑦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⑥⑧ 소득구분 코드, ⑥⑨ 업종코드, ⑦① 총수입금액, ⑦① 단순경비율, ⑦② 필요경비, ⑦③ 소득금액을 각 해당 란에 적습니다.

⑥⑤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구분 코드별(⑥⑧)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⑥⑥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⑥⑦ 사업자등록번호 : 506-90-*****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⑧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⑥⑨ 업종코드 : 상가 임대 업종코드인 701201를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⑦① 총수입금액 : 6,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21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⑦① 단순경비율 : 상가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인 41.5를 일반율 난에 적습니다.

⑦② 필요경비 : 2,490,000원

⑦① 총수입금액에 ⑦① 단순경비율(4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000,000\text{원} \times 41.5\% = 2,490,000\text{원}$

⑦③ 소득금액 : 3,510,000원

* 소득금액은 ⑦① 총수입금액에서 ⑦②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⑦① 총수입금액 6,000,000원 - ⑦② 필요경비 2,490,000원 = 3,51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⑥⑤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구분 코드별(⑥⑧)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⑥⑥ 상호 : “성실의류”를 적습니다

⑥⑦ 사업자등록번호 : “123-**-*****”를 적습니다

⑥⑧ 소득구분코드 : 4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⑥⑨ 업종코드 : 소매 외의 코드인 523231를 적습니다.

* 셔츠·블라우스 등 의류 소매업 업종코드 523231

⑦⑩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21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⑦⑪ 단순경비율 : 셔츠 등 외의 소매업(523231)의 단순경비율 89.0를 일반율란에 적습니다.

⑦⑫ 필요경비 : 62,300,000원

⑦⑩ 총수입금액에 ⑦⑪ 단순경비율(89.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70,000,000\text{원} \times 89.0\% = 62,300,000\text{원}$

⑦⑬ 소득금액 : 7,700,000원

* 소득금액은 ⑦⑩ 총수입금액에서 ⑦⑫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⑦⑩ 총수입금액 70,000,000원 - ⑦⑫ 필요경비 62,300,000원 = 7,700,000원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신고서 제2쪽)

⑦⑭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⑦⑮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1쪽~제2쪽)

⑬ 종합소득금액 : 11,210,000원

⑤ 사업소득소득명세(⑦⑬)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⑧②)의 소득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 4,500,000원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3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⑮~⑳의 인적공제, ㉔~㉖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⑮~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⑮ 본인 : 1,500,000원

⑯ 배우자 : 1,500,000원

⑰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㉔ 과세표준 : 6,710,000원

㉕ 세율 : 6%

㉖ 산출세액 : 402,600원

* $6,710,000\text{원} \times 6\%(\text{세율}) = 402,600\text{원}$

㉗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7,654원(조특법 제7조)

* 산출세액(402,600원)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7,70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11,210,000\text{원})} \times \text{감면율}(10\%)$

* 수도권 안에서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㉙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㉚~㉜)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㉚~㉜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㉚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㉜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㉞ 결정세액 : 154,946원 (㉖-㉗-㉘-㉙)

㉟ 총결정세액 : 154,946원 (㉞+㉟)

㊱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154,946원 납부 (㉟-㊱)

10. 복수소득-단순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2. 3. 18.>

(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박성실	② 주민등록번호	680203-1*****
	③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② 추계·단소를 ④0 비사업자	⑨ 가정의무	②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구분	⑩ 장신고	⑪ 추산신고	④0 간편추산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은행	⑫ 계좌번호 123-456789-**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⑬ 종합소득금액: ⑤ 사업소득명세(⑦3)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⑧2)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11,210,000
⑭ 소득공제: ⑮~㉔ 합계-㉔	4,500,000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코	성 명	내외국인 코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0	박성실	1	680329-1*****	기본 공제	⑮ 본 인 1
	3	이공정	1	680508-2*****		⑯ 배 우 자 1
	4	박병화	1	061110-3*****		⑰ 부 양 가 족 1
					추가 공제	⑱ 경 로 우 대 자
						⑲ 장 애 인
						㉑ 한 부 모 가 족
		㉒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㉓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㉕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㉖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㉗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㉙)을 적습니다.				
	㉙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세액 공제 명세	③0 과세표준: ⑬ - 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6,710,000
	③1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6%
	③2 산출세액: ③0 × ③1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402,600
	③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7,654
	③4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㉙)을 적습니다.	
	③5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㉚~㉜)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20,000
	㉚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임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㉛ 연금계좌세액공제: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㉜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아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㉙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70,000
④0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④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④2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㉙)을 적습니다.	
④3 전자신고세액공제	
④4 결정세액: ㉚ - ㉛ - ㉜ - ㉝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54,94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6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④⑤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④⑥~⑤④)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④⑥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무 신고 납부세액		20/100						
		④⑦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14/10,000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④⑧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금) 세 액									
	④⑨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제출(불명)	지 급 금 액		0.25/100					
		⑤⑩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 등 록 · 허 위 등 록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⑤⑪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⑤⑫ 신용 카드거부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⑤⑬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금 액		20/100 (10/100)								
⑤⑭ 주택임대 미등록	사업자 미등록 기간 수 입 금 액		2/1,000								
⑤⑤ 총결정세액: ④④+④⑤					154,946						
⑤⑥ 기납부 세 액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⑦④ 합계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⑧③ 합계를 적습니다.										
⑤⑦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⑤⑤-⑤⑥					154,946						
①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⑤⑧ 과세표준: ①⑩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⑤⑨ 세율					20%						
⑥⑩ 산출세액: ⑤⑧×⑤⑨											
⑥⑪ 가산세액											
⑥⑫ 합계: ⑥⑩+⑥⑪											
⑥⑬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⑥④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⑥⑭ 납부(환급)할 세액: ⑥⑫-⑥⑬											
⑤ 사업소득명세											
⑥⑮ 일련 번호	사업장		⑥⑧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⑥⑨ 업종 코드	⑦⑩ 총수입 금액	⑦⑪ 단순경비율(%)		⑦⑫ 필요경비 (=⑦⑩×⑦⑪)	⑦⑬ 소득 금액 (=⑦⑩-⑦⑫)	⑥⑭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⑥⑯ 상 호 (성명)	⑥⑰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일 반 율	자 가 율			⑦⑭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⑦⑮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1	상가임대	506-90-****	30	701201	6,000,000	41.5		2,490,000	3,510,000		
1	성실의류	123-**-****	40	523231	70,000,000	89.0		62,300,000	7,7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 복수소득-단순경비를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6쪽 중 제3쪽)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⑦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조)	⑦ 연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⑧ 총 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⑧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⑧ 소득금액 (⑧-⑧1)	원천징수세액	
		⑧ 상 호 (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⑧ 소득세	⑧ 농어촌 특별세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공제	⑧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⑧ 주택자금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⑧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⑧ 우리스주조합 출연금	
	⑧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⑧ 신용카드등 사용액	
	⑧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⑨ 합 계:	⑧+⑧+⑧+⑧+⑧+⑧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⑨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⑨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⑨ 합 계:	⑨+⑨+⑨+⑨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98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99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0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1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104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105 합 계 : 98~104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 년 5 월 31 일 신고인 박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영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성명: 김 국 세
 사업장 : 세종특별시 나성동 ××
 업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이자소득
A주택·부수토지	2019.1.1. ~ 2021.12.31	5억원	월3,000,000원	500,000원
B주택·부수토지	2021.7.1. ~ 2022.12.31	6억원	-	1,000,000원

자료3 필요경비 내역

- ① 수도광열비 : 1,000,000원
- ② 소모품비 : 500,000원

자료4 기타

- ① 자료2의 주택 이외에 2개의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원을 초과하고, 주거 전용면적도 40㎡를 초과한다.
- ② 김국세씨의 국민연금보험료 : 800,000
- ③ 김국세씨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임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⑫ 세액감면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①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⑪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⑦ 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 ① 소득구분코드 : 32를 적습니다.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32

-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등의 임대 코드인 701102를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 + □ = 38,117,754원 > 20,000,000원

□ 주택임대료: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 간주임대료: (a+b+c) - (500,000원 + 1,000,000원)⁴⁾ = 2,117,754원¹⁾

① (5억원 - 3억원²⁾) × 181 × 60% × $\frac{1}{365}$ × 1.2%³⁾ = 714,082원

② 5억원 × 184 × 60% × $\frac{1}{365}$ × 1.2%³⁾ = 1,814,795원

③ (6억원 - 3억원²⁾) × 184 × 60% × $\frac{1}{365}$ × 1.2%³⁾ = 1,088,877원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⑩금액 입니다.

2)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17.4.18)

3)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1.2%

4)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

⑩ 필요경비 : 1,500,000원

수도광열비 1,000,000원 + 소모품비 500,000원 = 1,500,000원

⑪ 소득금액 : 36,617,754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 ⑭ 대표공동사업자, ⑮ 특수관계인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않습니다.
⑯ 주택수(개) : 임대하는 주택수를 적습니다.
⑰~⑲의 부동산임대소득 명세는 위의 ⑨~⑪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❶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36,617,754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❷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 1,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800,000원(연간 납입금액)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2,300,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120,000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12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⑲ 종합소득금액 : 36,617,754원 {❶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㉔ 소득공제 : 2,300,000원 (㉑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㉕ 과세표준 : 34,317,754원 (㉓종합소득금액 - ㉔소득공제)

㉖ 서울·㉗ 산출세액 : 15%, 4,067,663원

* 과세표준 34,317,754원 × 서울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4,067,663원

㉘ 세액공제 : 120,000원

* ㉙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㉚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㉚ 결정세액 : 3,947,663원 (㉖-㉗-㉘)

㉜ 결정세액 합계 : 3,947,663원 (㉚+㉝)

㉞ 합계 : 3,947,663원 (㉜+㉟+㊱)

㉟ 납부(환급)할 총세액 : 3,947,663원 (㉞-㊱)

㊲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3,947,663원 (㉟-㊳+㊴-㊵)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민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김 국 세	② 주민등록번호	7 8 0 2 2 3 - 1 * * * * *
③ 주소	세종특별시 나성동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① 자기조정 ② 외부조정 ③ 성실신고확인 ④ 간편장부 ⑤ 추계-기준을 ⑥ 추계-단순을 ⑦ 분리과세 ⑧ 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① 정기신고 ② 수정신고 ③ 경정청구 ④ 기한후신고 ⑤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① 가장 ② 조정 ③ 신고 ④ 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36,617,754	
소득공제	⑯	2,300,000	
과세표준(⑮-⑯)	⑰	34,317,754	④①
세율	⑱	15%	④②
산출세액	⑲	4,067,663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120,000	
종합과세(㉑-㉒-㉓)	㉒	3,947,663	④④
결정세액	㉓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㉔		④⑥
합계(㉒+㉔)	㉕	3,947,663	④⑦
가산세	㉖		④⑧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㉗		④⑨
합계(㉕+㉗)	㉘	3,947,663	④⑩
기납부세액	㉙		④⑪
납부(환급)할 총세액(㉘-㉙)	㉚	3,947,663	④⑫
납부특례세액	㉛		④⑬
차감	㉜		④⑭
가산	㉝		④⑮
분납할세액	㉞		④⑯
2개월내	㉟		④⑰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㉚-㉛-㉜-㉝-㉞)	㊱	3,947,663	④⑱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2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업장	소 재 지		세종특별시 나성동**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④ 상 호	부동산 임대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								
⑥ 기 장 의 무	1								
⑦ 신 고 유 형 코 드	11								
⑧ 주 업 종 코 드	701102								
⑨ 총 수 입 금 액	38,117,754								
⑩ 필 요 경 비	1,500,000								
⑪ 소 득 금 액(⑨-⑩)	36,617,754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⑩주택수(개)	⑪수입금액	⑫필요경비	⑬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2	38,117,754	1,500,000	36,617,754
합 계	2	38,117,754	1,500,000	36,617,75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⑭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상호(성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⑰ 소득세	⑱ 농어촌특별세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35쪽 중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 임대업 포함)	36,617,754				36,617,754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36,617,754				36,617,754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 업 제외)							
부 동 산 임대업외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 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 녀 세 액 공 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산·입양 명)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금 저 축			(15%)		
	ISA 만 기 시 연 금					
	계 좌 납 입 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20%)		
	교 육 비			15%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120,000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2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①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주민등록번호	780223-*****	③성명	김 국 세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소재지	⑤임차인		⑥임대기간	⑦보증금 등	⑧공제액	⑨보증금잔액 (⑦-⑧)	⑩일수	⑪보증금잔액적수 (⑨×⑩)	⑫적용률	⑬이자율	⑭총수입금액 상당액 [(⑪×⑫×⑬)÷365, 윤년366]	⑮보증금 운용수입		⑯총수입 금액 산입금액 (⑭-⑮)
	성명	납세자 번호										수입이 자 및 할인료	배 당 금 계	
나성동 1			2021.1.1.~ 2021.6.30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181	36,400,000,000	60%	1.2%	714,082	500,000		214,082
나성동 1			2021.7.1.~ 2021.12.31	500,000,000	-	500,000,000	184	92,000,000,000	60%	1.2%	1,814,795	-		1,814,795
나성동 2			2021.7.1.~ 2022.12.31	600,000,000	300,000,000	300,000,000	184	55,200,000,000	60%	1.2%	1,088,877	1,000,000		88,877
합계											3,617,754	1,500,000		2,117,754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⑰과목	⑱계정금액	⑲수입이자 및 할인료	㉑배당금	㉒계
금융수익	10,000,000	1,500,000		1,500,000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2. ⑦ 보증금 등 :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전체 보증금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3억원한도).
4. ⑫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5. ⑬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⑮ 보증금 운용수입란 : 「2. 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의 ㉒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전체 공동 사업자 전체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 중 본인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적습니다.

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단순경비율)

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 사례
-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단순경비율)

자료1 기본사항

성명: 전 착 한('71.2.3.)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상호: 상가임대 사업자번호: 131-35-*****
사업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주업종코드 701201)

자료2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인하 합의 약정 내용

-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21.1.1. ~ '22.12.31.(2년)
 - 보증금: 1억원
 - 월 임대료: 200만원(부가세 별도)
-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약정 내용
 - 임대료 인하 기간: '21.7.1. ~ '21.12.31.(6개월)
 - 보증금: 1억원
 - 월 임대료: 150만원(부가세 별도)
-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 22,200,000원
1,200,000원(간주임대료) + 21,000,000원(임대료수입)
- ④ 임차인(종로식당, 823-01-*****)이 위 상가건물에 '21.6.30. 이전에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사업자이고, 배제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장소 등)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여타 임차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 등)을 충족함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보증금 인하는 해당없음)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조특법 § 96의3**)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모두채움신고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불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법령(조특령§ 96의3⑧)에서 정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① 인하 직전 계약서(2020.1.1.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을 한 경우 재계약서 포함)
-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 ③ 세금계산서, 금융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
-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로서 소득자료가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 본 신고 사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요령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상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소득자를 사례로 계산함

① 기본사항 ⇒ ⑦ 사업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 명세서(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작성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추가 작성)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 소득세 신고서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③추계-단순율에 ✓표를 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임대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 공제대상 임대인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1.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인 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2. 무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경우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한 경우도 무신고한 것으로 봄
 - 3.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 4.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관련한 의무 이행 대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㉑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은 30을 적습니다.

...중간 설명 생략 ...

⑥ 기장의무 : ㉒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추계신고(단순경비율)자이므로 3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업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 : 22,200,000원

⑩ 필요경비 : 9,213,000원

※ 부동산임대업(주업종코드 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22,200,000 \times 41.5\% = 9,213,000$ 원

⑪ 소득금액 : 12,987,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㉒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2,987,000원을 적습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㉓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1,500,000원,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1,500,000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서식]와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㉓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를 작성합니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① 신청인 작성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② 과세연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습니다.

③ 세액공제 계산내용

⑥ 상가건물 소재지, ⑦ 임차인 상호, ⑧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상가임대료를 인한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 ⑨ **임차인 요건 충족** : 임차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 **임차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③)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사행행위업,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업 등)을 영위하지 않을 것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위 요건 중 1호와 3호는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 위 요건 중 1호와 3호는 충족한 것임

- ⑩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에 표기합니다.("여" 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배제대상이므로 공제 불가함)

-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⑥)

임대료 인하 후에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재계약의 경우에는 5% 초과 인상)한 경우

- 1) **임대료 인하 후 인상한 예** : '21.1.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1.1.1.~'22.12.31.)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1.2.1.~'21.6.30.까지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다른 약정(정식으로 체결된 재계약과 구분됨)을 통해 '21.7.1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 직전(100만원) 보다 인상하는 경우

- 2) **임대료 인하 후 재계약 시 5% 초과하여 인상한 예** : '19.7.1.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19.7.1.~'21.6.30.)을 체결하였고 인하 합의 약정을 통해 '21.2.1.~'21.6.30.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한 후, '21.7.1.자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 직전인 100만원 보다 5%(105만원)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 공제기간(2020.1.1.~2022.12.31.)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 배제**(이미 공제 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입니다.

※ 인하 전·후 임대수입금액 및 인하한 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 ⑪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24,000,000*원을 적습니다.

* 200만원 × 12개월(' 21.1월~12월)

※ 인하 전·후 임대수입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 보증금,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

-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 인하 합의 약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21,000,000원을 적습니다.

* 200만원 × 6개월('21.1월~6월) + 150만원 × 6개월('21.7월~12월)

- ⑬ 인하한 임대료 :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⑪)에서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⑫)을 차감한 금액 3,000,000원을 적습니다.

- ⑭ 공제대상금액 : 인하한 임대료 합계(⑬)를 적습니다.

- ⑮ 공제율 : '21년도 과세기간의 공제율 70%를 적습니다.

- ⑯ 공제세액 : 공제대상금액(⑭)에 공제율(⑮)을 적용한 금액(2,100,000원)을 적습니다.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

- ❶ 신청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❷ 과세연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적습니다.

- ❸ 신청내용 작성

- 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10B) : 공제율란에는 '70.0', 대상세액란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상의 ⑯공제세액 2,100,000원을 적습니다.

- ⑪ '공제세액'란에는 산출세액과 기타 세액공제액 등을 감안하여 실제 공제할 세액* 619,22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거나 미리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금액범위 내에서 작성 후 납부할 세액 확인한 뒤 공제세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⑬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 : 연 7만원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619,220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와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상의 ⑯공제세액(2,1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란에 적고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1호서식] ⑬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10B)상의 ⑪공제세액(619,22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공제대상세액(2,100,000원) 중 공제세액(619,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되지 않은 세액(1,480,780원)은 **이월공제**(후술하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⑥ 세액공제 합계 : 689,22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⑭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2,987,000원 {13쪽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1,500,000원 (15쪽 ⑪소득공제명세서의 ㉔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1,487,000원 (종합소득금액⑲ - 소득공제⑳)

㉒ 세율·㉓ 산출세액 : 6%, 689,220원

㉔ 세액공제 689,220원 (⑬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㉔ (결정세액)종합과세 : 0원 (㉓-㉒-㉑)

㉕ (결정세액)합계 : 0원 (㉔+㉓)

㉖ 합계 : 0원 (㉕+㉔+㉓)

㉗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0원 (㉖-㉕+㉔-㉓)

〈농어촌특별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㉑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㉒란)를 옮겨 적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㉓란)을 계산합니다.

㉑ 과세표준: 619,220원 (별지 제68호 서식 ㉒란의 금액)

㉓ 산출세액: 123,844원 (㉑ × 세율 20%)

㉔ · ㉕란의 금액: 123,844원

㉖ · ㉗ · ㉘란의 금액: 123,844원 (㉔+㉕-㉓)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작성〉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 이월공제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세액계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세액(2,100,000원)에 대한 계산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㉑ 구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⑤ 계산내역 : 임대료 인하액(3,000,000원) × 70%

⑥ 공제대상세액 : 2,100,000원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금액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⑦ 구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⑧ 과세기간 : '21.1.1.~'21.12.31.

⑨ 당기분 : 2,100,000원

⑩ 이월분 : 0원

⑪ 공제되지 않은 세액 : 1,480,780원

⑫ 공제세액 : 619,220원

⑬ 이월액 : 1,480,780원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대국민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전 착 한			② 주민등록번호	7 1 0 2 0 3 -1 * * * * *				
③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④ 주소지 전화번호	02-****-****			⑤ 사업장 전화번호	02-****-****				
⑥ 휴대전화	010-****-****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변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자기조정 ⑫외부조정 ⑬성실신고확인 ⑭간편장부 ⑮추계-기준을 ⑯추계-단순을 ⑰분리과세 ⑱비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⑩경가신고 ⑪수정신고 ⑫경정청구 ⑬기한후신고 ⑭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⑬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⑯대리구분	①가장 ②조정 ③신고 ④성실확인	⑰관리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합소득금액	⑮	12,987,000							
소득공제	⑯	1,500,000							
과세표준	⑰(⑮-⑯)	11,487,000			④	619,220			
세율	⑱	6%			⑥	20%			
산출세액	⑲	689,220			⑦	123,844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689,220							
결정세액	㉒(㉑-㉒)				⑧	123,844			
합계	㉓(㉒+㉓)				⑨	123,844			
가산세	㉔				⑩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㉕				⑪				
합계	㉖(㉔+㉕)				⑫	123,844			
기납부세액	㉗				⑬	123,844			
납부(환급)할 총세액	㉘(㉖-㉗)				⑭	123,844			
납부특례세액	㉙(차감) ㉚(가산)				⑮				
분납할 세액	㉛(2개월 내)				⑯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㉜(㉛-㉜)				⑰	123,844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전 착 한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제35쪽 중 제9쪽)

㉞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④ 상 호	상가임대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31-35-*****				
⑥ 기 장 의 무	2				
⑦ 신 고 유 형 코 드	32				
⑧ 주 업 종 코 드	701201				
⑨ 총 수 입 금 액	22,200,000				
⑩ 필 요 경 비	9,213,000				
⑪ 소 득 금 액 (⑨ - ⑩)	12,987,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 주택수(개)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⑲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22,200,000	9,213,000	12,987,000
주택임대소득	0			
합 계	0	22,200,000	9,213,000	12,987,000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소 득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12,987,000				12,987,000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2,987,000				12,987,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33쪽 중 제15쪽)

㉑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②배 우 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 (2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 (1명)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 (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1,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㉒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전착한	1	7	1	0	2	0	3	-	1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1,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7서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상가임대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성명 전 착 한	④ 생년월일 71.2.3.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②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③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⑥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⑩ 세액공제 배제대상	⑪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⑬ 인하한 임대료 (⑪-⑫)
	⑦ 상호	⑧ 사업자 등록번호	⑨ 임차인 요건 충족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종로식당	823-01-*****	☑, 부	여, ☑	24,000,000	21,000,000	3,000,000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⑭ 합계					24,000,000	21,000,000	3,000,000

나. 공제세액 계산		
⑭ 공제대상금액	⑮ 공제율	⑯ 공제세액(⑭×⑮)
3,000,000	70%	2,100,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5 월 31 일
신청인 전 착 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1쪽)

세액공제신청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상가임대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성명 전 착 한	④ 생년월일 71.2.3.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010-****-****)	

②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③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⑩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⑩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⑩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⑩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L			
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1항	13M			
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A			
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1항	16B			
⑩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⑩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⑩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⑩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N			
⑩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4항	18P			
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⑩ 통합투자세액공제		영 제21조제11항	13W			
⑩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⑩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⑩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⑩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⑩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⑩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쪽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⑫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⑭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⑮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0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⑯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⑰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⑲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⑳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㉑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㉒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㉓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㉔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㉕ 상가임대료를 인허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7항	10B	70.0	2,100,000	619,220
㉖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제4항	18Q			
㉗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㉙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㉚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㉛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㉜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㉝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㉞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㉟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산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㊱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㊲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㊳ 세액공제 합계		1A3	70.0	2,100,000	619,220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22 년 5 월 31 일

신청인

전 착 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33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항목	②코드	공제대상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출산·입양명)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12%		
		연금저축	(15%)		
		ISA만기시연금 계좌납입액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교육비		(20%)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30%)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15/100 (25/100)		
조특법 제96조의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100,000		619,220	131-3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619,22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①과세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상가임대 131-35-*****	③성명	전 착 한

1. 소득공제 (단위: 원)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소득공제금액)	비 고
④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⑪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⑩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과세 표준+소득공제 금액) × 세율 - 산출세액
⑤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2. 세액감면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⑦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⑫세액감면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감면세액
⑧			
⑨			
⑩			

3. 세액공제			
감 면 종 류	근 거	공제세액	비 고
⑪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619,220원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⑬세액공제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감면세액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공제·감면세액(⑦~⑰) 합계		619,220원	

12.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상가건물 임대업사업자(단순경비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2021 년 1 월 1 일부터	상 호	상가임대	③성 명	전착한
	2021 년 12 월 31일까지	②사업자등록번호	131-35-*****		
1. 공제세액계산					
④구 분		⑤계산내역		⑥공제대상세액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조특법96의3)		임대료 인하액(3,000,000) × 공제율(70%)		2,100,000	
합 계				2,100,000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⑦구 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합 계
⑧과세기간		21.1.1.~21.12.31.			
당기공제 대상세액	⑨당기분	2,100,000			2,100,000
	⑩이월분(=⑪~⑳의 합계)	0			0
	⑪ 1차년도				
	⑫ 2차년도				
	⑬ 3차년도				
	⑭ 4차년도				
	⑮ 5차년도				
	⑯ 6차년도				
	⑰ 7차년도				
	⑱ 8차년도				
	⑲ 9차년도				
	㉑ 10차년도				
㉑공제되지 않은 세액		1,480,780			1,480,780
㉒공제세액(=⑨+⑩-㉑)		619,220			619,220
㉓소멸된 공제세액		0			0
㉔이월액(=㉑-㉓)		1,480,780			1,480,780

13.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정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 무 처 명	(주)선경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	123-81-*****
총 급 여	31,000,000	10,000,000
급 여 총 액	23,000,000	7,000,000
상 여 총 액	8,000,000	3,000,000
근로소득공제	9,900,000	5,500,000
근로소득금액	21,100,000	4,500,000
주택자금공제	1,400,000	-세정(주)에서 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주)선경에서 세정(주)의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 없음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공제대상	1,000,000	
의료비공제대상	2,230,000	
교육비공제대상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연금저축납입액	4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결정세액(소득세)	0	

- *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 * 신용카드 사용액 : 8,300,000원
- *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 * 전년도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없음
-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2020년 사용액은 10,000,000원임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인	62. 2. 3	없 음	
배우자	64. 4. 5		
모	37. 3. 6		
자녀	02. 8. 9		

13. 근무지가 2인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최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명세서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④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신고서 제11쪽)

-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상호 :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②①총급여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41,000,000원 (31,000,000원 + 10,000,000원)

-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1,40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9,600,000원입니다.
-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㉓결정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경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㉓차감징수세액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㉑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란에 29,600,000원을 적습니다.
-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㉒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 1,500,000원
- ② 배우자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직계존속 196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01.1.1 이후 출생)을 공제합니다.

- ④ 경로우대자(1951.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 1,000,000원

13. 근무지가 2인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최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 ⑬ 주택자금공제 : 1,400,000원
- ⑮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 1,400,000원(⑫~⑭ 합계)
-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 ⑲ 금액 : 395,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 공제가능금액 395,000원이 공제한도액 3,000,000원 보다 작으므로 395,000원 공제
- *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금액 = 2,145,000원¹⁾ - 1,830,000원²⁾ + 80,000원³⁾ = 395,000원
- 1) 8,300,000원 × 15% + 3,000,000원 × 30% = 2,145,000원
- 2) 8,300,000원 × 15% + {(총급여액 41,000,000원 × 25%) - 8,300,000원} × 30% = 1,830,000원
- 3) (11,300,000원 - (작년 사용액 10,000,000원) × 105%) × 10% = 80,000원
- 공제한도: min(3,000,000, 41,000,000 × 20% = 7,800,000)
- ⑳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 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372,500원
-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9,295,500원

4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⑲ 종합소득금액 : 29,600,000원
-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㉑ 소득공제 : 9,295,500원
- * ㉑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㉑ 과세표준 : 20,305,500원 (⑲ - ㉑)
- ㉒ 세율 : 15%

㉓ 산출세액 : 1,965,750원 ($20,305,500 \times 15\% - 1,08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㉔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676,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76,00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1,965,7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 + $(665,750 \times 30\%) = 914,725$ 원

* 공제한도 : $\text{Max}(\text{①}, \text{②}) = 676,000$

① 74만원 - $[(4,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times 8/1,000] = 676,000$, ② 66만원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text{Max}(\text{①}, \text{②})$ ① 74만원 - $[(\text{총급여액} - 3,300\text{만원}) \times 8/1,000]$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text{Max}(\text{①}, \text{②})$ ① 66만원 - $[(\text{총급여액} - 7,000\text{만원}) \times 1/2]$ ②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13. 근무지가 2인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최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을 적고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325,500원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2,170,000원

*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 - 총급여액 41,000,000원 × 3% = 2,17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325,5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225,000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 1,500,000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225,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556,5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1,556,500원

* ㉕ 세액공제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㉕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종합과세 : 409,250원 (㉓-㉔-㉕)

㉘ (결정세액)합계 : 409,250원 (㉖+㉗)

㉙ 합계 : 409,250원 (㉘+㉚+㉛)

㉚ 기납부세액 : 0원

* ㉚ 기납부세액명세서의 ㉚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409,250원 (㉙-㉚)

㉜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409,250원 (㉛-㉝+㉞-㉟)

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0원(①~⑩의 합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서 공 정
② 주민등록번호	6 2 0 2 0 3 - 1 * * * * *
③ 주소	부산 금정구 중양대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추가신고(인정상여)
⑫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⑬ 금융기관/채신관 서명
⑭ 세무 대리인	⑮ 계좌번호
⑯ 성명	⑰ 사업자 등록번호
⑱ 대리구분	⑲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⑳ 관리번호	-
㉑ 조정반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29,600,000
소득공제	9,295,500
과세표준(19-20)	20,305,000
세율	15%
산출세액	1,965,750
세액감면	
세액공제	1,556,500
종합과세(23-24-25)	409,250
결정세액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합계(26+27)	409,250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계(28+29+30)	409,250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409,250
납부특례세액	차감
분납할세액	가산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33-34+35-36)	409,25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서 공 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29,600,000				29,6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29,600,000				29,60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13. 근무지가 2인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최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35쪽 중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험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50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경 로 우 대 자(1명)	1,000,000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1,400,000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⑫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서공정	1	6 2 0 2 0 3 - 1 * * * * *				
2	이신희	1	3 7 0 3 0 6 - 2 * * * * *				-
3	김누리	1	6 4 0 4 0 5 - 2 * * * * *				-
4	서국세	1	0 2 0 8 0 9 - 1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 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95,500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95,500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9,295,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676,000	
자 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150,000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12% (15%)		
		퇴 직 연 금					
		연 금 저 축		400,000		60,000	
		ISA만기 시 연금 계좌 잔입액					
특 별 세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2,170,000	15% (20%)	325,500		
	교 육 비		1,500,000	15%	225,000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15% (3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556,5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이 공 평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구분	연말정산 주요 내역		
근무처명	(주) 국 세	근무처 사업자번호	607-81-*****
총급여	100,000,000	근로소득금액	85,250,000
인적공제내역		세액공제내역	
본인	1,500,000	보험료공제	120,000
부양가족(3명)	4,500,000	의료비공제	1,050,000
70세이상자(1명)	1,000,000	교육비공제	900,000
한부모공제	1,0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국민연금보험료	1,000,000
결정세액	소득세 : 7,810,000		

* 교육비 : 6,0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 본인 10,000,000원

* 자녀 2명, 모친 1명

*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자료2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0,000,000원
- 지급처 : (주) 동래
- 지급자 원천징수 내역 없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기타소득자 및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⑪ 소득공제명세서 ⇒ ⑬ 세액공제명세서 ⇒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 ④ 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⑧ 기장의무 : ③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⑨ 신고유형 : ④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신고구분 : ⑩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51을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 : 근무처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②①총급여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이익)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4,75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⑦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국세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7,810,00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⑦차감징수세액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기타소득〉

- ① 소득구분코드 : 6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 지급처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⑥ 필요경비 : 0원
 ⑦ 소득금액 : 20,000,000원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난에 85,250,000원, 기타소득금액란에 20,0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⑪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 ① 본인 : 1,500,000원
- ③ 부양가족 : 4,500,000원 (3명×150만원)
-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 ⑦ 한부모가족 : 1,000,000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 ⑧ 인적공제 계(①~⑦) : 8,000,000원
-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모친,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 ⑳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9,000,000원

⑫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7,810,000원
- 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
- ⑪ 기납부세액 합계 : 7,810,000원(⑧~⑩의 합계)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 ⑱ 종합소득금액 : 105,250,000원

* ⑨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 ㉒ 소득공제 : 9,000,000원

*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 ㉓ 과세표준 : 96,250,000원 (㉑-㉒)

- ㉔ 세율 : 35%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㉓ 산출세액 : 18,787,500원 (96,250,000 × 35% - 14,90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㉔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원

③ 세액공제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50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 : 15,217,428원

$$\text{산출세액}(18,787,500\text{원})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85,25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105,250,000\text{원})} = 15,217,428$$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한 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 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에 적고 12%의 적용률을 곱한 금액 12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1,050,000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 가운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10,000,000원 중 총급여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7,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15%의 적용률을 곱한 1,050,000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10,000,000원 - 총급여액 100,000,000원 $\times$ 3% = 7,000,0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 900,000원

교육비 지출액 6,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란에 기재하고 15%의 적용률을 적용한 9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8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②⑤ 세액공제 : 2,870,000원

* ⑬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②⑥ (결정세액)종합과세 : 15,917,500원 (②③-②④-②⑤)

②⑧ (결정세액)합계 : 15,917,500원 (②⑥+②⑦)

③① 합계 : 15,917,500원 (②⑧+②⑨+③①)

③② 기납부세액 : 7,810,000원

* ⑬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③ 납부(환급)할 총세액 : 8,107,500원 (③①-③②)

③⑦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8,107,500원 (③③-③④+③⑤-③⑥)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인	대국민	외국민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 부	2
			분리과세	여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명	이 공 평	② 주민등록번호	7 6 1 2 0 5 - 1 * * * * *
③ 주소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직장 의무	① 복식부기의무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③ 비사업자
⑨ 신고 유형	⑪ 자기조정 ⑫ 외부조정 ⑬ 성실신고확인 ⑭ 간편장부 ⑮ 추계-기준을 ⑯ 추계-단순을 ⑰ 분리과세 ⑱ 사업자		
⑩ 신고 구분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산신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3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① 가장 ② 조정 ③ 신고 ④ 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⑮	105,250,000	
소득공제	⑯	9,000,000	
과세표준(⑮-⑯)	⑰	96,250,000	④①
세율	⑱	35%	④②
산출세액	⑲	18,787,500	④③
세액감면	⑳		
세액공제	㉑	2,870,000	
종합과세(㉑-㉒-㉓)	㉒	15,917,500	④④
결정세액	㉓		④⑤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㉔		④⑥
합계(㉒+㉔)	㉕	15,917,500	
가산세	㉖		④⑦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㉗		④⑧
합계(㉕+㉗)	㉘	15,917,500	④⑨
기납부세액	㉙	7,810,000	⑤①
납부(환급)할 총세액(㉘-㉙)	㉚	8,107,500	⑤②
납부특례세액	㉛		
차감	㉜		
가산	㉝		
분납할 세액	㉞		
2개월 내	㉟		
신고한 이내 납부할 세액(㉚-㉜-㉝-㉞)	㊱	8,107,500	⑤③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이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주) 국 세	100,000,000	14,750,000	85,250,000	7,810,000	
		607-81-*****					
60	1	(주) 동 래	20,000,000	0	20,000,000	0	
		607-**-*****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35쪽 중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 손 금 공 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85,250,000				85,25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20,000,000				20,000,000
합 계 (종합소득금액)	105,250,000				105,25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제 외)							
부 동 산 임 대 업 외 의 사 업 소 득 (주 택 임 대 업 포 함)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본 인	1,5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국 민 연 금		1,000,000		
		②배 우 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3명)	4,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 가 공 제	④경 로 우 대 자(1명)	1,000,000	특 별 공 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1,000,000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8,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⑫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이공평	1	7 6 1 2 0 5 - 1 * * * * *				-
1	김성실	1	4 3 0 3 0 6 - 2 * * * * *				-
4	이소득	1	0 4 0 2 1 7 - 3 * * * * *				-
4	이부가	1	0 6 0 8 0 9 - 3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 + ㉑)	9,0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4.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이익)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35쪽 중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㉓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세액공제 (㉑×㉒)	④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500,000	
자 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출 산·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 학 기 술 인 공 제					
		퇴 직 연 금			12%		
		연 금 저 축			(15%)		
		ISA만기 시 연 금 계 좌 납 입 액					
특 별 세 액 공 제	보 험 료	보 장 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7,000,000	15% (20%)	1,050,000	
	교 육 비			6,000,000	15%	900,000	
	기 부 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1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제 1 호 에 따 른 기 부 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0만원 이하			100/110		
기 부 금	10만원 초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2,870,000	

㉔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5쪽 중 제21쪽)

16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4/10,0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환)	세 액	()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근로소득과자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제출 (불 명)	지 연 제 출 금 액			0.2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산 서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합 계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차별 세무계 산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합 계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허 위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불 명	미 제 불 명 금 액			1/100			
⑦ 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 · 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⑫ 현 금 영 수 증 미 발 급 등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⑬ 기 부 금 영 수 증 불 성 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⑭ 동 업 기 업 배 분 가 산 세								
⑮ 성 실 신 고 확 인 서 미 제 출 가 산 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 보 소 득 계 산 명 세 서 제 출 불 성 실 가 산 세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주 택 임 대 사 업 자 미 등 록 가 산 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합 계								
16 가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총 지 토 수	간 매 매 차 익 에 정 고 지 부	에 납 세 액	①					
		에 납 부 세 액	②					
		에 정 고 지 세 액	③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7,810,000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가 납 부 세 액 합 계		⑪	7,810,000	㉖				

210mm×297mm(백상지 80g/㎡)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종교인소득자(단일소득)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종교인소득자(단일소득)

자료1 기본사항

성명 : 박대한
주소 : 서울 성북구 종암로 ***
소속 : A교회

자료2 종교인소득금액 내역

지급처 : A교회
지급내역 : A교회에서 종교인 박대한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한 과세대상 수당
총 54,000,000원을 지급,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을 미이행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세 106,840원

자료3 가족사항

구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고
본인			74. 1. 3		
배우자			79. 10. 8	없음	
자녀			08. 9. 1	"	
모친			43. 10. 23	"	

자료4 기타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 1,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액(2015년 가입) : 4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인은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을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사항 ⇒ ④ 종교인소득명세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종합소득세)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신고서 제1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e-mail),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⑦ 신고구분 : ☒ 정기신고에 ☒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④ 종교인소득명세서 작성(신고서 제2쪽)

- ⑥⑥ 일련번호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⑥⑦ 종교단체명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명을 적습니다.
- ⑥⑧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⑥⑨ 총수입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54,000,000원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종교인소득자(단일소득)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1쪽~제2쪽)

- ③① 총수입금액 : ④ 종교인소득 명세의 ⑥⑨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③②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30,200,000원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상기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 ③③ 종합소득금액 : ③① 총수입금액란에서 ③② 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③④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대상자 명세, ③⑤~④①의 인적공제, ④②~④⑤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에서 ④⑥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8,000,000원을 적습니다.
③⑤~③⑦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③⑤ 본인 : 1,500,000원
③⑥ 배우자 : 1,500,000원
③⑦ 부양가족 : 3,000,000원(2명)
③⑧~④①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③⑧ 경로우대자 : 1,000,000원
④③ 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⑦ 과세표준 : 15,800,000원(③③ - ③④)
④⑧ 세율 : 15%
④⑨ 산출세액 : 1,290,000원
* 15,800,000원 × 15% - 1,080,000원
⑤⑤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서(⑤①~⑤⑦)의 합계금액 280,000원을 적습니다.

㉑~㉗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㉑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㉒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㉓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표준세액 공제로 7만원을 합니다.

㉘ 결정세액 : 1,010,000원(㉙ - ㉚)

㉛ 총결정세액 : 1,010,000원(㉘ + ㉙)

㉜ 원천징수세액 : 106,840원

* ㉜ 종교인소득명세의 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㉞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903,160원 납부(㉛ - ㉜)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종교인소득자(단일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거주구분</td> <td style="width: 33%;">거주자1 비거주자2</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 외국인9</td> <td></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d></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	명	박 대 한	②	주민등록번호	740103-1*****
	③	주	소	서울 성북구 종암로 ***	④	전자우편주소	korea****@****. **
	⑤	주소지	전화번호	02-***-*****	⑥	휴대전화번호	010-*****-*****

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⑧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⑩ 계좌번호

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③①	총수입금액: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⑥⑨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4,000,000
③②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30,200,000
③③	종합소득금액: ③①-③②		23,800,000
③④	소득공제: ③⑤~④⑤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④⑥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000,000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코 드	성	명	내외국인 코 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소 득 공 제 명 세	0	박	대	한	1	740103-1*****	기 본 공 제	③⑤	본 인	1	1,500,000
	1	이	현	명	1	431023-2*****		③⑥	배 우 자	1	1,500,000
	3	김	하	나	1	791008-2*****		③⑦	부 양 가 족	2	3,000,000
	4	박	성	실	1	080901-4*****		③⑧	경 로 우 대 자	1	1,000,000
							추 가 공 제	③⑨	장 애 인		
						④①		부 녀 자			
						④②		한 부 모 가 족			
								④③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④④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1,000,000
								④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④⑥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④⑦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④⑦	과세표준: ③③-③④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5,800,000
④⑧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④⑨	산출세액: ④⑦ × ④⑧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1,290,000
④⑩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⑤①~⑤⑦)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80,000

세 액 공 제 명 세	⑤①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0,000
	⑤②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⑤③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400,000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4쪽 중 제2쪽)

구분					금액	
세액공제명세	53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54 표준세액공제: 7만원				70,000	
	55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57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58 결정세액: 49-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010,000	
59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62)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60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61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62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63 총결정세액: 58+59					1,010,000	
기납부세액	64 원천징수세액: 4 종교인소득 명세의 70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06,840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63-64					903,160	

㉞1 종교인소득 명세

㉞6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㉞9 총수입금액	㉞7 원천징수세액
	㉞7 종교단체명	㉞8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A교회	101-***-*****	54,000,000	106,840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고인 박 대 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부 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양식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2. 주요 질문 및 답변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주요 질문 및 답변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6.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13종)

안내문 유형	신고안내 대상	소득종류	기장 의무	신고안내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홈택스/ 모바일
(A)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
(B)	자기조정대상자	"	"	"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 (무신고 간주자)	"	"	"
(D)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	"
(F)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 >10,000원	종합소득	"	홈택스/ 서면
(G)	모두채움(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 ≤ Δ10,000원	"	"	"
사전안내 (I)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홈택스/ 모바일
주택임대 (V)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	홈택스/ 서면
(Q)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10,000원	종교인 기타소득	비사업자	"
(R)	종교인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 Δ10,000원	"	"	"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단일 종교인소득자(Q, R 제외) 제외	종합소득	"	홈택스/ 모바일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양식

-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전년 추계신고)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 E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F유형 : 모두채움(납부세액)
- G유형 : 모두채움(환급대상)
- I유형 :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V유형 : 주택임대
- Q유형 : 종교인소득(납부세액)
- R유형 : 종교인소득(환급대상)
- T유형 : 금융·근로·기타·연금소득자

- 신고기간 : 2022.5.1.~ 6.30.
- 납부기간 : 2022.5.1.~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S유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가장의무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외무자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가주자로 보아 가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우미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안정소득 사업소득)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연금저축계좌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 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가장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유의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또한 세무대리인이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은 **징계책임**을 부담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소득세법시행령 §133) : '21년 귀속 수입금액을 적용합니다.

업 종 별	2021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3.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업종)	5억원 이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가장의무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가주자로 보아 가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선택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인·직·용·외·사업소득)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가장의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직전연도 주요 관련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외부조정 대상(복식부기)]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유의사항

- **외부조정대상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 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등

- 2021년 귀속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소득세법시행령 §131의2)

업 종 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1억 5천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131의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자기조정대상자 (B유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기장의무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가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군도·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란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단·적용액 사업소득)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 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 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 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자기조정 대상(복식부기)]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장부없이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등
- 2021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소득세법시행령 §208)

업 종 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7천5백만원 이상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전년 추계신고) (C유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기장의무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가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연환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부액 전액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table border="1"> <tr> <td>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td><td>50세 미만</td><td>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td></tr> <tr> <td></td><td>50세 이상</td><td>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td></tr> <tr> <td>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td><td>50세 미만</td><td>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td></tr> <tr> <td></td><td>50세 이상</td><td>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td></tr> <tr> <td>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td><td>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td><td></td></tr> </table>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가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직장임대,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 - 전년 추계신고 복식부기 의무]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장부없이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등
- **2021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소득세법시행령 §208)

업 종 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131의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수입금액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가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_____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	전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정기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자연)제출 금액 : _____ 원	
현금영수증미발급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_____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_____ 건, 10만원 이상 : _____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_____ 건, 10만원 이상 : _____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 _____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역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대상]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시 유의사항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하여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귀속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소득세법시행령 §208)

업종별	2020년 귀속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2020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 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납부** : 로그인(공동인증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서식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홈택스의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체크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단순경비율(모두채움 제외) (E유형)

홈택스(www.hometax.go.kr) 첫 화면에서 로그인 하면 자동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조회, 신고서 작성, 세금납부 등 신고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사업형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주요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율 (기본율)	자가율 (초과율)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가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 계산을 제공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미리 납부한 세금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인적용역 사업소득)	잔액	
소득 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5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이하자), 200만원(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중 적은 금액	
세액 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5%,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5%	
	연금저축계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 50세 미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50세 이상 [납입액(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의 12%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납입액(한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의 12%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기장		
현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	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신고 시 참고사항

- 올해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공제 금액** 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채움 제외 사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외 최종 퇴사일이 2021.12.31.이 아닌 경우 등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를 지급하면 **일반율**을, 그렇지 않은 자가사업자는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2) 인적용역사업자(업종코드가 94로 시작)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내년 신고 때부터는 **간편장부** 등 **첨부기장**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비교하기**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 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에 체크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납부** : 로그인(공동인증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서식1)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①**기본사항**(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등), ②**신고시 유의할 사항**(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③**신고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④**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상황, 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⑤**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주택임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 대상(단순경비율 적용)]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관리번호

- 신고기간 : 2022.5.1. ~ 5.31.
- 납부기간 : 2022.5.1. ~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전자신고 포함)에 대한 문의는 ☎1661-0544로 하여 주십시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모두채움(납부세액) (F유형)

______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 (ARS 전화신고시)	원	원

5월 31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ARS 전화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고·납부방법

1 ☎ 1544-9944로 전화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_____ #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납부할 세액 _____ 원 확인

6 가상계좌 확인

7 신고완료

✓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접수 확인
☎ 1544-9944 → 2번 → 2번

※ 아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무서)

ARS 전화 신고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_____ 원을 2022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번호 문자받기 또는 다시듣기
☎ 1544-9944 → 2번 → 4번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아래 가상계좌로 _____ 원을
2022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21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관리번호

- 신고기간 : 2022.5.1. ~ 5.31.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전자신고 포함)에 대한 문의는 ☎1661-0544로 하여 주십시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모두채움(환급대상) (G유형)

_____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환급받을 세액	환급받을 세액	납부할 세액
환급금액(ARS 전화신고시)	원	원	원

5월 31일까지 아래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 하시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

- ☎ 1544-9944로 전화
-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개별인증번호 _____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환급금 _____ 원 확인
-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 신고완료

✓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후 접수 확인
☎ 1544-9944 → 2번 → 2번

✓ 환급금 수령계좌 다시 들기
☎ 1544-9944 → 2번 → 3번

■ 환급금 수령계좌(본인명의) 입력 시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협	1	우체국	7	광주	13	신협	19
농협은행	2	새마을금고	8	경남	14	전북	20
KB국민	3	KEB하나	9	산림조합	15	제주	21
우리	4	대구	10	KDB산업	16	한국씨티	22
신한	5	부산	11	상호저축	17	은행코드 입력 후	
IBK기업	6	SC제일	12	수협	18	#, 입력	

• 카카오톡 계좌는 사용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_____ 원도 6월말
까지 동일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아래
가상계좌로 _____ 원을 2022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 기납부세액과 총결정세액은 3쪽의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에서 확인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 프리랜서 : 학원강사, 킥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0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 '20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6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환급계좌**만 등록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4쪽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정하실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 안내 내용을 수정하여 환급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계좌 등록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환급발생 사례

- 2021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10,000,000×3.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1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기간 : 2022.5.1.~ 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성실납세하시는 귀하께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I유형)

국세청에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고시에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해 드리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신고시 도움이 되는 안내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그 > 로그인 > 신고도움자료 열람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확인방법2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from the Hometax website. The left screenshot is the login page with options for '202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and '2021년 12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Significant Items for Reporting' section, which lists various items that may require additional reporting, such as foreign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specific income types.

-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기본사항 :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료, 경비유 등
- ②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개인별, 업종별 유의사항 등
- ③ 신고참고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등
- ④ 신고상황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직전연도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등
- ⑤ 주취업소득 참고자료 : 주취업대 수입금액, 등록사항 등

- 신고 직후 안내 사항과 연계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 사용 NO!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126
국세청 126
국세청 126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리번호	
• 신고기간 : 2022.5.1. ~ 5.31. • 납부기간 : 2022.5.1. ~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전자신고 포함)에 대한 문의는 ☎1661-0544로 하여 주십시오.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주택임대 (V유형)

_____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제공해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	원	원

5월 31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ARS 전화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고·납부방법

1	☎ 1544-9944로 전화	※ 아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무서) ARS 전화 신고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_____원을 2022년 _____월 _____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번호 문자받기 또는 다시듣기 ☎ 1544-9944 → 2번 → 4번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아래 가상계좌로 _____원을 2022년 _____월 _____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table border="1">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able>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_____ #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납부할 세액 _____ 원 확인									
6	가상계좌 확인									
7	신고완료									
✓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접수 확인 ☎ 1544-9944 → 2번 → 2번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

※ 신고방법 선택 가능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계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자주찾는 메뉴

공적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공적법인 결산서류
통지서 발송

부가가치세
재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재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3

세금종류별 서비스

세금모의계산

법안제

장도소득세

소비세제

환원제

사업자등록

국세사실명령

공적법인결산서류

근로자내장명령

연말정산간소화

1/2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하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과세유형(월·일·연~20%) 대상 사업자가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과세유형(월·연~20%)별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니, 미등록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주택임대소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리번호

- 신고기간 : 2022.5.1. ~ 5.31.
- 납부기간 : 2022.5.1. ~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전자신고 포함)에 대한 문의는 ☎1661-0544로 하여 주십시오.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납부세액) (Q유형)

____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할**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 (ARS 전화신고시)	원	원

5월 31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ARS 전화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고·납부방법

1 ☎ 1544-9944로 전화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_____ #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납부할 세액 _____ 원 확인

6 가상계좌 확인

7 신고완료

✓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접수 확인
☎ 1544-9944 → 2번 → 2번

※ 아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무서)

ARS 전화 신고 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_____ 원을 2022년 _____ 월 _____ 일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번호 문자받기 또는 다시들기
☎ 1544-9944 → 2번 → 4번

■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아래 가상계좌로 _____ 원을
2022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자주찾는 메뉴



세금종류별 서비스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세액
모의산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종교인소득 자동계산하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종교인소득 자동계산하기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보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리번호	
• 신고기간 : 2022.5.1. ~ 5.31.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ARS 개별인증번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전자신고 포함)에 대한 문의는 ☎1661-0544로 하여 주십시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종교인소득(환급대상) (R유형)

님, 안녕하세요.

귀하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세액계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목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환급금액(ARS 전화신고시)	원	원

5월 31일까지 아래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에 따라 **ARS 전화(☎1544-9944)**로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 하시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방법

1	☎ 1544-9944로 전화
2	2번 → 1번(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개별인증번호 #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환급세액 원 확인
6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7	신고완료

✓ 신고를 마친 후 신고서 접수 확인
☎ 1544-9944 → 2번 → 2번

✓ 환급금 수령계좌 다시 들기
☎ 1544-9944 → 2번 → 3번

■ 환급금 수령계좌(본인명의) 입력 시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지역농·축협	1	우체국	7	광주	13	신협	19
농협은행	2	새마을금고	8	경남	14	전북	20
KB국민	3	KEB하나	9	신림조합	15	제주	21
우리	4	대구	10	KDB산업	16	한국씨티	22
신한	5	부산	11	상호저축	17	은행코드 입력 후 「#」 입력	
IBK기업	6	SC제일	12	수협	18		

※ 카카오페이 계좌는 사용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_____ 원도
6월말까지 동일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세액
모의산출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종교인소득 자동계산하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종교인소득 자동계산하기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해보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교인소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신고기간 : 2022.5.1.~ 5.31.
- 납부기간 : 2022.5.1.~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금융·근로·기타·연금소득자 (T유형)

홈택스(www.hometax.go.kr) 첫 화면에서 로그인 하면 자동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조회, 신고서 작성, 세금납부 등 신고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21년 귀속 신고대상 금융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유무

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개 근무지	2개 이상 근무지		
소득 유무						

* 종교인기타소득 유무 :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 : 원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합니다.

- 2021년 귀속 신고대상 금융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확인 방법

- ▶ 금융(이자 · 배당)소득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보기
-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상단)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 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에 체크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otax.kr) 납부 : 로그인(공동인증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서식1)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안내



- 2021년 과세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 ▶ 2021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 ▶ 2021년 중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급여 및 공제 선택 (직접)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 이동 → 지방소득세 작성 및 제출

〈연금소득〉

-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 등)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 소득)으로 소득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사적연금 소득의 연간 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 올해부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공제 금액** 등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모두채움 제외 사례 :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의 최종 퇴사일이 2021.12.31.이 아닌 경우 등
- **홈택스 조회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출 누락이나 4월 이후 자료가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처 등)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비교하기**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우측 하단)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기타 자세한 신고방법 및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01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 수익자 지정·변경권, ③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 위탁자 · 수익의 이익 :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의 구분 ☐ 소득원천별로 구분 ☐ 소득원천별 구분의 예외 - 집합투자기구인 신탁 -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추 가>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 (좌 동) -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

가. 개정취지

-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세율 20% ☐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데생 등 미술품(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 소득구분 명확화 ☐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 제38조)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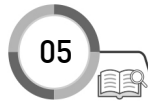
-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신 설>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숙박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6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유형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 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좌 동) ☐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ii)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 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 소득이 있는 세대주 *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 ①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②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③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산입 방식 폐지

(소득세법 제57조)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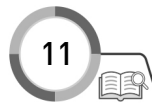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 산입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①세액공제와 ②손금(필요경비)산입 중 선택 가능 ①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 손금(필요경비) 산입 방식 삭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충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적용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좌 동)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 제12조, 제18조, 제38조)

가. 개정취지

-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좌 동)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비과세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 (좌 동)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3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가. 개정취지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좌 동)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기준 -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추 가>	☐ 기준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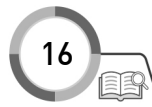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연 1.8%	☐ 이자율 조정 ○ 연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가. 개정취지

-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 요건 ○ 「법인세법」 상 손비 <추 가>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 ○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산출 ○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 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 자회사 매출·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① 매출액 방법 <table> <tr> <th>R&D활동</th><th>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h></tr> <tr> <td>국내> 국외</td><td>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td></tr> <tr> <td>국내< 국외</td><td>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td></tr> </table>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times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 국외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종 전		개 정
② 매출총이익 방법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 > 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75\% \times \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text{매출총이익} + \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 < 국외	$(\text{연구개발비용} \times 25\%) +$ (※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0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5~30% 세액 감면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구분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타	•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30			

부 록

종 전	개 정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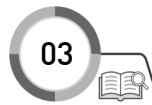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금액)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금액 ×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 기한 15~ 60일) 0.1% ☐ (요건) 전년 대비 ①현금성 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②약속어음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2.12.31.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 ① 벤처 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 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 * TCB 기술·등급 T4이상 ⑤ 클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22.12.31.

0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가. 개정취지

- 실효성 없는 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종료



05 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가. 개정취지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 소득 저율 분리과세(9%)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1)부동산투자회사,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3)부동산집합투자기구, 4)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관련 자산(투자대상) : ①의 자산 중 ②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③에 따라 심의·인정된 자산 ①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①에 따른 주식·지분·채권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 * 구체적 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②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될 것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사회기반시설의 산업관련성이 심의·인정*될 것 * 뉴딜인프라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관련성 여부를 심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정사회기반시설 의무투자비율 : 50%이상* * 설정일로부터 매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 전용계좌 요건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전용 계좌의 명칭으로 가입할 것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 적용기한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가. 개정취지

- SOC 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 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전용계좌 요건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의 명칭으로 가입할 것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것 ④ 신규 투자*할 것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 (적용기한)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 자산 ☐ (적용기한) 2020.6.30.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좌 동) ☐ (적용기간) 2021.1.1.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군 복무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 · 중견기업 ☐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 20%)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종료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요건) ❶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❷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❸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세액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2.12.31.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 (세액공제액)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 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2020.12.31.	☐ 세액공제 확대 등 ☐ (좌 동)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 공제액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율 상향)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사후관리) 20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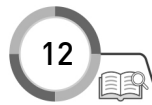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2.12.31.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가. 개정취지

- 고령자 고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단위 : 만원)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좌 동)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효과 발생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기업·중견기업 3년 ○ (적용기한) 2021.12.31.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요건) 20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요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좌 동) ○ 추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 공제액 ○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정책목적 달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요건) 20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 × 사회보험료 × 50%(2년간)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종료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가. 개정취지

- 실효성 미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수도권 밖)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 ☐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폐업 후 전환 사업*으로 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 이내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감면율)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종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국가균형발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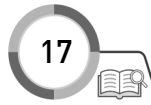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 사후관리 및 추징세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감면대상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좌 동) ○ 추징세액 규정 일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 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추정 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적용기한) 2020.12.31.	- (좌 동)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제88조의2 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가. 개정취지

- 농어민,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축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 2020.12.31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 비과세종합저축 ③ 조합 등 예탁금 ④ 조합 등 출자금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 시점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금 계좌자료 지속 보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보관 ☐ (제출)취급기관* →집중기관* * (취급기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등 (집중기관) 은행연합회 ☐ (보관)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신 설>	☐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연장 ☐ (좌 동) ☐ (원칙)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 (예외) 연금계좌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당시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 저축자료에 대해서도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요건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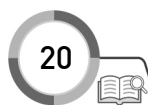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입 대상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 대상 확인 ○ 가입시 19세 이상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계약기간 요건 완화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허용 -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 가능
☐ 투자금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금액을 공제	☐ 납입한도 이월 허용 ○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원 × [1 + 계약기간 경과연수 (최대4년)]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금액을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납입한도 규정은 2021.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용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가. 개정취지

- ISA를 국민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운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SA 적용기한 ☐ 2021.12.31.까지 가입분	<삭 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5항·제9항·제10항·제11항)

가. 개정취지

-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SA 운용기관 및 재산 ○ 운용기관 - 신탁업자, 금융투자자 <추 가> ○ 운용재산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추 가>	☐ 운용기관 및 운용재산 확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 - (좌 동)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단,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 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 합계액 = 소득 - 손실*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등 비과세분은 손실 인정되지 않음 <신 설>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시 주식 양도차손 공제 ○ 합계액 = 소득 - 손실* - 주식양도차손 - 보수·수수료 * (좌 동) - 주식양도차손에서 대주주보유 주식분 제외 - 보수·수수료 중 주식양도차손으로 공제받은 분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운용재산 확대) 2021.1.1. 이후 상장주식 취득분부터 적용
- (운용기관 확대 및 주식 양도차손공제) 20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 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 계산·원천징수기준일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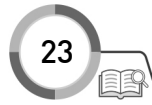
- ISA 제도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계좌보유기간 ☐ (청년·서민·농어민) 3년 ☐ (기타) 5년 ※ 단, 사망·이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계좌보유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 의무 계좌 보유기간 완화 ☐ 3년 ※ (좌 동)
☐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	☐ 기준일 변경 ☐ 계약해지일 → 의무 계좌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 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비과세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가. 개정취지

- ISA로 저축한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년 가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로 전환가능 시점 ☐ ISA 계약기간 만료시 <추 가>	☐ 전환가능 시점 추가 ☐ (좌 동) ☐ 3년 경과 이후 ISA 해지 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4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적용기한) 2020.6.30.	○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가. 개정취지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사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 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 (좌 동) ☐ 2021.12.31.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비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td>30%</td></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body> </table>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 동)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①~④ 금액의 합계액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th>한 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td>300만 원</td></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td>250만 원</td></tr> <tr> <td>1.2억 원 초과</td><td>200만 원</td></tr> </tbody> </table>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적용기한) 2022.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고소득·대자산가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배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적용을 제한하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 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절차 ○ 국세청장은 소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통보 ※ 확인기한 (ISA) 가입·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연장 다음해 4.15일	□ 신규 가입가능한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로 확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확인절차 및 확인기한 조정 ○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은행연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은행연을 통회 조회 ※ 확인기한 : 가입·연장 다음해 4.30일* * 4.30일 이후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 단, 사망, 해외 장기출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 14일 이내에 의견 제시 가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가입·보유·취득·연장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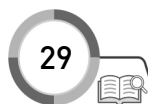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가. 개정취지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022.12.3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 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연구원 ②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감면 ○ (적용기한) 20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 출연연구기관등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가. 개정취지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대상자산 별도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시설(R&D 투자시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시설(에너지절약시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설(생산성향상시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 (좌 동) ○ 대상자산 직접 기술 ① (좌 동) ② R&D 투자시설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생산성향상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 ISA를 통한 금융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SA가입자는 소득요건 확인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단, 가입 직전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자료 ①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 금융회사는 가입·연장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과세특례 제한 설명 □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금융회사는 소득요건 확인	□ 제출의무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추가 ○ 19세 이상 일반형가입자* 제출의무 폐지 *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농어민·15~19세 근로소득자는 제출의무 유지 －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 (좌 동) ③ 원천징수영수증 <삭 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에 관한 신설 조문(제123의2조)으로 이동 <삭 제>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자대상 자산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추 가> <신 설> <신 설> ☐ 계약기간 중 특별해지 사유 ○ 사망·해외이주 ○ 천재지변·질병 등 ○ 타 금융회사로 계좌이전 ☐ 계약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기산 ☐ 청년의 정의 :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35세	☐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ISA의 계약 요건 ① 계약형태 : 위탁매매계약·매매계약 ② 신용공여금지 ③ 신규 투자*할 것 * ISA 가입 전 보유한 주식 등 이체 제한 ○ (좌 동) ○ ISA 내 운용재산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 「상법」 제420조의2제1항 ☐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 ☐ 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시 투자원금 부터 인출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삭 제*> *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당연 가능 <삭 제>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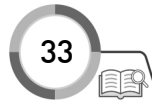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 가> ○ 임대기간 계산 방법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신 설>	☐ 특례 대상 추가 및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리모델링사업 추가 -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정책목적 달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 감면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신설 및 창업시 : 신설(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좌 동) ○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 설정 - 국내사업장 신설 및 창업시 : $\text{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text{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text{ (최대1)}$ *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

부 록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 증설시 : $\text{증설한 부분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text{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text{최대} 1)$ ○ (적용기한) 2021.12.31.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가. 개정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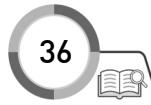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등 <추 가>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 마리나업 추가 등 업종조정 -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 (좌 동) - 마리나업 추가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 자산처분 시 사후관리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년 - 건물과 구축물 : 5년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 시설업의 시설 등 ☐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까지의 기간 ② 1일 0.025%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면 세액의 추정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 개정취지

-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연구 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 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가. 개정취지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 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좌 동) ☐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 -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 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9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 혁신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추 가> － 인포콘텐츠·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디지털·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 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 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재부 - 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① 도서·신문 : 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② 공연·박물관·미술관 : 7,5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가. 개정취지

-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 141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 ☐ 158개 시설로 확대 - 반도체 · 탄소저감 · 신재생에너지 ·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부부 합산 소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 1주택 :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해당
(과세기간의 — 3억원)의 적수 $\times \frac{60}{100} \times \frac{1}{365} \times$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등 (윤년은 366)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하고, 추계신고 시 적용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세율 6~45%)

'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701101	고가주택 임대	37.4	16.0
701102	일반주택 임대	42.6	16.4
701103	장기임대 공동·단독주택	61.6	20.1
70110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59.2	21.3
701301	주택의 전대·전전대	43.4	4.2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2 주요 질문 및 답변

[과세배경]

1 왜 '20년(19년 귀속분)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14년~'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한 것임
-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년 귀속('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14년~'18년 귀속만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것이며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새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됨

[과세기준]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유 주택 수별
 - ①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 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②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임대유형별
- ①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②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3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4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5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 '23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1년 귀속('22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6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하는지?

○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됨

7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8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9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 과세기간 종료일('21. 12. 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10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 구분登記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11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
으로 계산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乙로 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은 0채, 乙은 1채

12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하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을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보유 주택은 보유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①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

13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은 고가주택 및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등의 판단 시 적용

14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부부 합산 2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3년까지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수입금액)

15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1년 귀속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3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

$$\text{간주임대료} = (\text{보증금등} - 3\text{억 원}^{1)}) \times \text{적수} \times 60\% \times \frac{1}{365}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 \\ \text{(윤년은 366)} \quad \text{('21귀속: 1.2\%)}$$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²⁾

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16

'21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17 공동 보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함

18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 월수: ①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 0월

19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임대인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신고]

2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21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22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22년 5월에 신고하는 '2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21년에 등록을 하였어야 받을 수 있으며, '22년에 세무서와 지자체를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23년 신고('22년 귀속) 분부터 혜택을 적용받음

23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납세자마다 다름

-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주택임대 예상 소득세만을 계산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 외의 부분은 미반영)

24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한지(타소득 없음)?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됨

25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지만,
 -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26 국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거주자는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 비거주자의 국외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음

[세액감면]

27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이하
 - ②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 1호 이상 임대
- 임대기간 :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10년^{*}) 이상 임대

^{*} '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4년 단기임대, 8년(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및 10년 장기임대 신설

28

추계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 시에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 추계신고 및 분리과세 신고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29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차이는?

- 종합과세 시에는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하지만,
- 분리과세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¹⁾ ÷ 종합소득금액¹⁾ × 감면율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²⁾ ÷ 분리과세 소득금액²⁾ × 감면율

2)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3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나, 분리과세 신고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주요 내용 (조특법§96의3 및 조특령§96의3)

○ 공제개요

- 공제기간('20.1.1.~ '22.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1년도 인하분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형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공제 신청 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모두채움 신고서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음)

- 인하 직전 계약서(2020.1.1.이후 갱신한 경우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2 주요 질문 및 답변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대인 요건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2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채움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3)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매출
(예 : 음식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료 인하액¹⁾’의 최대 70%²⁾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보증금은 제외)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한지?

10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서식은?

서식명	근거법령	서식번호	신고방식	비 고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홈택스/ 서면	모두 채움 신고서 로는 신청 불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의25서식	홈택스/ 서면	공제대상세액 계산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서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1)	홈택스/ 서면	공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신고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서면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79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소득구분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29, 2016.07.19.)
공통	소득구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소득세과-865, 2012.11.29.)
공통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소득세과-1175, 2009.07.27.)
공통	소득구분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소득구분	경찰병원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병원 의료비 감면 규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1, 2019.1.28.)
공통	소득구분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분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2021.06.08.)
공통	수입금액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596, 2014.06.16.)
공통	수입금액	경조사비를 고객명의로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공통	수입금액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서면-2015-소득-22606, 2015.05.07.)
공통	수입금액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함 (소득-22517, 2015.03.23.)
공통	수입금액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임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수입금액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683, 2014.06.30.)
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환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775, 2014.07.22.)
공통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 소득-2990, 2017.04.18.)
공통	수입금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2018.12.10.)
공통	수입금액	법인의 분할로 인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 소득 계산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 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2019.7.5.)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수입금액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공통	수입금액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2016.07.25.)
도소매	수입금액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비과세 되며,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함(서면법규과-523, 2013.05.09.)
공통	수입금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2017.9.22.)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09.28.)
공통	필요경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부 록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원천세과-848, 2011.12.20.)
공통	필요경비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 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공통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공통	필요경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4,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공통	필요경비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공통	필요경비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공통	필요경비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91, 2013.09.30.)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서면법규과-1029, 2013.09.23.)
공통	필요경비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서면법규과-522, 2013.05.09.)
공통	필요경비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82, 2013.02.18.)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1539, 2012.12.27.)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1,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903, 2012.12.11.)
공통	필요경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452, 2012.05.31.)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소득세과-628, 2012.08.20.)
공통	필요경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과-0001, 2012.01.03.)
보험 모집인	필요경비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가 판촉물품을 구매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보험회사는 지급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내역을 물품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함) 하고 보험설계사는 동 판촉물품을 판매촉진 또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용역 공급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동 판촉물품의 가액이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보험모집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5호 및 제28호에 따른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공통	필요경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함 (서면법규과-505, 2013.05.02.)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세과-840, 2012.11.21)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455. 2007.04.09.)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5-소득-0717, 2015.06.08.)
공통	필요경비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부동산 매매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16-소득-3526, 2016.03.09.)

부 록

업종	분야	해석 사례
부동산 매매업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소득세과-721, 2012.09.27.)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62, 2020.06.12.)
공통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 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서면법규과-664, 2013.06.13.)
공통	소득금액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공통	소득금액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산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558, 2011.06.20.)
보험 모집인	소득금액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06.05.)
부동산 매매업	신고의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2018.02.02.)
공통	성실신고확인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379, 2014.07.02.)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461, 2012.06.01.) * 현행 : 120만원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공통	성실신고확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소득세과-296, 2014.05.26.)
공통	성실신고확인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서면법규과-611, 2013.05.30.)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과-463, 2012.06.04.)
건설	성실신고확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2.04.25.)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2019.05.22.)
공통	성실신고확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06.12.)
공통	기타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서면-2016-소득-4249, 2016.07.08.)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기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06.30.)
공통	기타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 2019.02.13.)
공통	기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06, 2018.6.11.)
공통	기타	종교단체가 상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
공통	기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의 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 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2021.03.09.)
공통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9.18.)
공통	세액 공제·감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공통	세액 공제·감면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2017.02.28.)
공통	세액 공제·감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07.13.)
공통	세액 공제·감면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소득-2643, 2018.08.31.)

5.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세액 공제 · 감면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공통	세액 공제 · 감면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 2019.2.15.)
공통	세액 공제 · 감면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 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공통	세액 공제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같은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41, 2020.10.29.)

6.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 63①),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96의2),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96의3)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7.1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최저한세(조특법 §132)

- 의의 :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액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
비거주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text{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 ②(\text{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text{조특법상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액 등}) \\ \times \text{기본세율} \times 35\% \text{ (단,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 \cdot \text{총결정세액} = \text{최저한세} - \text{기장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 \\ + \text{가산세}$$

부 록

○ 적용대상 공제 · 감면 등의 범위

구 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손금산입특례 등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세액공제 등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③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제12조②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9조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시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6.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구 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세액공제 등	제104조의25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3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③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1조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1조⑤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시 잔존감면·이월공제액 승계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단, 세액감면 중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적용효과 :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감면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

○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

○ 감면 내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內	과밀억제권역 外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 ¹⁾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	기본	5년간 50%	
에너지신기술기업	신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창업 ²⁾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 기업 ³⁾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1)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관광숙박업 등(조특령§ 5②)

2)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조특령 § 5①)

'18.5.29.이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는 75%, 그 이후 2년간의 과세연도는 50% 적용

3) '18.5.29. 이후 창업한 기업 중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농특법 § 4)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 감면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 조특법§7조① 1호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 대상 업종 :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조특법 §7① 1호)

○ 감면 내용

- 감면비율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도·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수도권외	도·소매업, 의료업	5%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비율 10%(1.1배) 상향 적용(2017년 귀속부터)

* 아래 1, 2를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감면 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2018년 귀속부터)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허용(2018년 귀속부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 감면대상 : 과세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한 내국인

○ 감면 내용

-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비율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세액공제액 : (1) + (2) + (3)(단, 1호와 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①+②)

① 중소기업은 30%, 비중소기업은 20%(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견기업 중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

② min(③, ④)

$$③ \frac{\text{당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 수입금액}} \times 3$$

④ 한도 :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한도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
(①+②)

① 중소기업은 40%, 비중소기업은 30%

② min(③, ④)

$$③ \frac{\text{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당기 수입금액}} \times 3$$

④ 한도 : 10%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max(①, ②)

①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직전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②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아래 표의
해당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 Min(③, ④)

$$③ \frac{\text{당기 일반·연구인력개발비}}{\text{당기 수입금액}} \times 50\%$$

④ 한도 : 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13년부터)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 이후부터 배제됨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 · 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감면대상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관광숙박업을 제외하는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업종은 제외)

○ 감면 내용

-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일정금액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이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2년, 일반기업의 경우 1년까지 세액공제

* 2020년 고용감소기업의 경우 2020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기간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3년, 일반기업은 2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29조의7⑥), 단, 매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조특법 제29조의7⑦)

- 세액공제액 : (1) + (2)

(1) 청년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 증가한 인원 수 (한도: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 ①

- ① 일반기업은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일반기업 5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2021년~2022년까지)

(2) 청년상시근로자 외 근로자 : 증가한 인원수 × ①

- ① 일반기업은 0원,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700만원,
 수도권 외 지역 770만원

○ 사후 관리

-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단,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되, 2020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를 면제함.(2020년도 사후관리 제외)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 감면 대상

-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감면 요건

- 동일한 임차인(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연 3% 이내로 인상한 경우

$$\text{연평균 임대료 인상율} =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직전 2년간의 매월말 임대료의 합계액}) \times 1/2}{(\text{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직전 2년이 되는 월말의 임대료}) \times 12}$$

○ 감면 내용

-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세에서 5% 감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발행일자 | 2022년 4월 일

발행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안 경 민

국세조사관 임 민 철

국세조사관 이 옥 녕

국세조사관 류 승 우

인쇄 | 도서출판 태봉 ☎ 02-2274-0383)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